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17-01

2022년도 군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특정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2. 10.

연구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최병욱 (상명대학교)

공동연구원 : 정방호 (성신여자대학교)

김용주 (초당대학교)

김국현 (초당대학교)

민병후 (육군3사관학교)

최정호 (상명대학교 안보통일연구소)

김해석 (상명대학교 안보통일연구소)

진호영 (상명대학교 안보통일연구소)

연구보조원 : 서평석 (상명대학교 안보통일연구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9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9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80
제3절 소결론	111
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113
제1절 주요 사례	113
제2절 사례 고찰을 통해 본 보훈법 해석방향 분석	164
제3절 소결론	181
제4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분석	182
제1절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182
제2절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201
제3절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개선 및 장병 권리보장 체계화	216
제4절 소결론	237

제5장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3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39
제2절 군병원 입원 장병 및 보호자·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245
제3절 소결론	277
 제6장 군 사망·부상사고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280
제1절 심층면접 개요	280
제2절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결과	285
제3절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 결과	296
제4절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심층면접 결과	302
제5절 기타 기관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308
 제7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14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개선방안 ..	314
제2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결과 개선방안	330
제3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개선방안	343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51
제5절 심층면접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362
 참고문헌	 368
 부 록	 373
1. 설문조사 결과	373
2. 주요 관련 법령	382

표 목 차

[표 2-1] 상이등급별 상이연금 금액비율	22
[표 2-2]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23
[표 2-3]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24
[표 2-4]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	26
[표 2-5]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27
[표 2-6] 상이등급 세부 인정기준	28
[표 2-7] 2개 이상 장애의 종합상이등급기준	31
[표 2-8] 국가유공자 대상자	32
[표 2-9] 전상 및 공상군경 보상금의 지급기준	34
[표 2-10]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34
[표 2-11] 생활조정수당 지급구분표	35
[표 2-12] 간호수당 지급구분표	36
[표 2-13] 부양가족수당 지급구분표	37
[표 2-14] 중상이부가수당 지급기준	37
[표 2-15] 무공영예수당 지급구분표	38
[표 2-16] 고령수당 지급구분표	38
[표 2-17]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구분표	39
[표 2-18]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39
[표 2-19] 보훈보상대상자	43
[표 2-20] 재해부상군경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45
[표 2-21]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의 지급기준	45
[표 2-22] 생활조정수당 지급구분표	46
[표 2-23] 간호수당 지급구분표	46
[표 2-24] 부양가족수당 지급구분표	47
[표 2-25] 중상이부가수당 지급기준	48
[표 2-26] 고령수당 지급구분표	48

[표 2-27]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구분표	48
[표 2-28]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	49
[표 2-29]	민간의료기관별 지원기준	53
[표 2-30]	장해등급별 장해연금 비율	62
[표 2-31]	2개 이상 장애의 종합상이등급기준	62
[표 2-32]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63
[표 2-33]	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보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	64
[표 2-34]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65
[표 2-35]	공무상 부상의 인정기준	66
[표 2-36]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67
[표 2-37]	장해등급	68
[표 2-38]	의무경찰의 상이급여금 지급금액	74
[표 2-39]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기준	76
[표 2-40]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 ..	76
[표 2-4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요건 심사절차	82
[표 2-42]	심사단계 및 주요 심사내용	83
[표 2-43]	상이등급 심사절차	84
[표 2-44]	상이등급 심사단계 및 주요 심사내용	85
[표 2-45]	보훈심사위원회 분과 구성	87
[표 2-46]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89
[표 2-47]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제기	89
[표 2-48]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 심사현황	90
[표 2-49]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12.7.이후 등록자)	93
[표 2-50]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2012.7.이후 등록자)	94
[표 2-51]	사망일시금	95

[표 2-52] 교육지원 체계	95
[표 2-53] 취업지원 체계	96
[표 2-54] 의료지원 체계	97
[표 2-55] 대부지원 체계	97
[표 2-56] 기타지원 체계	98
[표 2-57] 군인 등 보훈대상별 현황	99
[표 2-58] 군인 등 보훈대상 연령별 현황	99
[표 2-59] 상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현황	100
[표 2-60] 보훈심사 해당 및 비해당현황 현황	100
[표 4-1] 순직자의 범위	183
[표 4-2] 전사자등의 구분	185
[표 4-3] 사망확인 통보	186
[표 4-4]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188
[표 4-5]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89
[표 4-6] 「군인 재해보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약 비교	198
[표 4-7] 「군인 재해보상법」 목적 및 적용 범위	204
[표 4-8]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원심) : 2020년~2022년 6월	205
[표 4-9] 「군인사법 시행령」 일반사망자 분류기준 일부개정(안) ..	214
[표 4-10]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대상 일부개정(안)	215
[표 4-11]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	218
[표 4-12]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누계	220
[표 4-13] 자해사망 사건 원인 비교	221
[표 4-1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225
[표 4-15] 전공사상구분 심사 결정	227
[표 4-16]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절차	229
[표 4-17] 강화된 군인권보호관 권한과 역할	233
[표 4-18] 의무복무 순직자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자동화(안)	236
[표 5-1] 설문조사 구성요소	240

[표 5-2] 신분별 설문조사 구성	242
[표 5-3] 설문조사 대상자 신분별 현황	242
[표 5-4] 설문조사 대상자 신분별 세부 현황	243
[표 5-5] 군별 입원 장병 현황	243
[표 5-6] 군 병원 유형별 대상자 현황	244
[표 5-7] 입대 전 군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245
[표 5-8] 입대 후 군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246
[표 5-9]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은 인원(입원 병사), 복수 선택	247
[표 5-10]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 여부	248
[표 5-11]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여부	249
[표 5-12] 군인복무기본법 숙지 정도	249
[표 5-13] 공상 신청절차 인지도	250
[표 5-14]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인지도	251
[표 5-15]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	251
[표 5-16]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병사)	252
[표 5-17] 부상·질병 발생 후 소속부대 조치에 대한 만족도	254
[표 5-18]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254
[표 5-19] 입원절차에 대한 불만족 사유	255
[표 5-20] 군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분야	255
[표 5-21] 민간병원 입원(진료) 경험	256
[표 5-22]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56
[표 5-23] 공상 신청 여부	257
[표 5-24] 공상 신청 절차	258
[표 5-25]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을 받은 여부	258
[표 5-26]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259
[표 5-27]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259
[표 5-28] 군인 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만족도	260
[표 5-29]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 만족도	261

[표 5-30]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인식	262
[표 5-31]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병사·간부)	263
[표 5-32]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의료진)	264
[표 5-33]	보상수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분야	265
[표 5-34]	공상 신청 절차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분야	266
[표 5-35]	공상 관련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	267
[표 5-36]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인식	269
[표 5-37]	보호자가 궁금해 하는 분야	270
[표 5-38]	보훈보상제도 인지 여부	270
[표 5-39]	입원 자녀(가족) 관련 조치하려고 하는 분야	271
[표 5-40]	발병경위서 작성 만족도	272
[표 5-41]	발병경위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분야(복수 응답)	273
[표 5-42]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유무	273
[표 5-43]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분야(복수 응답)	275
[표 6-1]	면접조사 구성요소	281
[표 6-2]	심층면접 대상자 신분별 현황	283
[표 6-3]	심층면접 대상자 신분별 세부 현황	284
[표 6-4]	국군병원 3단계 진료체계의 특징	286
[표 6-5]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 및 치료	290
[표 7-1]	각 법률상의 용어 정리	315
[표 7-2]	전사(戰死) 관련 용어정의	315
[표 7-3]	순직 관련 용어정의	316
[표 7-4]	전상(戰傷) 관련 용어정의	317
[표 7-5]	공상 관련 용어정의	318
[표 7-6]	순직 관련 용어의 개선안	319
[표 7-7]	공상 관련 용어 개선안	320
[표 7-8]	‘보훈보상대상자’ 표현 개선안	321

[표 7-9]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 개정안	323
[표 7-10]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의 내용 개정안	324
[표 7-1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327
[표 7-1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비교	328
[표 7-13]	재해보상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교육여부 비교	351
[표 7-14]	교육자료 주요내용	353
[표 7-15]	장병 교육용 교재 작성 “예시”	354
[표 7-16]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의료진)	355
[표 7-17]	One-Stop 시스템 구축 “예시”	356
[표 7-18]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357
[표 7-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현황(2021년 기준)	358
[표 7-20]	한국과 미국의 군 유가족에 대한 처우 비교	358
[표 7-21]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인식	36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방법	8
[그림 2-1]	국가보훈처 기구 및 조직	91
[그림 2-2]	지방보훈청 및 지청	91
[그림 2-3]	서울지방보훈청 조직도	92
[그림 7-1]	국방부 발간 「병 복지 길라잡이」	352
[그림 7-2]	의무사령부 발간 「입원환자 전역안내서」 (간부용, 병사용)	352
[그림 7-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마이페이지’와 ‘알림톡’ 사례	355

요 약

군은 그 특성상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이에 더하여 열악한 환경 및 수직적 문화로 인한 장병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병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생명권 침해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치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피해 장병 및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병 및 유·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1) 사고 발생 단계 - (2)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통보 및 정보공유 / 행정 지원 단계 - (3) 공정한 조사 및 진상규명 단계 - (4) 피해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단계 등 단계별로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부족하거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부대 측과 장병 및 유·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사망·부상·질병사고 등 발생 시 현행 예우·보상·지원 절차, 피해 장병 및 유가족의 애로사항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문헌연구·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자로부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청취한 후, 이를 종합·분석하여 장병의 건강권 및 명예권, 유가족의 참여권, 신원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는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와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에 대한 분석(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 분석(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제5장),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제6장) 순으로 고찰하였고 주제별로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분석

첫째, 군인의 사망 등에 대한 권리구제는 보상과 예우가 상호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 체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유가족의 보훈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다만 법령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간의 통일성 또는 연결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사망 및 부상에 관한 각 법률상의 용어는 전사, 순직, 공상, 일반사망, 전몰군경, 특수직무순직 등 다양하다. 「군인사법」의 순직 등에 관한 용어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몰군경, 공상군경 등의 용어가 서로 연결성을 가지도록 재정립함으로써 당사자 및 유가족들에게 보상과 예우가 연결되어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표현을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가칭 ‘보훈유공자’ 또는 ‘보훈예우자’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단순히 보상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군인사법」 제54조의 2 제2항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순직 등 해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군(軍)이 순직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을 가져온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시행령상의 순직인정 기준이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심사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 당사자 및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국방부(군)에 순직·공상 등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보훈처 에도 국가유공자 등을 신청해야 한다. 절차의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의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군에서 바로 당사자 및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국가

보훈처에 직접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을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의 자료제공 요청에 해당 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단순한 확인서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결정서 등도 포함되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군의 심사결과와 보훈심사 위원회 심사의 관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과 국가보훈처가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업과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 분석

첫째, 국가책임의 확대로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과실상계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성격, 가해자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위험영역이론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자해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과실상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손해배상 유형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원고 측 과실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행하는 결정통보에 대해서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훈 처장이 행하는 결정과 동일하게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의 심사결정 내용에 따라 「군인재해보상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2015. 6. 22.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전사자 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법률의 형식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도록 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각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의 결정 통보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사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 개념의 불일치로 인하여 심사위원회가 실무상 행사하는 순직 여부 심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 개념을 초과하는 시행령(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행령의 문제)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를 법률의 문언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한다”를 삭제함으로써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률보다 축소 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3. 보상체계 실태 분석

첫째, 순직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순직등급의 차별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차별이 망인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의 행정적 용도로만 활용될 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등급을 구분함으로써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차별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고통을 더하게 하므로 순직등급 차별항목을 삭제하고 ‘순직’으로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사용하는 순직의 용어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국방부에서 용어상에 순직으로 결정되었어도 국가보훈처에서 순직이 아니거나 재해사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유족의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므로 양 기관의 순직개념을 통일해야 한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같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병사의 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에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과 병사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군인으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간부와 같이 직무수행과 작전·교육훈련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재원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무복무자의 자해사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무복무자의 징집에 의한 복무환경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의 상황과 조건, 직무와 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 순직등급을 분류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의 군 복무 자체가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무복무자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해사망자의 죽음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대적 요인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반사망자 분류기준에서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대적 요인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부대 내에서 자해사망하면 순직이고, 영외에서 자해사망하면 일반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넷째, 별도의 조사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건·사고 발생 시 군 내부의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였기에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단에 귀속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하였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군사경찰에 오랫동안 복무했던 수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더라도 동료들이 부대와 전우를 위해 군 내부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외부에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신설과 연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별도의 조사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무복무자 사망 시 전공사상심사와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을 일부 통합하여 유족이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 심사가 가능하도록 유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인들과 유족들이 원하는

바는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를 통합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문제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둔 유족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명예를 고양하고 순직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유가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등록심사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다. 유족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자동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는 불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능한 한 심사과정을 통합하고 군의 전공사상심사 결과와 사망진단서, 의무조사 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와 공유함으로써 유족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유족의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설문조사 결과 분석

첫째, 보훈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설문 결과 입원 장병 모두 보훈보상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입원한 병사나 간부도 입원한 이후에 병실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서는 소속부대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실제 군 생활 중 부상을 입고 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에 공상 처리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아는 것이 없어서 매우 막막하다. 보훈보상 제도를 모르고 상이를 가진 장병이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야전 각급 부대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병에게 보훈보상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재도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재를 보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둘째, 공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입원 병사 및 간부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은 것은 1) 공상 처리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2) 공상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시간 단축이었다. 즉 입원 장병 모두가 공상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는 본인의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상 신청과 같은 행정 처리를 해본 경험도 거의 없을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제대 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같이 국방부와 각 군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장병들이 전역 시 공상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라는 사실을 장병에게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보상금 수준의 향상과 함께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연감 2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1급 1항 550여만 원에서부터 7급 49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보훈보상대상자는 1급 1항 380여만 원에서부터 7급 34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5급 이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2급 이하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언론에서 발표한 ‘2021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51.7%로, 마지막 조사였던 2018년 63.0% 대비 11.3%p 크게 감소했다.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보훈 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다. 달리 말하면 현재 보훈 대상자 중 절반 정도는 보훈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대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가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치유 캠프와 심리상담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심층면접 결과 분석

첫째, 군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법률적인 개선 외에도 각 군 차원에서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심층면접 결과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장례, 안장, 보훈처 심의, 소송 진행 등 과정에서 명

예롭지 못하고 행정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지방에서 부대, 각 군 본부, 병원까지 수차례 왕래한 경우가 많았다.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부상자 가족들 역시 공상 신청 등을 위한 서류 발급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유가족지원팀을 확충하고, 공상처리 등을 담당하는 부상자 지원팀을 신설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군무원 등을 채용해서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설 조직을 통해 제대 군인 및 유가족들의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하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2022년 3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경우 윈스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서울시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재단 등을 통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 부상을 당한 제대 군인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조모임’과 같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부상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집단 상담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상처를 공유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중대한 부상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가족들도 간병비 부담은 물론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제대군인 지원센터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군 복무 중 자해사망하는 사건은 연평균('16 ~ '20년) 53건에 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연평균('16 ~'20년) 21.4건에 달하며, 1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고 역시 연평균('16 ~ '20년) 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 : ('16.) 54명, ('17.) 51명, ('18.) 56명, ('19.) 62명, ('20.) 42명, ('21.) 83명

** 안전사고 : ('16.) 62건, ('17.) 71건, ('18.) 83건, ('19.) 73건, ('20.) 57건

군은 그 특성상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며, 이에 더하여 열악한 환경 및 수직적 문화로 인한 장병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병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생명권 침해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치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피해 장병 및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유가족의 보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는 예우 및 보훈, 그리고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¹⁾에 따라 2012. 7. 1.부터 자해사망도 순직

1) 동 훈령은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2012. 6. 29. 개정되고 동년 7. 1. 시행되었다. 동 훈령 제3조는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 사망(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2. 상이(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별표1]에 규정하고 있

에 포함되는 등 국방부의 순직 인정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또한, 2022. 1. 4.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7. 5.부터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²⁾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국방부에서 순직이나 공상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하다.

장병 및 유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1) 사고 발생 단계 - (2)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통보 및 정보공유 / 행정지원 단계 - (3) 공정한 조사 및 진상규명 단계 - (4) 피해 장병과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단계 등 단계별로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부족하거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부대 측과 장병 및 유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육군의 경우 인사사령부 산하에 유가족지원팀이 있어 장례 및 안장 지원, 유가족 위문 및 고인 추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해군이나 공군에는 아직 이러한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둘째 국가보훈처에는 심리 재활집중센터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만 이용할 수 있어 전체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자해사망의 경우 해당 부대에서는 지휘·감독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공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사망원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 사망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으로 2023. 12. 14.까지만 존속할 예정이며, 2018. 9. 14.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만 가능한

는바, 순직·공상에 해당하는 자해사망 규정은 다음과 같다.

2-14.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2)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내용은 본 정책연구의 핵심인바, 이하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 피해 유가족 단체 등에서는 장병이 군 복무 중 자해행위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순직 인정 등을 통한 보상뿐만 아니라, 유가족 이송 지원, 사망 관련 행정처리, 유가족 치유 등 국가의 유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와 군 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제3의 기관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고 조사과정에서의 유가족 배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결정 불일치, 순직등급에 따른 차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 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³⁾ 이에 따라 「병역법」은 국가가 젊은 청년들을 징집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국가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군 사망·부상·질병사고 등 발생 시 현행 예우·보상·지원절차, 피해 장병 및 유가족의 애로사항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문헌연구·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자로부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청취한 후, 이를 종합·분석하여 장병의 건강권 및 명예권, 유가족의 참여권, 신원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는 주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중심이 될 것임을 밝혀 둔다.

3)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4)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대한민국 건국 이후 보훈제도는 군사원호형태로 시작되었다. 1950년에 「군사원호법」⁵⁾이 제정·시행되어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무장공비 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군사원호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1960년대에는 「군사원호청설치법」⁶⁾과 「군사원호보상법」⁷⁾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한국원호복지공단법」,⁸⁾ 「원호기금법」⁹⁾이 제정·시행되었다. 1984년에는 기존의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의 2개의 기본법률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5개의 지원법률이 통합되어 1984년 8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¹⁰⁾이 제정·시행되었으며, 1997년에 국가유공자법¹¹⁾으로 일부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¹²⁾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보훈보상자법¹³⁾이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군인의 사망·부상에 대한 배상·보상·보훈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등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의 법령 및 판례 등 주요 대상은 2011년 개편된 법 체계 이후를 중심으로 하고, 이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1년 이전의 법령 및 판례를 비

5) 법률 제127호, 1950. 4. 14. 제정, 1950. 6. 1. 시행.

6) 법률 제647호, 1961. 7. 5. 제정, 1961. 7. 5. 시행.

7) 법률 제758호, 1961. 11. 1. 제정, 1961. 11. 1. 시행.

8) 법률 제3419호, 1981. 4. 4. 제정·시행.

9) 법률 제3400호, 1981. 3. 27. 제정·시행.

10)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1985. 1. 1. 시행.

11)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12) 법률 제7572호, 2005. 5. 31. 제정, 2005. 12. 1. 시행.

13)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정, 2012. 7. 1. 시행.

교·분석한다.

한편, 연구내용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쟁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현재 군복무 관련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법령 체계는 먼저 군인사관리 및 군차원의 보상 측면에서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등을 확인 및 분류하고 이를 보상하는 법령이 있고, 다른 한편 사망자가 예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보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군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넓은 의미의 대우는 예우와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우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군인사법」상 순직 개념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특히 자해사망의 경우)이 있는바, 예컨대, 「군인사법」상 순직이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I, II, III형) 구분의 불명확성(직접성 여부 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둘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현행 법률의 위헌성과 구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현행 법률체계를 전제로 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한다면, 과연 보훈보상대상과 재해보상대상의 법적 성격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거론될 수 있다. 넷째, 더욱이 보다 근본적 문제로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군 의무복무 장병이 자해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입증책임의 문제로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당인과관계 및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원고가 주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님을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경우 군 의무복무 장병임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넓게 인정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편, 보상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첫째, 군 의무복무자의 경우 자해 부상 또는 자해사망에 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보상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이들 대상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는 군의무복무자라 하더라도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봉급을 현실화하고 연금을 통해 직업군인과 동일한 지원체제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군인연금의 방법 등 보상의 현실화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과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바, 법률 정합성의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 셋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상 보상의 현실화를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자해사망의 경우 유족들은 사망자의 명예를 존중받기 위하여 보상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해사망을 바라보는 시각(視覺)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가배상과 보상의 문제인바, 여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의 유연한 적용,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이후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진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의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째,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를 고찰하는바, 세부적으로는 (1)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관련 법령분석과 개정 「군인사법」의 법적 함의 등을 분석하고, 이어서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분석한다. (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등 기타 공무원의 보상 관련 법령을 분석한다. (3) 기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 의무경찰 관리규칙, 국방 환자관리 훈령 등 법령 분석한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심사절차 및 인정현황과 보상종류 및 범위로서, (1)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인정현황,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범위 등 국가유공자 심사절차 등을 분석한다. 또한 여기에는 개정 「군인사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인정에 미칠 영향 분석이 포함된다. (2) 보훈보상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심사절차 및 인정현황,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범위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심사절차 등을 분석한다. (3) 국가책임 범위의 확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인정사례를 고찰한다.

셋째, 심사결정 이의신청 유형 및 재심사 현황을 파악하는데, 여기에는 (1) 「군

인 재해보상법」상 이의신청 및 현황, (2)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 및 현황, (3) 보훈보상자법상 이의신청 및 현황 등이 포함된다.

넷째,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법리적 문제와 지원체계를 검토하는바, 여기에는 (1) 국가유공자 등 결정에 대한 심판재결 사례 및 판례 분석,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대한 입증책임, (3) 군 사망·부상사고 등에 대한 지원체계 및 운영현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지원제도(사망 및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제도 등),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상의 지원제도(의료 및 취업지원제도 등)을 분석한다. (4) 군 병원 의무조사 사례 분석을 행하는바, 세부적으로는 군 의무조사 관련 규정과 군병원 의무조사 사례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군 사망·부상사고 등 보상문제로서, (1)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2)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3) 조사기관 설립 및 권리보장 체계화, (4) 사고 발생 시 조치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여섯째,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실태에 대한 관련자들의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한 개선책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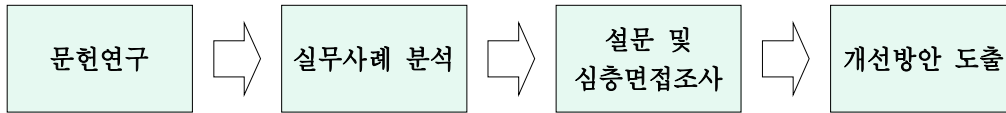
2. 연구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범위에 명시된 8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실무를 파악하고, 관련자 설문 및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제한요소를 진단하고 분석한 후, 과제 제기부서와의 협조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문헌연구에는 기존 연구보고서 및 검토 자료 연구, 각종 세미나 및 발표 자료 활용, 인터넷 자료(민간/해외자료) 발굴, 각종 연구자료/통계자료 분석(국회도서관, 육군 교육사 도서관 등), 관련 법규 분석 등이 해당한다. 둘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인바, 관련 분야 외부 자문단 구성하여 이들의 의견 청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및 실무진 토의를 진행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하며, 연구수행절차 및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연구 일정과 일치되도록 추진한다. 즉 문헌연구 단계, 실무사례분석 단계, 설문 및 심

층면접조사 단계, 결론제시 단계 등을 통해 본 연구에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방법

한편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에서 피해 장병 및 유·가족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들의 상처가 복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대상자 면담 시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려한다.

제2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

1.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 관련 법령 분석

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1) 개요

군 사망·부상 사고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여러 법령 중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다. 헌법 제29조는 국민의 국가배상청권에 관한 규정이며, 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 바로 「국가배상법」이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인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배상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군인의 사망 등 사고 발생 시에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한계로서 군인 등의 재해보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¹⁴⁾

2)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

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 및 내용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권

14) 권영복·이철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22, 138면.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은 1969년 일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¹⁵⁾ 제26조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내용의 조문이 규정된 것은 1972년 개정된 「대한민국헌법」¹⁶⁾ 제26조이다. 1972년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군인·군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1980년 전부개정된 「대한민국 헌법」¹⁷⁾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¹⁸⁾ 제29조 제2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연혁 및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15) 헌법 제7호, 1969. 10. 21. 일부개정·시행.

16)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시행.

17) 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시행.

18)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1955. 2. 25. 시행.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을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이라 한다.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모두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1951년 법률 제231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총 5개의 조문으로 제2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7년 법률 제1899호로 기존의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 관한 절차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새로이 제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중에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영내·함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서 조항으로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이유로 ‘군인·군속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 또는 보상금등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지급받는 폐단을 방지’¹⁹⁾하고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1967년 개

19) 「국가배상법」 제·개정이유(법률 제1899호, 1967. 3. 3. 폐지제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8655&lsId=&efYd=196704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정 시에는 제5조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군인 등의 배상금지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다. 1983년 개정법률²⁰⁾ 제5조에서 단서 조항으로서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3)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 분석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문제는 ‘군경의 이 중배상청구금지’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판례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배상이 금지된다는 입장이며, 학설의 경우에는 보상과 배상의 법적 성질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헌여부를 다룰 수는 없고 종국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²¹⁾²²⁾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기본권 중인 하나인 국가배상청구권을 군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심판 등을 통한 문제해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또한 가지고 있다. 먼저,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20) 법률 제3235호, 1980. 1. 4. 제정, 1980. 2. 1. 시행.

21) 권영복·이철호, 앞의 논문, 제138-139면.

22) 헌법 제29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대한 무력화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헌법 규정 상호 간에 우열이 있으며, 하위 헌법 규정이 상위의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하위 헌법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이상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안암법학, 1993, 259-280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헌법의 개별규정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라고 규정하여 군인 등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사망 및 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해당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 청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가배상청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였다면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실제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보상의 정도가 국가배상에 준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으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업공무원 신분의 군인, 경찰과 병역의무자 신분의 군복무자(현역병 및 징집 중인 예비군)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 및 배상청구가 모두 제한받는 문제점이 있다. 직업공무원 신분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연금 및 보훈제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보상에서 제외되며, 재해보상에 있어서도 직업공무원 신분의 군인들보다 제한적인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가 가지는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실질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병역의무자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실질적 보상은 ‘재해보상제도’에서 출발하여 ‘보훈제도(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로 이어져야 한다.

나. 「군인사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1) 「군인사법」 내용

「군인사법」²³⁾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서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

23) 법률 제18680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

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용 및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사망·부상 사고 발생에 관한 내용은 「군인사법」 제9장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제54조 내지 제55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4조에서는 군인이 전사 또는 전상을 당하거나 공무로 인해 질병 및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유족은 전사 등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군인의 사망·부상 발생에 따른 보상의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의2에서는 군인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망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① 전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와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전사자로 구분된다. ② 순직자의 경우에는 각각 순직 I 형에서부터 순직 III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직 I 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 II 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질병 사망을 포함하는 경우, 순직 III 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로 마찬가지로 질병 사망을 포함한 경우이다. ③ 일반사망자는 전사자 및 순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이다.

상이의 경우에는 전상자와 공상자 그리고 비전공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①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②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③ 비전공상자는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제54조의2 제2항에서는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 제54조의3에서는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

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포함 13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²⁴⁾으로 구성되면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지정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4조의4에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관으로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3명 이상 80명 이내의 위원²⁵⁾으로 구성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운영은 보통전공 사상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동법 제54조의5에서는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동법

24)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③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자격이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5)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④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5조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 제54조의 ① 전사 또는 전상, ②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을 이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군인사법 시행령」 내용

「군인사법 시행령」은 제6절에서 전사상 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제60조의23 내지 제60조의29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의23에서는 전사자 등의 구분에서 ① 전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8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순직자의 경우에는 순직 I 형의 경우에는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1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순직 II 형은 ‘순직 I 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속·매복·정찰 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7가지로 구분하고, 순직 III 형의 경우에는 ‘순직 I 형 또는 순직 II 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14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③ 일반사망자의 경우는 전사자 및 순직자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일반사망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상 및 공상 등에 구분에서는 ① 전상자의 경우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해 7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② 공상자는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3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③ 비전공상자의 경우에는 전상사 및 공상사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상이로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의23 제2항에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자의 경우에 대한 순직인정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60조의25에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해당 국가기관을 명시하였고, 당사자 또는 재산상속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신설에 대한 검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2022년 1월 4일 신설된 조문으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의 신설에 대해 제·개정이유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신설은 제한적으로나마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자로 분류함으로써 과거 사망자의 유족들이 순직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보통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및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해당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일반사망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에 대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군(軍)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순직 불해당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을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의 내용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 형에서 순직Ⅲ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의무복무 중인 자의 자해사망’은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

1) 「군인 재해보상법」 내용

「군인 재해보상법」²⁶⁾은 군인의 복무 중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및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동법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²⁷⁾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2020년 6월에 제정되었다.

26) 법률 제18804호, 2022. 2. 3. 일부개정·시행.

27) 「군인 재해보상법」 제·개정 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2_115&lsId=&efYd=2020061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가) 적용범위 및 ‘공무상 재해’ 등의 의미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현역 및 소집되어 군에서 복무 중인 군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② 병, ③ 군간부후보생(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의 대상이 된다.²⁸⁾ 「군인 재해 보상법」상의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애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와 관련 있는 모든 종류의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동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²⁹⁾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유족의 개념을 「군인연금법」의 내용을 준용하면서, 사망보상금에 대하여는 부양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³⁰⁾

28)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29)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 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25세 미만인 손자녀
 2.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³¹⁾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심의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크게 부상, 질병, 장해,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공무상 부상’이란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④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 해당한다.

‘공무상 질병’이란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질병,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다만, 합병증의 경우에 그 발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해는 또한 공무상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공무상 사망’은 ①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② 공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가 군인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일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30)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2호.

31)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4호.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공무상 재해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어 장해 해당여부, 공무상 요양 및 공무상 부상 및 질병의 해당여부, 공무상 사망의 해당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① 의료 또는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②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 및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며, 의료 또는 법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³²⁾

다)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보상급여

「군인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는 크게 ① 공무상 요양비, ② 장해급여, ③ 재해유족급여, ④ 부조급여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즉,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진단, 약제 및 치료재와 보충구의 지급, 처치 및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입원), 치료를 위한 간호 및 이송 등의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무상 요양비의 2년 범위 내의 실제 요양기간에 필요한 금액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³³⁾ 또한, 이미 기존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군인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시금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다.³⁴⁾

공무상 요양비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

3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 내지 제6조.

33) 「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

34) 「군인 재해보상법」 제21조.

약계의 대표가 매년 계약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즉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산정된 요양비,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³⁵⁾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③ 위의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로 산정된다.

(2) 상이연금

군인이 ①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②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받는다.³⁶⁾ 즉, 상이연금은 ‘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상이연금의 금액은 상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³⁷⁾에 등급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상이등급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둘 이상이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여 상이등급을 정한다.

[표 2-1] 상이등급별 상이연금 금액비율³⁸⁾

구분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6)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

37) 「군인연금법」 제3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3)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및 군간부후보생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표 2-2]와 같다.

[표 2-2]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³⁹⁾

장애 보상등급	그 밖의 심신장애 (일반장애)	전 상 (일반장애의 2.5배)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의 1.88배)
1급	4,851만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9)	1억2,127.5만원	9,119.88만원
2급	3,234만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	8,085만원	6,079.92만원
3급	2,425.5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5)	6,063.75만원	4559.94만원
4급	1,617만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	4042.5만원	3039.96만원

※ 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만원

또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 외의 군인⁴⁰⁾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외국 근무 중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⁴¹⁾

(4) 재해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① 상이유족연금, ② 순직유족연금, ③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 사망보상금이 있다. 상이유족연금은 앞의 상이연

39)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40) 지원에 의해 임용된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 등을 말함.

41)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상이연금액의 6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5세 미만인 자녀와 상이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또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인 손자녀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인 손자녀가 유족인 경우에는 상이연금액의 70%를 지급한다.⁴²⁾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때는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⁴³⁾ 순직유족 연금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순직유족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4조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⁴⁴⁾ 사망보상금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지급액은 공무상 사망의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표 2-3]과 같다.

[표 2-3]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⁴⁵⁾

구 분	보 상 기 준	금 액
전 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0	3억 2,340만원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5	2억 4,255만원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4	1억 2,936만원

※ 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만원

42)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43)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

44)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 「군인연금법」 제34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text{퇴직한 달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복무연수} \times \{975/1,000 + 65/10,000(\text{복무연수}-5)\}$$

45)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5) 기 타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에서는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보상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급여의 조정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수급권자는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중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 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법 제11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 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의 시효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이다. 급여 중 공무상 요양비의 경우에는 그 시효가 3년이다. 전시 및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효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⁴⁶⁾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내용

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단서에서 규정된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상 재해가

46)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인정되는 경우는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②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③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⁴⁷⁾이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4]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의 인정기준⁴⁸⁾

<p>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군인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군인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p>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p> <p>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p> <p>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서 그 부상 또는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또는 사망</p>

4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

48)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표 2-5]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⁴⁹⁾

<p>1. 공무상 질병</p> <p>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p> <p>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p> <p>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p> <p>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p> <p>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p> <p>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p>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p> <p>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p> <p>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p> <p>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p> <p>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p> <p>라. 근골격계 질병</p> <p>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p> <p>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중</p> <p>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p> <p>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p> <p>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환</p>

4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p>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p> <p>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p> <p>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p> <p>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p> <p>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p>
<p>2. 평소의 질병·발병 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p> <p>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p> <p>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p> <p>다. 야간근무를 계속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p>

나)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에서는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며 그 세부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상이등급의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6] 상이등급 세부 인정기준⁵⁰⁾

상이 등급	기 준
1급	<p>가. 두 눈이 실명된 사람</p> <p>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p> <p>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p> <p>라.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p> <p>마.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p> <p>바.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p> <p>사.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p> <p>아.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p>

5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2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다.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바.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마.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마.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사.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나.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라.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마.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바.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사.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나.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다.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마.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급	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다.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사.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아.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자.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차.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카.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파.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서는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위의 세부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등급에 정해진 장애에 준해 그 상이등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둘 이상의 장애가 병합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병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표 2-7] 2개 이상 장애의 종합상이등급기준⁵¹⁾

상이등급(1) \ 상이등급(2)	7	6	5	4	3	2
7	4	4	3	3	2	2
6	4	4	3	3	2	1
5	3	3	3	3	2	1
4	3	3	3	2	2	1
3	2	2	2	2	1	1
2	2	1	1	1	1	1

비고 : 상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상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상호 만나는 란의 등급을 종합상이등급으로 한다.

라.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⁵²⁾

5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52) 국가유공자법 제1조 내지 제2조.

1)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 및 유족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중 군인과 관련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국가유공자 대상자

구 분	내 용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무공수훈자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위의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②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③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⁵³⁾

또한,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

런 법령 또는 소속 장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②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③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동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⁵⁴⁾ 국가유공자법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가 해당한다.⁵⁵⁾

2)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원

53)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54)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55) 국가유공자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보상금 및 수당(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및 사망일시금 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전상군경·공상군경과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의 판정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등에게 지급되며⁵⁶⁾,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표 2-9] 및 [표 2-10]과 같다.

[표 2-9] 전상 및 공상군경 보상금의 지급기준⁵⁷⁾

단위 : 만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월지급액	332.3~300.0	266.7	249.3	209.2	173.3	158.1~977	52.1

[표 2-10]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보상금의 지급기준⁵⁸⁾

단위 : 만원

구 분	유족의 구분	월지급액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배우자	175.1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03.0
	부모 또는 조부모	172.0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배우자	151.8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76.2
	부모 또는 조부모	149.3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배우자	55.7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80.3
	부모 또는 조부모	52.8

56) 국가유공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5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4].

5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⁵⁹⁾

[표 2-11] 생활조정수당 지급구분표⁶⁰⁾

단위 : 만원

구 분	가족구성원 수		
	1명 이하	2명 이상 3명 이하	4명 이상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3	28.3	33.6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2	25.2	30.5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0	22.0	27.3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59) 세부적인 사항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호)' 참조.

60)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

[표 2-12] 간호수당 지급구분표⁶¹⁾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월지급액
상시 간호 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76.3
수시 간호 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상이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84.3

부양가족수당은 ①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③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와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7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6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의2].

[표 2-13] 부양가족수당 지급구분표⁶²⁾

단위 : 만원

구 분	부양가족	월지급액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배우자	10.0
	미성년 자녀 1명당	10.0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당	10.0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미성년 제매 1명당	20.0

중상이부가수당은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표 2-14] 중상이부가수당 지급기준⁶³⁾

단위 : 만원

구 분	월 지급액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49.5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72.7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05.5

무공영예수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상금 및 참전 명예수당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다.⁶⁴⁾

6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의3].

6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6조의 3.

64)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2.

[표 2-15] 무공영예수당 지급구분표⁶⁵⁾

단위 : 만원

구 분	월 지급액
태극무공훈장	43.0
을지무공훈장	42.5
충무무공훈장	42.0
화랑무공훈장	41.5
인헌무공훈장	41.0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상수당은 전상군경에 대하여 월 9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표 2-16] 고령수당 지급구분표⁶⁶⁾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월지급액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	9.7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14.9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과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7

65)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5의4].

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표 2-17]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구분표⁶⁷⁾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월지급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	사망자 2명	27.4
	3명 이상	27.4 + 27.4(초과하는 1명당 추가 지급)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⁶⁸⁾

[표 2-18]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⁶⁹⁾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액
전상군경·공상군경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70.4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44.4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12.7
보상금 지급 대상인 유족		112.7

6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68) 국가유공자법 제17조.

69)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6].

(2)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① 전상군경·공상군경, ② 무공수훈자, ③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④ 전상군경·공상군경의 자녀, ⑤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의 미성년 제매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면제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교육지원으로 일정한 경우에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⁷⁰⁾

(3)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① 전상군경·공상군경, ②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③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 ④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 ⑤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이며,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및 기업체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을 포함하여 3회의 취업지원을 받는다.⁷¹⁾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상군경·공상군경,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주며,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의 경우에는 만점의 5%를 가점하여 준다.⁷²⁾

이 밖에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⁷³⁾

(4) 의료지원 및 기타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보철구의 지급⁷⁴⁾, 의학적 재활, 심리적 재활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70) 세부적인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28호)에서 규정.

71) 국가유공자법 제289조 내지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72) 국가유공자법 제31조.

73) 국가유공자법 제38조 내지 제39조.

74) 세부적인 지급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85호)에서 규정.

진료의 경우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응급진료, 입원진료, 통원진료⁷⁵⁾ 등을 국가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 진료비용은 국가(지방 자치단체 50%)가 부담한다.

심리적 재활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이용,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⁷⁶⁾

(5)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등에 대해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을 지원하며 그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⁷⁷⁾

한도액은 농토구입대부의 경우는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주택구입 대부·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주택개량대부는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⁷⁸⁾ 각 상환기간은 농토구입대부는 3년 거치 후 12년, 주택대부 중 주택구입대부는 20년, 주택개량 및 임차대부는 7년, 사업대부는 15년, 생활 안정대부는 5년으로 분할상환하며, 대부금의 이율은 1%부터 5%까지의 범위로 한다.⁷⁹⁾

75)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로 한다.

76) 국가유공자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

77) 국가유공자법 제46조 내지 제49조.

78) 세부적 지원내용은 대부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1401호)에서 규정.

79) 국가유공자법 제51조·제53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6) 기타지원

기타지원으로는 ①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는 양로지원, ②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요양지원,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제가 복지서비스, ④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 등을 비롯하여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공급, 생업지원, 연수교육 등이 있다.⁸⁰⁾

마. 보훈보상자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며, 단순 사고 또는 질환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되었다.

보훈보상자법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보훈급여를 비롯하여 교육·취업·의료 및 대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은 기존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내용 중 그 적용대상만을 구분하여 별도로 보훈보상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규정의 내용은 그 대상만을 달리할 뿐 대부분 국가유공자법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80) 국가유공자법 제63조 내지 제69조.

1) 보훈보상대상자 기준 및 유족 등

보훈보상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중 군인과 관련된 내용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보훈보상대상자

구 분	내 용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앞서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②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⁸¹⁾

또한,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②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③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동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⁸²⁾

보훈보상자법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가 해당한다.⁸³⁾

8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

8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83) 보훈보상자법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2) 보훈보상자법 및 시행령의 지원

(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보상금 및 수당(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은 재해부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의 판정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며⁸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84) 보훈보상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표 2-20] 재해부상군경의 보상금의 지급기준⁸⁵⁾

단위 : 만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월지급액	232.7~210.0	186.7	174.6	146.5	121.4	110.7~68.4	36.5

[표 2-21] 재해사망군경의 보상금의 지급기준⁸⁶⁾

단위 : 만원

구 분	유족의 구분	월지급액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배우자	122.6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42.1
	부모 또는 조부모	120.4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배우자	106.3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23.4
	부모 또는 조부모	104.6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배우자	39.0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6.3
	부모 또는 조부모	37.0

생활조정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85)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2].

86)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2].

[표 2-22] 생활조정수당 지급구분표⁸⁷⁾

단위 : 만원

구 분	가족구성원 수		
	1명 이하	2명 이상 3명 이하	4명 이상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8.3	28.3	33.6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5.2	25.2	30.5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2.0	22.0	27.3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 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 장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간호수당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
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지급한다.

[표 2-23] 간호수당 지급구분표⁸⁸⁾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월지급액
상시 간호 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 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 상에 해당하는 사람	276.3

87)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3].

88)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4].

수시 간호 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184.3
----------------	---	-------

부양가족수당은 ①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②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③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정)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표 2-24] 부양가족수당 지급구분표⁸⁹⁾

단위 : 만원

구 분	부양가족	월지급액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배우자	10.0
	미성년 자녀 1명당	10.0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당	10.0
재해사망군경의 자녀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미성년 제매 1명당	20.0

중상이부가수당은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89)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5].

[표 2-25] 중상이부가수당 지급기준⁹⁰⁾

단위 : 만원

구 분	월 지급액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74.5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20.7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3.5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은 다음과 같다.

[표 2-26] 고령수당 지급구분표⁹¹⁾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월지급액
재해부상군경 중 60세 이상인 사람	9.7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14.9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7

[표 2-27]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구분표⁹²⁾

단위 : 만원

지급 대상		월지급액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망자 2명	27.4
	3명 이상	27.4 + 27.4(초과하는 1명당 추가 지급)
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해부상 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90)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2조.

91)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6].

9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6].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⁹³⁾

[표 2-28]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⁹⁴⁾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액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170.4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144.4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12.7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112.7

(2)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은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자녀, ④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이다.⁹⁵⁾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 사립 대학의 경우에는 면제 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교육지원으로 일정한 경우에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⁹⁶⁾

(3)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이며,

93) 보훈보상자법 제20조.

94)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7].

95) 보훈보상자법 제24조 및 제25조.

96) 세부적인 교육지원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28호)」에서 규정.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및 기업체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을 포함하여 3회의 취업지원을 받는다.⁹⁷⁾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10%를 가점하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만점의 5%를 가점하여 준다.⁹⁸⁾

이 밖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⁹⁹⁾

(4) 의료지원 및 기타 지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보철구의 지급¹⁰⁰⁾, 의학적 재활, 보훈재가복지서비스¹⁰¹⁾, 심리적 재활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해부상군경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¹⁰²⁾

진료의 경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응급진료, 입원진료, 통원진료¹⁰³⁾ 등을

97) 보훈보상자법 제32조 내지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98) 보훈보상자법 제35조.

99) 보훈보상자법 제48조 내지 제49조.

100) 세부적인 지급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85호)」에서 규정.

101) 세부적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80호)」에서 규정.

102) 보훈보상자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103)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0조(진료)

-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국가 의료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며 그 진료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50%)가 부담한다.

심리적 재활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이용,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¹⁰⁴⁾

(5) 대부지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을 지원하며 그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¹⁰⁵⁾

한도액은 농토구입대부의 경우는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주택구입 대부·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주택개량대부는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에서 지원한다.¹⁰⁶⁾ 각 상환기간은 농토구입대부는 3년 거치 후 12년, 주택대부 중 주택구입대부는 20년, 주택개량 및 임차대부는 7년, 사업대부는 15년, 생활 안정대부는 5년으로 분할상환하며, 대부금의 이율은 1%부터 5%까지의 범위로 한다.¹⁰⁷⁾

바. 「국방 환자관리 훈령」 108)의 주요내용

「국방 환자관리 훈령」은 군인 및 군무원의 의료지원에 관한 절차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의 내용으로는 현역 군인의 입원 및 외래, 민간의료기관 진료, 의무조사 보고, 제대군인 진료 등이 있다.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104) 보훈보상자법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

105) 보훈보상자법 제55조 내지 제58조.

106) 세부적 지원내용은 「대부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1401호)」에서 규정.

107) 보훈보상자법 제59조 내지 제60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108) 국방부훈령 제2635호, 2022. 3. 3. 일부개정·시행.

1) 주요 개념 및 진료대상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규정된 주요 개념으로는 ①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현역병 등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②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장병에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위탁치료와 위탁검사, ③ 민간의료기관 자비부담 위탁검사 :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중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부담을 전제로 민간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제도, ④ 공무 연관성 : 발병경위서를 근거로 업무담당자가 질병·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해 각 군 보통전 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있거나 군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 (치과보철지원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무 연관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¹⁰⁹⁾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서 규정하는 진료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②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③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학생군사교육 중인 자, ⑥ 예비군 중 병역법 제75조 제6항 제3호 및 예비군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¹¹⁰⁾¹¹¹⁾ ⑦ 병역법에 따라 징집 및 소집된 입영장정 등이다.

109) 「국방환자관리훈령」 제6호, 제7호, 제8호, 제10호.

110)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111)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지원 내용

현역 군인은 전상·공상·비공상을 불문하고 무상으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 외래 및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먼저,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비 지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을 그 대상으로 하며, 학군간부후보생과 위탁진료의 대상은 진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 범위는 민간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¹¹²⁾ 민간의료기관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29] 민간의료기관별 지원기준¹¹³⁾

1. 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가. 상해, 질병(수술 포함)에 대해 의료기관별 공제금액(1~2만원) 또는 자기부담금(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의·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나. 다만, 의·병원급 1만원 미만 또는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없음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는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의 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한다.

(나) 위탁치료 등

위탁치료의 대상은 병(휴가, 외출, 외박 포함),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112) 「국방환자관리훈령」 제39조 내지 제39조의2.

113) 「국방환자관리훈령」 [별표 8].

상근예비역, 보충역, 군간부후보생, 훈련병, 군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자 (현역군인이 아닌 자)이며, 이때, 상근예비역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민간위탁진료 대상에 포함된다.

위탁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① 군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다만,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 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 ②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장애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 ③ 군 의료지원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격오지부대(산간벽지, 해안 및 도서지역, 함정, 레이더기지 등)에 근무하는 병으로서 외래환자 및 응급환자, ④ 응급환자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 상황센터에서 위탁진료를 결정한 환자, ⑤ 기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위탁치료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질병과 환자이송 시 생명의 지장이 있어 위탁진료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상태에 따라 군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민간위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 진료를 거치고,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위탁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응급환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후 지체 없이 위탁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치료비 진급은 국군의무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의 위탁진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② 사전 승인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③ 위탁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¹¹⁴⁾

위탁검사의 대상은 위의 위탁치료 대상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포함한다. 위탁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위탁검사는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 중 군병원 입원환자의 급여·비급여항목 및 외래환자의 급여항목(다만, 제40조 위탁진료 대상에도 불구하고 각 군 규정에 따라 시행한 위생·특수 시설 근무자 신체검사, 공중근무자 비행적성평가를 위한 검사 중 항공 우주의료원에서 검사 불가능한 항목, 군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실습생 등의 감염관리

114)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0조, 제40조의2 제1항, 제41조 내지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를 위한 항목 포함), ② 위탁치료 대상자에 대한 위탁검사는 군병원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가 요구되는 환자, ③ 기타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나 국군의무사령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위탁검사비 또한 국군의무 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의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① 군보건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단, 환자의 상태가 긴급을 요하여 상급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한 경우는 제외), ② 군보건의료기관장의 승인 없이 환자가 자의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¹¹⁵⁾

위탁진료의 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 사령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① 위탁진료범위 대상자 선정, 치료기간, 범위 및 구비서류의 타당성 심사, ② 청구금액 산정의 타당성 평가와 지급금액 심사 및 결정, ③ 간병비 및 상급병상사용료 지급 심사 및 결정, ④ 기타 위탁치료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각 군병원에서는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위탁진료의뢰서(부대용) 또는 위탁진료심의(연장)의결서(군병원 용)를 발행한다.¹¹⁶⁾

위탁진료비 외에 민간 의료기관 위탁 중인 환자를 대상¹¹⁷⁾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혈액종양 등 치료 또는 질환 악화에 따른 높은 감염 우려 수준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행위, 소란,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병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비급여대상인 상급병상(특실제외)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이 가능하다.¹¹⁸⁾

(다) 공무상 요양 및 의무조사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부사관 복무 중 지원에 의하여 군간부

115)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0조. 제40조의2 제2항.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116)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4조.

117) 불가피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18)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6조 내지 제47조.

후보생이 된 자로서 공무 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을 위해 간부는 군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나, 응급환자이거나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요양하려는 자는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의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¹¹⁹⁾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은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의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나.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의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¹²⁰⁾

군병원장은 ①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중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심신장애 등급표 및 심신장애 종합평가등급표의 1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상근예비역 포함)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5급 및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 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에 대해 ①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된 경우, ②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각 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의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¹²¹⁾

2. 타 공무원의 보상 관련 법령 분석 : 「공무원재해보상법」

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의 주요내용

「공무원재해보상법」 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

119) 자세한 내용은 「공무상요양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552호)」 참조.

120)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

121) 「국방환자관리훈령」 제48조 내지 제48조의2.

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2018년 제정되었다.¹²²⁾

1) 적용범위 및 ‘공무수행사망자’ 등의 의미

「공무원재해보상법」¹²³⁾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란 ①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②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 보호직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공무수행사망자’란 위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¹²⁴⁾

‘순직공무원’이란 ①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②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③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의미한다.

‘위험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의 범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①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②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 포함), ③ 부모

12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이유(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27_92&lsId=&efYd=201809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123) 「공무원재해보상법」, 법률 제18963호, 2022. 6. 10 일부수정, 2022. 6. 11. 시행.

124)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2조.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④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는 포함), ⑤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이다.

2)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는 ①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②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그러나, 공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특례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먼저 ‘공무상 부상’이란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④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을 말한다.

‘공무상 질병’이란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④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질병, ⑥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제외) 등이 해당한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¹²⁵⁾의 직무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에는 ①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④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 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가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①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②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이 해당한다.

그 외 공무원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③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④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경우이다.

또한, 공무원이 위험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와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정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가 해당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공무상 재해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두며, ①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②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③ 요양급여 등의 급여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연금·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

125)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람, ③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⑤ 그 밖에 재해보상·연금·복지·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심의한다.¹²⁶⁾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보상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는 크게 ① 요양급여, ② 재활급여, ③ 장해급여, ④ 간병급여, ⑥ 재해유족급여, ⑦ 부조급여 등이 있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동법이 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다.¹²⁷⁾

다음에서는 각각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치료제 및 보충구의 지급, 처치·수술이나 그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간호, 이송, 재활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급여이다.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126) 「공무원재해보상법」 제6조 내지 제7조.

127)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4조.

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을 할 수 있다.¹²⁸⁾

요양급여는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과 ③ 앞의 두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¹²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된다.¹³⁰⁾

나) 재활급여

재활급여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로 구분된다. 재활운동비는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②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애, 척추의 변형, 기능장애 또는 신경장애,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애(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로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¹³¹⁾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하며, 월 10만원의 금액의 범위¹³²⁾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하며, 1회 10만원(최대 10회)의 금액의 범위¹³³⁾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¹³⁴⁾

128)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 내지 제23조.

129)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법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130)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5조.

131)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132)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인사혁신처고시 제2018-7호)

1.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133)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인사혁신처고시 제2018-7호)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10회)

다) 장해급여

공무원이 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②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장해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애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표 2-30] 장해등급별 장해연금 비율¹³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구분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표 2-31] 2개 이상 장해의 종합상이등급기준¹³⁶⁾

장해등급(1) \ 장해등급(2)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3	2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134)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6조 내지 제27조.

135)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136)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4]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 비고: 장해등급(1)에 해당하는 등급과 장해등급(2)에 해당하는 등급이 서로 만나는 난의 등급을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예: 장해등급이 제7급과 제8급에 해당하는 2개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이 제5급으로 된다). 다만,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 또는 제1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종합장해등급으로 한다.

라)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표 2-32] 간병급여의 지급요건¹³⁷⁾

구 분	지급요건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마) 재해유족급여

재해유족연금은 ① 장해유족연금, ② 순직유족연금, ③ 순직유족보상금, ④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으로 구분한다.

137)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장해유족연금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해유족연금은 장해연금액의 60%를 지급한다.

순직유족연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그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에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20% 이내)을 더한 금액이다.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급여이다. 그 금액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 이내)을 더한 금액이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면, 금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이다. 단,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한다.

[표 2-33] 순직유족보상금 및 위험직무순직보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구 분	지급기준	금 액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4	1억 2,936만원
위험직무순직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45	2억 4,255만원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0 (대간첩 작전 수행)	3억 2,340만원

※ 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만원

나. 「공무원재해상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유족의 인정기준 및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4]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¹³⁸⁾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자녀·손자녀 및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138)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1].

공무상 재해 중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는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5] 공무상 부상의 인정기준¹³⁹⁾

<p>1. 공무상 부상</p> <p>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p>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p> <p>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 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p> <p>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p> <p>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p>

139)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표 2-36] 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¹⁴⁰⁾

<p>2. 공무상 질병</p> <p>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p>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p>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p>라. 근골격계 질병</p> <p>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p> <p>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p> <p>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p> <p>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환</p> <p>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환</p>

140)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p>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p> <p>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p>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p> <p>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p> <p>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p> <p>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p> <p>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p>
--

2)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의 대상이 되는 장애등급은 아래 [표 2-36]과 같다. 또한,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규정된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표 2-37] 장애등급¹⁴¹⁾

장애 등급	기 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1)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0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8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0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복장뼈)·갈비뼈·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법령 분석

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관리규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한다)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¹⁴²⁾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과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에 의해 구성되는 의무경찰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서 의무경찰대원의 사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먼저 의무경찰대법 제7조에서는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망 급여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망 급여금’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의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유족에 대한 범위와 순위에

142)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있다. ‘상이급여금’의 지급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2-38] 의무경찰의 상이급여금 지급금액¹⁴³⁾

단위 : 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1급 상이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7.8	1,761
2급~5급 상이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5.2	1,129
6급~7급 상이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0.419) × 3.9	880

※ 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만원

의무경찰대법 제8조에서는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¹⁴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된다. 의무경찰에 대한 사망 및 상이에 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보훈보상자법의 준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나. 의무소방대설치법령 및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의무소방대설치법」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¹⁴⁵⁾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 구성된 의무소방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서 의무소방 대원의 사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7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때

14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14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145)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¹⁴⁶⁾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보상금과 상이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산출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의무경찰대원'에 관한 보상과 동일하다.

제8조에서는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 보상자법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무소방원에 대한 사망 및 상이에 대하여 「군인 재해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보훈보상자법의 준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다.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규정¹⁴⁷⁾

사회복지요원이란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¹⁴⁸⁾에 따라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요원은 공사상 분류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요원의 순직·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사망급여금)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147) 병무청훈령 제1820호, 2021. 10. 7. 일부개정·시행.

148) 「병역법」 제26조(사회복지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 ① 사회복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 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표 2-39] 사회복무요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기준

구 분	기 준 및 범 위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3	복무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4	합숙근무처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 또는 공무수행 중 근무처 외의 취침 포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5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6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8	복무기관 재지정·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9	복무기관의 장의 통제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0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1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표 2-40]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별 기준 및 범위

구 분	기 준 및 범 위
2-1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충돌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

2-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p>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p> <p>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p> <p>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p> <p>다.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p> <p>2. 위 “1”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이나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경우</p>
2-3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p>1. 병원체로 인한 감염 사실과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p> <p>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p>
2-4	난 청	<p>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p> <p>1.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난청 증상이나 난청소견이 있는 경우</p> <p>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p>

2-5	악성종양	<p>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 또는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근무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거나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6	정신질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쟁·강간·총기사고 등 목숨이 위협받는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후 이와 연관되어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나. 위 “가”에 준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복무기관의 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②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③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않는다.

동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 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 위원회

를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서의 장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경우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하여 영 제153조의5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경우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된다.

제2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절차 등 분석

가.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상의 심사절차

국가유공자 심사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의 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 심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¹⁴⁹⁾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심사는 ① 요건심사 → ② 보상심사 ③ 상이등급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건심사에서는 공무수행과 사망 및 상이 상호간의 인과관계와 국가유공에 해당성 여부를 심사하며, 보상심사에는 법 적용의 대사 인정, 품위 보상자의 보상정지, 법 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등을 심사하며 등록과 관련해서는 대상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사의 중심이 된다.¹⁵⁰⁾ 상이등급 심사에서는 신청자가 입은 상이가 상이등급표 상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및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 등록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에 필요한 각 서류¹⁵¹⁾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및 보훈보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각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 날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¹⁵²⁾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149)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대상안내(https://simsa.mpva.go.kr/sub01/sub01_2.do); 김호정,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심사결정과 실무상 문제,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68면.

150)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대상안내(https://simsa.mpva.go.kr/sub01/sub01_2.do); 선은애, 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인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7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393면.

151) 각 필요서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재적등본 등 공통서류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개별서류로 나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과 보훈보상자법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볼 때에 신청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도 해당 등록신청은 상호 간의 등록신청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전몰 및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에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¹⁵³⁾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 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의4에서는 제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 대상사의 상이등급의 정도에 대한 판정을 할 때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유공자 제6조 및 제6조의 4에서는 각각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의 결정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¹⁵⁴⁾

즉, 보훈보상자법상의 등록신청 및 심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록신청 및 심사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건 및 상이심사에 있어서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요건심사에 대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심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2)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

153)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154)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4 제1항 및 보훈보상자법 제6조 제2항.

[표 2-4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요건 심사절차¹⁵⁵⁾



155)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절차안내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3.do).

[표 2-42] 심사단계 및 주요 심사내용¹⁵⁶⁾

심사 단계	심사 주안점
심사자료 접수	사무국 심사1과
↓	
검토서 작성	공무수행 중 외상질병발생, 입대전 부상·질병의 악화여부 검증 확인 검토서 작성(의학자문, 과거병력 조회, 진료기록, 판례, 의학자료 등)
↓	
검토서 확인 및 보완	요건 해당·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공무기인성 여부 검토내용 기재 작성한 검토서 정확성 및 요건관련사실 누락 여부 등 확인
↓	
제안서 작성	공무수행과의 상관관계(질병의 경우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 판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 판단 인우보증인 진술 인정여부 판단 의학영상자료에 대해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전문분야별 분과회의 안건 상정 ·본회의 안건 상정
↓	
분과회의, 본회의 의결 (심사회의)	분과회의 개최 : 분과회의 심사결과 전원 합의되지 않은 경우 및 중요· 쟁점 안건은 보완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본회의 개최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7일 소요)
↓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통합보훈시스템에 해당·비해당 등 전산입력 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사(의결)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통합보훈시스템 전자적 송부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별송

156)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절차안내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3.do).

상이등급사에 대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심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3] 상이등급 심사절차¹⁵⁷⁾



157)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절차안내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3.do).

[표 2-44] 상이등급 심사단계 및 주요 심사내용¹⁵⁸⁾

단 계	심사 주안점
심사자료 접수	사무국 심사4과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 심사자료 확인
↓	
검토서 작성	보훈병원 전문의 신체검사 소견내용 및 의무기록 검토 -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 여부 -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 적정여부 검토
↓	
검토서 확인 및 보완	안전에 대한 종합 검토 제안주문, 인정상이처 및 상이등급, 제안이유 등에 관한 검토 의견 기재
↓	
제안서 작성	인정상이처와 보훈병원 신체검사 실시 상이처의 일치여부 판단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의 적정여부 판단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 적정성 판단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	상이등급 구분 심사 안전 상정(등급, 분류번호, 종합판정 등)
↓	
분과회의, 본회의	분과회의 개최 - 분과회의 심사결과 전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중요·쟁점 안전은 보완·검토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 검토
↓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상이판정시스템 심사결과 전산입력 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사(의결)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통합보훈시스템 전자적 송부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158)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심사절차안내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3.do).

나. 보훈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법 제63조 제4항과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보훈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①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①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⑤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①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⑤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⑥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경찰·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⑦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¹⁵⁹⁾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¹⁶⁰⁾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분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

159)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6.

160)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5.

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¹⁶¹⁾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과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으로 본다.¹⁶²⁾

[표 2-45] 보훈심사위원회 분과 구성¹⁶³⁾

제1분과 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	제3분과 위원회	제4분과 위원회	제5분과 위원회	제6분과 위원회
독립유공자, 전상, 보상심사	공상 전형(외)과	공상 신경(외)과	공상 내과, 정신과	공상 기타질환	상이등급 판정심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¹⁶⁴⁾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증인과 증거에 대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②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③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의 재심의 요구에 의해 재심을 할 수 있다.¹⁶⁵⁾

16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7.

162)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7.

163)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조직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6.do).

164) 국가유공자법 제75조의8.

165)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단원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인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단원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¹⁶⁶⁾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①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 처분이 있는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¹⁶⁷⁾

다.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상의 이의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① 해당 처분이 법령의 적용의 착오에 기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 처분이 있는 후에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90일 이내에 행정심

166)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12 내지 제94조의13.

167)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관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¹⁶⁸⁾

[표 2-46]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p>■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는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p> <p>+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p> <p>■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p> <p>■ 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p>
--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①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중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국가기관(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시정을 권고한 경우, ③ 그 밖에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의 재심의 요구에 의해 재심을 할 수 있다.¹⁶⁹⁾

[표 2-47]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제기

<p>○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p> <p>○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p> <p>■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p>

2) 「군인사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이의신청

「군인사법」 제54조의 4에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

168)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169)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②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¹⁷⁰⁾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¹⁷¹⁾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급여의 결정 등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급여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표 2-48]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 심사현황¹⁷²⁾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최횟수	4	3	4	4	4	3	4	
심의건수	23	28	43	57	68	51	62	
심의 결과	인용	1	5	5	3	2	4	2
	기각	22	22	36	34	56	34	57
	각하	-	-	1	-	-	7	2
	보류	-	1	1	20	10	6	1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및 인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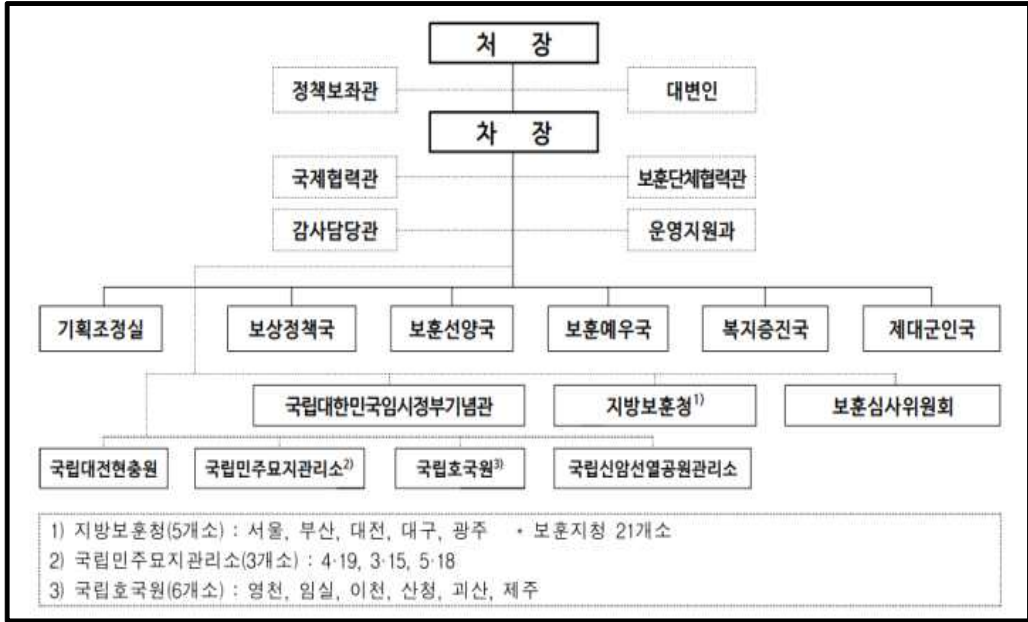
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지원체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은 각 지방보훈청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는 5개의 지방보훈청과 21개의 보훈지청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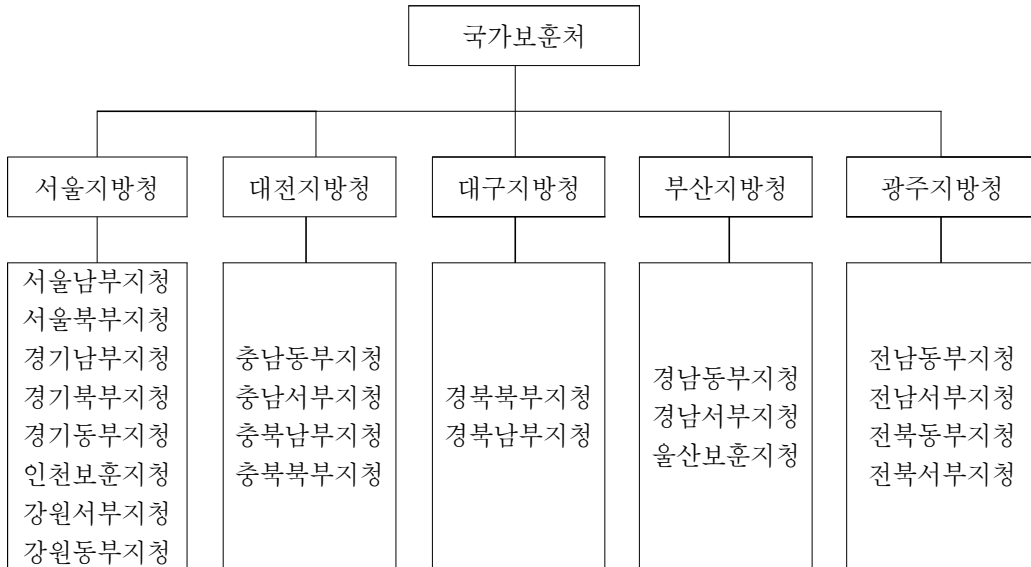
170)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5조 제1항.

171) 「군인 재해보상법」 제48조 제1항.

172) 국방부 정보공개(군인연금과-2783), 2022. 8.29.



[그림 2-1] 국가보훈처 기구 및 조직



※ 제주도지방청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그림 2-2] 지방보훈청 및 지청



[그림 2-3] 서울지방보훈청 조직도

국가유공자 등 각 지원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급여의 지원과 교육, 취업 등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각종 급여의 경우에는 그 대상(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교육 및 취업지원 등은 그 지원 내용이 유사하다.

1) 각종 급여지원체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이자, 유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이자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뉘며 그 외 간호수당,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자녀의 경우 25세 미만)로 나뉘며 그 외 부양가족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고령수당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2022년 월지급액은 [표 2-4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월지급액은 [표 2-50]과 같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본인인지 유족인지에 따라 다르며 상이군경, 제일학도의용군, 보상금 종결 시 지급대상 유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표 2-51]과 같다.

[표 2-49]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2012.7.이후 등록자)¹⁷³⁾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증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3,323	2,492	5,815	
	1급 2항	3,134	1,724	4,858	
	1급 3항	3,000	1,050	4,050	
	2 급	2,667		2,667	
	3 급	2,493		2,493	
	4 급	2,092		2,092	
	5 급	1,733		1,733	
	6급 1항	1,581		1,581	
	6급 2항	1,455		1,455	
	6급 3항	977		977	
	7 급	521		521	
	* 간 호 수 당	·상시 2,763/ 수시 1,843			
	* 전 상 수 당	·90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례당시 97				
유 족	배우자	전몰·순직	1,751	1,751	
		상이 1~5급	1,518	1,518	
		상이 6급	557	557	
	부 모	전몰·순직	1,720	1,720	
		상이 1~5급	1,493	1,493	
		상이 6급	528	528	
	자녀 (25세 미만)	전몰·순직	2,030	2,030	
		상이 1~5급	1,762	1,762	
		상이 6급	804	804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		·274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례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173)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급여 등 월지급액.

[표 2-50]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급여금 월지급액(2012.7.이후 등록자)¹⁷⁴⁾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증상이부가수당	합계	
상 이 자	1급 1항	2,327	1,745	4,072	
	1급 2항	2,194	1,207	3,401	
	1급 3항	2,100	735	2,835	
	2 급	1,867		1,867	
	3 급	1,746		1,746	
	4 급	1,465		1,465	
	5 급	1,214		1,214	
	6급 1항	1,107		1,107	
	6급 2항	1,019		1,019	
	6급 3항	684		684	
	7 급	365		365	
	간 호 수 당		·상시 2,763, 수시 1,843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 족	배우자	사망	1,226	1,226	
		1~5급 유족	1,063	1,063	
		6급 유족	390	390	
	부 모	사망	1,204	1,204	
		1~5급 유족	1,046	1,046	
		6급 유족	370	370	
	자녀 (25세 미만)	사망	1,421	1,421	
		1~5급 유족	1,234	1,234	
		6급 유족	563	563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174)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급여 등 월지급액.

[표 2-51] 사망일시금)175)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 유공자 본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건국포장		1,208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대통령포장		1,127					
독립 유공자 유족	건국 훈장	1~3 등급	배우자	2,261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포장유족			1,127				

2) 교육지원 등 지원체계

교육지원은 공상군경 본인 및 자녀와 순직군경 배우자 및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한다.

[표 2-52] 교육지원 체계176)

구 분	내 용	비 고
중·고등학교 지원	등록금면제 (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면제)	보훈청 → 교육청 통보
	학습보조비 지원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 (전문계))	2회(4월, 10월) 지급

175) 국가보훈처 2022년 보훈급여 등 월지급액.

176) 2022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등.

대학교 지원	대학별 특별전형 응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면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사 증명서’ 대학 제출 대학교육기간의 1/2기간 면제
	학습보조비 지원 (연간 236,000원)	본인 및 배우자에게만 지급 연 2회(4월, 10월) 지급
장학금지원	대학원 및 특수학교 장학금 예산범위 내 선발 후 지원 (대학원최고 1,150,000원 / 특수 장학 300,000원)	특수학교 초~고 재학 본인 및 자녀 재학 중인 학교의 관할 보훈청에 신청

[표 2-53] 취업지원 체계¹⁷⁷⁾

구 분	내 용		비 고
채용시험 가점	10%	공상군경 본인,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및 자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출
	5%	전·공상군경 배우자 및 자녀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훈련기관 우선선발 대상 입소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발급 제출
	공공직업훈련기관 훈련 시 장려금 지급 (월 4만원)		보훈청→훈련기관 확인 본인에게 계좌입금
취업학원수강	취업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70% 계좌입금 (1인당 한도액 : 유·가족 총 1,500,000: 연간 500,000원)		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 과목 및 교육기관 확인 : 신청서, 서약서, 영수증 사전 제출 : 사전납부 후 70% 이수 후 수강료 청구

177) 2022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등.

[표 2-54] 의료지원 체계¹⁷⁸⁾

구 분	내 용	비 고
보훈병원진료	보훈청 등록된 유·가족 60% 감면	
위탁병원진료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수권유족 진료비의 60% 감면	보훈처 홈페이지 위탁병원 명단 확인
생계곤란 의료지원	1종 의료급여증 지원	생활수준조사결과 연중 수시 선정

[표 2-55] 대부지원 체계¹⁷⁹⁾

구 분	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아파트분양	4,000~ 8,000만원	연 1.4%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직접대부시 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4,000~ 8,000만원	연 1.4%	20년 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택임차	2000~ 5,200만원	연 1.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택개량	800만원	연 2.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농토구입	3,000만원	연 1.4%	3년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 2.4%	7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활안정 (재해로 인한 경우)	300만원 (600만원)	연 1.4%	3년 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연대보증인(직접대부시)

178) 2022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등.

179) 2022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등.

[표 2-56] 기타지원 체계(180)

구 분	내 용	비 고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보훈섬김이 가정방문 가사 및 정시지원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수권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상치치로 거동 불편,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 곤란, 독거 또는 노인 부부로 일정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요양 시설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 통보 매월 본인계좌로 환급 급여부부 본인부담액 40%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 60%)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노인장기 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재가급여등 수령) 일정 생활수준 이하
보훈요양원 입소	보훈요양원 장기요양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의 40% 감면(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 60%) (배우자 및 유족으로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인 경우)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 정서 상의 '시설급여' 해당자
보훈원입소	의식주제공, 의료보호, 사망시 국립묘지 합장 등	유족(자녀제외) 65세 이상 남자/60세 이상 여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복지타운 입소	보증금(8평형 150만원, 13평형 250만원) 및 관리비 부담	65세 이상 수권유족(자녀 제외) 무주택자로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

180) 2022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등.

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인정현황

[표 2-57] 군인 등 보훈대상별 현황¹⁸¹⁾

단위 : 명

구분		계	본인	유족
전몰 군경 등	전몰군경	35,778	0	35,778
	전상군경	149,860	56,963	92,897
	전상군경	149,860	56,963	92,897
	순직군경	15,630	0	15,630
	공상군경	66,671	49,937	16,734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1181	0	1181
	재해부상군경	5378	4972	406
지원대상자*	지원순직군경	179	0	179
	지원공상군경	1,850	1,759	91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표 2-58] 군인 등 보훈대상 연령별 현황¹⁸²⁾

단위 : 명

구분	연령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보상보훈대상자	
		전몰 군경	전상 군경	순직 군경	공상 군경	지원순 직군경	지원공상 군경	재해사망군 경유족	재해 부상군경
본인	20세 미만								
	30세 미만		1		533				1,013
	40세 미만		31		6,658		715		1,245
	50세 미만		33		10,701		435		864
	60세 미만		13		9,149		259		646
	70세 미만		185		10,080		221		683
	80세 미만		45,531		9,642		103		375
	90세 미만		6,580		2,819		25		135
	100세 미만		4,570		452		1		11
	100세 이상		19		3				
	계		56,944		50,034		1,759		4,972

181) 국가보훈처 2022년 7월말 기준 기본현황.

182) 국가보훈처 2022년 7월말 기준 기본현황.

유족	10세 미만				6			1	1
	20세 미만	1	2	12	25				3
	30세 미만	1	25	22	79		1	4	5
	40세 미만	9	282	106	240	1	2	17	12
	50세 미만	165	3,382	484	871	11	5	81	12
	60세 미만	589	9,216	1,466	2,129	27	17	315	82
	70세 미만	3,310	29,065	3,941	4,370	68	31	397	105
	80세 미만	25,154	21,406	4,170	4,439	48	19	192	82
	90세 미만	3,636	24,229	4,199	4,088	19	16	142	91
	100세 미만	2,731	5,250	1,168	482	5		32	13
	100세 이상	180	40	62	5				
	계	35,596	149,801	15,568	66,763	179	1,850	1,181	5,378

[표 2-59] 상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현황¹⁸³⁾

단위 : 명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신체검사 실시자	10,234	11,273	15,259	13,280	12,213	12,827	12,676
등급 판정자 (비율)	6,380 (62%)	7,108 (63%)	7,424 (48%)	6,598 (49%)	5,458 (44%)	5,986 (49%)	5,820 (45%)
등외판정 (무변동포함)	3,854	4,165	7,835	6,682	6,755	6,841	68,56

[표 2-60] 보훈심사 해당 및 비해당현황 현황¹⁸⁴⁾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8,538	7,375	7,548	7,736	9,303	6,784
전공사상 군경	해당	2,036	1,698	1,643	1,397	1,889
	비해당	3,399	3,025	3,408	3,790	4,312
재해사망 부상군경	해당	2,589	2,162	2,061	2,075	2,431
	비해당	0	0	0	0	0
보상심사	해당	196	213	181	185	193
	비해당	318	277	255	289	478

183) e-나라지표 수정인용.

184) e-나라지표 수정인용.

3.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지원체계 : 미국, 대만, 일본, 독일

가. 미(美)군 부상자/전사자 제도

1) 미(美) 제대군인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미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보건행정처(Health Administration), 복리후생처(Benefits Administration), 그리고 국립묘지처 (National Cemetery Administration) 세 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개의 산하부서를 포함한다. 제대군인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제대군인, 부양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연방정부 복리후생'¹⁸⁵⁾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대군인 복리후생은 불명예제대(dishonorable discharge)가 아닌 전역(轉役)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군인연금(veterans' pension)과 같은 특정 복리 후생의 경우 참전경험, 소득수준, 나이, 장애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별 집단에 속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제도도 다수 갖추고 있다. 특별집단의 경우 연로한 제대군인, 걸프전 참전자, 6.25 참전자, 베트남전 참전자, 노숙 중인 참전자, 성소수 제대군인 등 1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상자 제도

앞서 언급한 연방정부 복리후생에서는 제대군인을 위한 복리후생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별로 복리후생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eBenefits)이다.

둘째는 의료 서비스(health care)로 신체적 의료뿐 아니라 정신적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24개월 이상 혹은 특정 소집기간 동안 군역을 수행한 인원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대군인은 각각의 상해 정도와 상해 배경에 따라 8개의 그룹(Priority Groups)으로 나뉘어 편성된다. 1그룹은 직무수행 중

185) *Federal Benefits for Veterans, Dependents and Survivors 2021 Edit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ttps://www.va.gov/opa/publications/benefits_book/2021_Federal_Benefits_for_Veterans_Dependents_and_survivors.pdf

상해를 입어 50% 이상의 장애를 가졌거나, 제대군인부에 의해 직무관련 건강상태로 취업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거나,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2그룹은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어 30~40%의 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3그룹은 전쟁포로였거나, 퍼플하트훈장(Purple Heart Medal)¹⁸⁶을 수여받았거나, 임무수행 중 부상이 악화되었거나 장애를 입어 의병제대하였거나,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어 10~20%의 장애를 가졌거나, 미국연방규정 표 제38, 1151조(Title 38, U.S.C., §1151)에 의거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4그룹은 정기적인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군인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바깥출입을 못하거나, 제대군인부에 의해 극심한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5그룹은 제대군인부에 의해 0% 장애를 가진 직무관련 없이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과 보상할 수 없는 직무관련 상해를 입은 제대군인, 일정 소득수준 미만인 제대군인, 군인연금을 수령중인 제대군인, 그리고 의료보호 자격요건을 갖춘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6그룹은 직무관련 보상 가능한 0% 장애를 가진 제대군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점령 중 이온화 방사능에 노출된 제대군인, 프로젝트 112/SHAD 참가자들, 베트남전 참전군인, 서남아시아 전구(theater) 작전 참전군인, 1998년 11월 11일 이후 전구전투작전 참전군인, 그리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7그룹은 가계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며, 코페이먼트(copayment)¹⁸⁷ 지불에 동의한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마지막 8그룹은 가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코페이먼트 지불에 동의한 제대군인으로 편성된다.

셋째는 비-의료 서비스(non-health care)이다. 비-의료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금전적 지원이며 가장 큰 부분은 신체 상해보수(disability compensation)이다. 신체 상해보수란 군 복무 중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장애의 정도를 10%~100%까지 10% 단위로 측정하여 지원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상해보수는 또한 직무관련 장애이거나, 전역 이후 발생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체 상해보수 역시 불명예제대가 아닌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장애 정도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양가족 등을 위한 비용도 지급될 수 있다. 비-의료 서비스에는 특별월별 보상(special monthly compensation)도 포함되는데, 이는 부상정도가 심하여 도움 및 관찰(aid and attendance)이 필요한 제대군인과 배우자, 혹은 전사자의 배우자나 부

186) 미국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187) 코페이먼트(copayment)란 피고용자의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등에서 고용인의 부담을 의미한다.

모에게 지급될 수 있다.

넷째는 교육지원으로 복무기간, 장애여부, 훈장수여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혜택이다. 최소 90일 이상 복무한 경우 제대군인과 그 가족은 교육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6개월 이상 복무하였거나 퍼플하트훈장을 수여받은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째는 제대군인 중 특별한 집단(special groups of veterans)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상해, 질병, 나이 등으로 인해 신탁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이나 노숙 중인 제대군인 집단 등을 위한 특별 혜택 등을 제공한다.

여섯째는 국립묘지 혜택이다. 제대군인부는 총 140곳의 국립묘지를 운영 중이며, 그중 95곳은 입관 혹은 화장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묘지 혜택은 최소 복무 요건을 충족하며, 불명예제대를 하지 않은 제대군인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

3) 전사자 제도

전사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도드라지는 제도는 조의금(death gratuity) 제도이다. 조의금 제도는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예비군 신분이지만 승인된 임무 수행 혹은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그리고 전역 후 120일 이내 사망하였거나 제대군인부 장관에 의하여 훈련 중 입은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가족에게 100,000 달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망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두 번째 제도는 유족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이다.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복무 중 혹은 훈련 중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2) 현역 복무 중 혹은 훈련 중 상해, 심장마비, 심정지, 혹은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3) 임무수행 중 입은 장애 혹은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애로 인해 사망한 경우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완전히 불구였거나, 전역 당시부터 사망 전 최소 5년간 완전히 불구였거나, 전쟁포로로 사망 전 1년간 완전히 불구였던 경우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제도는 도움 및 관찰(aid and attendance)과 바깥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해당 혜택은 유가족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상해로 인

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네 번째 제도는 특별수당금(special allowances)이다. 제대군인이 사망 전 8년 동안 완전히 불구였을 경우 유족보상금에 261.87달러를,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최초 2년 동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266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가족 연금제도(survivors pension)이다. 유가족 연금제도는 참전 경험이 있는 사망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지 않았어야 하며, 미혼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제대군인부에서 승인한 학교에 재학 중인 23세 미만의 자녀, 18세 이전에 장애로 인해 영구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자녀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사망한 제대군인은 불명예 제대가 아니어야 하고, 90일 이상 복무했으며 그 중 최소 하루 이상이 전시여야 하며, 혹은 직무관련 장애로 인한 제대여야 한다.

4) 제대군인 관련 법률

미국연방규정 표제38(Title 38)¹⁸⁸⁾는 제대군인 혜택과 관련된 법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을, 제2부에서는 일반혜택(general benefits)을, 제3부에서는 재조정 및 관련혜택(readjustment and related benefits)을, 제4부에서는 일반행정규정(general administrative provisions)을, 제5부에서는 위원회, 행정처, 그리고 사무(boards, administrations, and services)를, 마지막 제6부에서는 재산 취득 및 처분(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property)을 다루고 있다. 미국연방규정 표 제38에서 부상 및 전사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과 제도를 위해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은 제2부 일반혜택이다.

미국연방규정 표 제38 제2부 일반혜택은 총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1장은 복무관련 장애 및 사망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제13장은 복무관련 전사자의 유가족 보상을 다루고 있다. 제15장의 경우 복무와 관련 없이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7장, 제18장, 제19장, 제20장, 제21장, 제23장, 제24장은 병원, 간호 등 의료지원으로부터 특별집단에 속한 제대군인과 국립묘지까지 제대군인 관련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연방규정과 별개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제대군인을 위한 팩트법

188)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PRT-112HPRT65875/pdf/CPRT-112HPRT65875.pdf>

(PACT Act)¹⁸⁹⁾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제대군인부 설립 역사상 가장 큰 의료 서비스와 혜택의 확대라고 해석된다. 팩트법은 크게 다섯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베트남전, 걸프전 당시 그리고 911테러 이후 독극물에 노출된 제대군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연장이다. 둘째는 쓰레기 소각장 및 기타 독극물 노출과 관련된 20가지의 증상을 새롭게 추가, 셋째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Agent Orange)와 방사능 노출 인정 지역의 추가이다. 넷째는 제대군인부 의료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독극물 노출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독극물 노출과 관련된 연구, 의료진 교육, 그리고 치료의 증진이다.

5) 국가유공자 시스템과 혜택 신청 및 소송 사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 제대군인부는 제대군인 개인별로 혜택을 확인, 신청,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eBenefits¹⁹⁰⁾)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제대군인부와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안전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현역군인, 제대군인, 군 가족들이 제대군인 혜택, 군 혜택,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고 지원, 연구, 접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특히 제대군인의 경우 장애 보상 청구 진행상태 확인, 공식 군 관련 서류 발급, 혜택 신청과 수혜자 변경 등이 가능하다.

제대군인, 혹은 유가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혜택을 신청하면 제대군인부가 검토 후 승인 혹은 반려를 하게 된다. 2019년 2월 19일 이전에 반려된 건에 대해 최초 항소할 경우 제대군인 혜택 행정처(The Veterans Benefits Administration)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에 걸쳐 검토 후 일부 혹은 전체 승인이 가능할 수 있었다. 혹은 제대군인법 판사(Veterans Law Judge)의 검토를 요하는 항소의 경우 판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렸다. 하지만 2019년 2월 19일, 이의신청 절차가 결심검토과정(decision review process)으로 변경되며, 보충청구(supplemental claim), 상부검토(higher-level review), 그리고 위원회 항소(board appeal)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시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9) The Sergeant First Class (SFC) Heath Robinson Honoring our Promise to Address Comprehensive Toxics (PACT) Act.

190) eBenefits 웹사이트 주소 : www.ebenefits.va.gov

제대군인 청구소송 사례는 2022년 8월까지 총 23건, 2021년 48건, 2020년 3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송내용은 각 사례별로 상이하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제대군인 청구소송 사례는 미연방고등법원 제대군인 청구소송 웹사이트¹⁹¹⁾에서 확인 가능하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배심원 판결 (panel decision) 및 단독판사 판결(single judge decision) 사례들은 미연방 고등법원 제대군인 청구소송 기록보관 웹사이트¹⁹²⁾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 대만의 부상자/전사자 제도

우리나라의 보훈제도에 상응하는 대만의 관련 제도는 흔히 ‘무휼제도 (撫卹制度)’로 지칭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報勳)’과 대만의 ‘무휼(撫卹)’을 아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를 모두 보훈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대만에서는 무휼제도의 적용대상을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⁹³⁾ 또한, 대만 법제에서는 무휼제도를 퇴직금 제도와 연계하여 입법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¹⁹⁴⁾

우리나라는 1985년 국가유공자법을 통하여 보훈제도의 법적 근거를 일원화 하였고 각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이 포함되며, 공무원이 아닌 기타 유공자도 포함된다. 반면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일원화된 보훈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신분의 유공자를 통합하여 지칭하는 법적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인의 경우 주로 퇴역군인을 지칭하는 ‘영민(榮民)’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영민’은 마땅히 일정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인식된다.

대만은 헌법상 문관(文官)·무관(武官)으로 구분되는 관원(官員), 즉 공무원에 대하

191) <http://m.uscourts.cavc.gov/OpinionsOrders.php>

192) http://www.uscourts.cavc.gov/case_archives.php?fullsite=yes

193)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법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병렬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군인을 제외한 기타 직책의 공무원에 보훈 법령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보훈 및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만 상이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상이자에 대한 지원이 퇴직금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4) 예를 들어 현행법인 ‘정무원원퇴직무휼조례(政務人員退職撫卹條例)’, ‘공무원원퇴직자견무휼법(公務人員退休資遣撫卹法)’ 등이 있다.

여 직책에 따라 개별적인 보훈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현행 법률인 2021년 1월 개정 ‘군인무훈조례(軍人撫卹條例)’, 그리고 2018년에 폐지된 ‘공무원인원무훈법(公務人員撫卹法)’와 2019년에 폐지된 ‘학교교직원무훈조례(學校教職員撫卹條例)’ 등을 들 수 있다.¹⁹⁵⁾ 이 중 무관인 군인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무훈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문관인 공무원인과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무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1) 군인 무훈제도의 법원(法源)

1947년 공포된 중화민국헌법(中華民國憲法) 제83조는 다섯 개의 국가행정기관 중 하나인 고시원(考試院)의 주관 사항 중 하나로서 무훈(撫卹)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격인 헌법 증보·수정조문(增修條文) 제6조에 의해 대체되었고, 현행 조항은 고시원의 주관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인사·보장·무훈·퇴직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증보·수정조문 제10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에 대한 군인의 공헌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퇴역 이후의 취학·취업·진료·부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만의 헌법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이들이 받을 보상과 지원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위 헌법 조항을 종합해볼 때 명확하지 않다. 헌법의 문맥상 무훈은 고시원의 업무 중 하나로서 열거되고 있을 뿐이고, 증보·수정조문 역시 퇴역군인의 대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 특히 증보·수정조문 제10조 제9항이 퇴역군인뿐 아니라 사망자와 상이자의 대우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헌법상 법원(法源)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¹⁹⁶⁾

헌법 제1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로써 국방법(國防法)이 시행되고 있다.¹⁹⁷⁾ 국

195) ‘공무원인원무훈법’의 규정은 주1)의 ‘공무원인원퇴직자건무훈법’ 제3장으로, ‘학교교직원무훈조례’의 규정은 ‘공립학교교직원퇴직자건무훈조례(公立學校教職員退休資遣撫卹條例)’ 제3장으로 개정·편입되었다.

196) 吳佳蓉, “我國軍人撫恤制度之研究－以勞工職業安全法制為借鏡”, 國防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197) 중화민국헌법 제137조 제2항은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16조는 “현역 군인의 지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 대우·보험·무휼·복지·상별 및 기타 권리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방법은 군인의 보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차원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무휼조례(軍人撫卹條例)는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에 대한 무휼에 대한 법률이며, 육·해·공군 현역 군관·사관·사병에 적용된다. 조례 제3조는 조례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방부가 무휼을 제공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무휼 명령과 무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무휼금이 지급되며 그 수익인은 유족이다. 심신장애자의 경우 심신장애무휼금이 지급되며 그 수익인은 심신장애자 본인이다.¹⁹⁸⁾ 본 조례는 무휼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보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휼금의 지급 방식과 시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일본의 부상자/전사자 제도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 보훈기구를 따로 두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로 국가 보훈체계를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¹⁹⁹⁾ 즉 특별히 전임 부서를 두지 않고 총무성과 노동후 생성의 두 일반부서에서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은급수혜자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110만 명에 달하며 그 대상자는 일반 문관을 포함한 과거 군인들과 그 가족들로서 구성되며 그 중 군인과 그 가족들이 전체의 97% 정도를 차지한다.²⁰⁰⁾ 일반 문관의 경우는 최소 17년 이상 복무한 문관과 교육직원, 교도직 등을 포함한다.²⁰¹⁾ 일본의 군 사망자의 경우 전몰자의 유족에게는 공무부조료가 지급되고, 공무사일 경우에는 공무부조료, 평병사일 경우에는 증가비공사부조료, 특례부조료, 상병자 유족특별 연금으로 구별하여 지급한다.²⁰²⁾ 상병자 유족특별연금의 경우는 상병연금과 특례상병은급의 수급자가 공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1954년 4월 1일(특례상병은급의 경우 1971년 10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이 부조

198)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범위 및 수익인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 번역본 참조.
199) 정성범,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2호, 2020, 43면
200)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2면.
201) 정성범,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2호, 2020, 50면.
202) 박환무, “일본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2006, 49면.

료나 공제조합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²⁰³⁾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총사령부(GHQ/SCAP)의 지시에 따라 전쟁희생자에 대한 일체의 원호가 부정되고 이 문제는 사회보장 일반의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점령이 끝나면서 사회당을 포함한 여야는 ‘국가를 위해’ 공무수행 중에 ‘순국’한 군인군속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치된 논리를 전제로 내세워 전상병자전몰자동원호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에는 군인군속 등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망에 대해 국가보상의 정신에 기초해 군인군속 등이었던자나 그 유족을 원하는 것(제1조)이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²⁰⁴⁾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에서 이탈된 구 식민지 출신자는 원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구 식민지 출신자의 원호는 양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해 타결되었는데 제일 영주권자는 이러한 협상에서도 제외되었다.²⁰⁵⁾ 일본은 해외지역에 사망한 군인이 많아 그 숫자가 약 240만 명에 달하며 희생자는 주로 전쟁이 악화되었던 1944년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전쟁 당시에는 사망자의 유골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에 현대에 와서도 해외지역에서 사망한 자국의 군인군속 등의 유골 수습 및 현지 추도비 건설 사업, 해외지역 전몰자 유족 위령순배를 지속하고 있다.²⁰⁶⁾

라. 독일의 부상자/전사자 제도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직업군인과 단기군인으로 구성되며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호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²⁰⁷⁾ 독일은 순직이나 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군인보훈법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연방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은 순직이나 공상 개념을 채용하지 않고 병역상의 손상만을 규정하고 나아가 병역상의 손상(건강침해)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은 보훈급부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순직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공상 판정의 기준을 업무연관성으로 보고 있으며 군인보훈법 제1항에서 기본적

203)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2면.

204)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3면.

205) 박환무, “일본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2006, 85면.

206)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3면.

207) 이계수, “군사안보법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239면

으로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며, 공상을 ‘직무 활동’,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에 의해 초래된 건강상의 손상으로 언급하고 있다.²⁰⁸⁾ 연방보훈법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직무활동,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직무 수행 중 사고, 군복무상 특유한 사정을 통해서 건강상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손상의 건강상 또는 경제상 결과로 인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⁹⁾ 독일은 연방보훈법은 ‘의도적으로 초래한 손상’을 보훈법상의 손상(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군복무관련성 아래서 자해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침해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해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²¹⁰⁾

208)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4면.

209) 최기홍 외,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0. 23면.

210)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64면.

제3절 소결론

군 사망·부상사고 시 보상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인에 대한 보훈제도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예우로 2가지 보상체계로 구분하거나,²¹¹⁾ 또는, 군인사관리 측면에서 군인이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령과 그 사망자 예우에 또는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체계의 이원화로 볼 수도 있다.²¹²⁾

이를 종합해보면 군인의 희생(사망 및 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희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군인사법의 체계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의 재해보상금을 통한 보상체계, 그리고 희생(사망 및 장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예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연금제도와 보훈제도로 보장을 받는 것에 반해 의무복무자(군인연금 미수혜자 포함)는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제도에 의한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의무복무자 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망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판단을 하는 군인사법과 보상을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그리고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은 군인 등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함에도 법령상호간에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의 규정과 내용 등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과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훈제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반대로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의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법 등의 보훈제도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²¹³⁾ 이러한 법체계정립상의 문제점은 용어의 상이성과 국가유공자 등

211) 권영복·이철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22, 147면.

212)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법학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학술대회, 2022, 133면.

213) 권영복·이철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22, 147면.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에 있어서 절차의 중복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인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심사절차, 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사망 등의 보상 및 보훈을 위해서는 각각 군인사법상의 ‘전공사상심사 위원회(각군 소속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소속의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례는 각 심사절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라고 판시하여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절차상에 있어서 군의 심사결과와 국가보훈처의 심사결과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판례가 이미 명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군 사망자의 유족이나 상이자가 군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차후에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할 때에서 적어도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의 사망 등에 대한 확인(전사상, 공사상 등)의 결과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결정을 기속할 수는 없지만, 군의 확인결과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 심사절차 사이의 체계정립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3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제1절 주요 사례

사전적 의미로 군(軍)은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의 집단을 의미한다.²¹⁴⁾ 군은 무기와 다양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열악한 직무환경과 수직적 병영문화로 인한 장병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부상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피해 장병 및 유·가족에 대하여도 적절하고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 유·가족의 보훈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및 이들 법률에는 예우 및 보훈, 그리고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

214)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량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고 하여 예우와 지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2조는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우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1조는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는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훈의 대원칙이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족들은 지금도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및 자해사망에 대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0. 1. 15.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²¹⁵⁾ 2005. 5. 31.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²¹⁶⁾ 2005. 7. 29. 제정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²¹⁷⁾ 등이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 또한 2018. 3. 13. 제정되어 같은 해 9. 14.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들 정부기관의 활동과 아울러 법령 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215) 2000. 10. 17. 설립, 2004. 6. 30. 해체.

216) 2005. 12. 1. 출범, 현재 활동 중.

217) 2006. 1. 1. 설립, 2009. 12. 31. 해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²¹⁸⁾이 개정되어²¹⁹⁾ 2012. 7. 1.부터 자해사망도 순직에 포함되는 등 국방부의 순직 인정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고, 급기야 2022. 1. 4.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7. 5.부터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²²⁰⁾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국방부에서 순직이나 공상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에 막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자해행위를 포함한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 법원의 판례에 제시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국가배상법」과의 관계를 위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방향에 대한 연구진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사례 검토를 위한 입론(立論)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여부이고, 하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²²¹⁾이다. 이하에서는 법률규정상 해당 요건이 제·개정되는 과정

218) [시행 2009. 7. 29.] [국방부훈령 제1077호, 2009. 7. 29., 제정]

219) 동 훈령은 국방부훈령 제1439호로 2012. 6. 29. 개정되고 같은 해 7. 1. 시행되었다. 동 훈령 제3조는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 사망(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2. 상이(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바, 순직·공상에 해당하는 자해사망 규정은 다음과 같다.

2-14. 사망 또는 상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220)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및 제3항.

221) 이 규정이 2012년 삭제된 이후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으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의 요건 규정 개정 과정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있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전신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²²²⁾ 제정 당시부터였다. 그리고 1997년 일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²³⁾을 거쳐 2012년 보훈법 개편 전²²⁴⁾까지 이러한 모습이 유지되다가,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요건으로 변경되었다. 자세한 규정 변경 내용은 제시된 표와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규정이 반영되었는바, 그것은 1997. 1. 13.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 시 제73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는 그 당시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폭행·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데 있다.²²⁵⁾ 즉,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두고,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과 관련이 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 보상만 하도록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2011. 9. 15.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다.

우)를 드는 경향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22)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223)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224) 여기서 2012년 보훈법 개편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체계를 의미한다.

225) 이 시기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73조의2가 신설된 것이다.

<p>「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p>
<p>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p>	<p>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5.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처장은 제4조 제3항²²⁶⁾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²²⁷⁾·제11호·제12호 및 제2항²²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이하 이 항에서 “순직·공상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 생략. ③ 생략. [본조신설 1997·1·13] 229)</p>	<p>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73조의2 삭제 <2011. 9. 15.></p>
		<p>「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정]</p> <p>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p>

- 226) 동법 제4조 ③ 제2항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신설 1997·1·13>
- 227)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 228) 동 법 제4조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9) 동 조항은 2002. 1. 26. 일부개정되었으며, 2011. 9. 15. 폐지되기 직전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나. 자해사망자에 대한 규정 개정 과정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3742호로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988. 12. 31. 개정 시 신설되었다. 즉, 동 법은 1988년 개정[시행 1989. 1. 1.] [법률 제4072호, 1988. 12. 31., 일부개정]되었는데, 이때 동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²³⁰⁾ 제11호 및 제12호²³¹⁾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의 위임을 받아 동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제4호에 ‘자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 순직군인, 공상군인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반영하였다.²³²⁾

이러한 모습은 1997. 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전문개정 2008.3.28]

230)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231)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23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순직·공상군경 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이 변경되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2002년 1. 26. 개정법률[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에서 동법 제4조로 반영된다. 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법률 조항으로 승격되고, 동 법 시행령[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 2002. 3. 30. 일부개정]에서는 삭제되게 된다. 이 규정 역시 2012년 보훈법 개편과 함께 삭제되었다.

따라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2012년 개편 이전까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었지만, 2012. 7. 1. 이후에는 인정 여지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012년 보훈법 개편 이전에도 1997년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신설로 인해 이때부터는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 보상은 받을 수는 있었다.²³³⁾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2. 3. 1.] [법률 제6648호, 2002. 1. 26., 일부개정]</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p>	<p>「군인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0호, 2022. 1. 4., 일부개정]</p>
<p>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 1. 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p>	<p>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삭제 [전문개정 2011. 9. 15.]</p>	<p>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 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 I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 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 I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²³⁴⁾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²³⁵⁾</p>

233) 이 조항이 현행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와 유사하다.

23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 등의 구분) ② 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한편, 「군인사법」 제54조의2 개정[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0호, 2022. 1. 4., 일부개정]으로 2022. 7. 5.부터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분류하되,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해당된다.²³⁶⁾ 그리고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는 자해사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순직Ⅲ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235)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에는 자해사망에 대하여 순직Ⅲ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한편, 동 규정은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Ⅱ형 및 순직Ⅲ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3-10부터 2-3-13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직이되, 단지 순직Ⅲ형으로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36)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 등의 구분)② 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조항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0조의23(전사자 등의 구분) 제2항)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사망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할 수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군인사법」상 순직 개념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개념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다르다고 하여 법률상 하자(瑕疵)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지만, 「군인사법」상 순직 여부가 사실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심사대상자 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언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의한 순직 III형의 유형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사망의 유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5호²³⁷⁾는 일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 「군인사법」상 순직 III형과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법의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²³⁸⁾ 하지만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체계에서도 판례는 자해

237)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238) 물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따라서 방금 제시된 쟁점 등을 고려하면서, 특히 2012년 보훈법 개편 전후의 사례를 비교해서 검토한다면, 향후 해석 및 입법론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순서대로 고찰하기로 한다.

2.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가. 모범해병 포상휴가 중 피서지에서 익사한 사병 사례 :

국가유공자 및 재해부상군경 불인정

1) 심사요지

해병대에 입대 후 전역 1개월을 남겨두고 특별휴가를 1주일 받아서 대학 친구들과 경기도 양평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였는바, 특별휴가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한 건에 대하여, 헌병감의 변사(익사)사건 처리 결과 보고(1992. 08. 11.)에는 “폭파병직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7월 중 모범해병으로 선발되어 1992. 07. 31.~08. 04.(05일) 포상휴가를 득하여 사전 피서 약속에 의거 08. 02. 10:25경 휴가 나온 육군 상병 박○○을 만나 피서 장소인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소재 00천으로 가기 위해 동일 15:20경 택시를 타고 출발, 동일 18:00경 피서 장소에 도착, 08.03. 00:00경 취침, 동일 09:0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육군 상병 박○○에게 계속 수영하자고 제의, 동일 10:50경 50m 삼성천을 가로질러 건너편 둑으로 헤엄쳐 가던 중 수영 출발 지점으로부터 약 30m(수심4m) 거리에서 약 2분간 허우적거리다가 동일 10:55경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익사하였다”고 기록하였고, 해군본부에서는 ‘일반사망’으로 판정하였다.

-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고인은 해병대 복무 당시 포상휴가를 받고 자택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휴가기간 중 친구와 같이 물놀이를 갔다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직군경 요건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2) 검토

포상휴가를 받고 자택에 도착하여 지내다가 휴가기간 중 익사한 경우, 이는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나. 입대 1개월경 야간 행군 후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례 : 국가유공자 인정²³⁹⁾

1) 심사요지

육군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치료 중 사망한 건에 대하여, 전사망 심의표상, 야외 종합 훈련 후 생활관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해 후송치료 중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사망구분 결정 심의에서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어 ‘순직’으로 의결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고인은 24시간 통제된 병영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야외 종합 훈련 후 고열로 인해 입원 치료를 하다가 26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간 상

239) 이 사례도 2012년 보훈법 개편 전 법령을 적용한 결과이다.

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2) 검토

입대 전 질병이 없었고,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3.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가. 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2017-7118, 재결일자 2017. 12. 19.) : 인용

1) 재결요지

청구인은 故 전○○의 부(父)이고, 고인은 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2013. 2. 3. 사망 제적된 자로,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에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 다친 다리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 선임병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질책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은 군 입대 전에는 자살을 유발할만한 정신질환 등의 기왕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결국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고인은 신병교육대 시절에 받은 군 인성검사, 신인성검사, 우울증 검사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생략) 당시 이를 담당한 조교는 2명에 불과하여 1:1로 밀착하여 생활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인을 방치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검토

이 사례는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을 배척한 데 대하여, 자살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공군하사 자살 사례(2020-21883, 재결일자 2022. 1. 11.) : 국가유공자 기각, 재해사망군경 인용

1) 재결요지

청구인은 故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2019. 2. 28. 간부 숙소에서 자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먼저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그러나 고인은 직무상 부담감 및 군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나아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역시 2019. 12. 20. ‘고인의 사망은 오로지 개인적인 원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사업무상 심적 부담감, 사례 작성 및 발표에 대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증폭되어 메모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III형’으로 결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2) 검토

이 사례는 현행 보훈법 체계 내에서 자해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기준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이다.

다. 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2013-13283, 재결일자 2014. 4. 15.) :
국가유공자 기각, 지원대상 인용

1) 재결요지

청구인은 故 박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고인이 1996. 11. 6.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 7. 11. 피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1. 5. 17. 대구지방법원(2000구5648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01. 11. 30. 대구고등법원(2001누10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2003. 9. 5. 동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010. 4. 2. 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

정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 10. 15.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5.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직권 재심에 부쳐졌으나, 2013. 4. 19. 피청구인은 고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0)에 따를 때, 비록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

240)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 ~ 4. (생략)

5. 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 17. (생략)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청구인이 다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동법 제73조의2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동법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자살자를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검토

이 사례는 고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2012. 7. 보훈법 개편 전 규정을 적용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로서, 그 당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에 대한 보상)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즉,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²⁴¹⁾ 따라서 비록 고인의 자살

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24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참조.

로 인한 사망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청구인이 다시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 1. 13. 일부개정 시 동법 제73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동 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두고,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과 관련이 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적 보상만 하도록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당시 동법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2011. 9. 15.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것은 언급한 바와 같다.

라. 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2019-18047, 재결일자 2020. 8. 2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기각

1)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고인은 2018.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9. 1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인한 향후 군 복무가 걱정이 되어 입대 전 고인과 함께 심리상담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있으나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그러나 고인이 자대 배치 후 대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도움

병사로 선정되었을 뿐, 중대장은 고인의 면담기록조차 조작하는 등 실질적인 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사단은 과거부터 자해사고가 빈번한 부대로서 부대 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자살미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들은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평소 우울증세가 있던 고인은 위 일련의 악행들이 지속 되던 상황에서 9월 15일 불침번 근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중대장의 폭력적 행동 및 폭언, 해당 부대의 병력관리 미흡 및 동료 병사들의 무시하는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우울증을 심화시켰고, 결국 고인이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변사사건 조사결과(2018. 12. 28.)상 ‘개인적인 요인과 부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이 확인되는 것 이외에 달리 고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법령상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자살을 한 경우, 그 자살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심리치료클리닉의 소견서(2018. 9. 22.)상 고인은 입대 전 소극적 성격, 대인관계문제로 위 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울증, 범불안, 애착장애, 트라우마, 사회성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상담 시 계속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죽음, 자살’이었으며 실제로 입대 전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사단 보통검찰부의 변사사건 조사결과(2018. 12. 28.)상 ‘사망자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복무하면서 중대장 등의 폭언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폭언 등도 통상적인 질책 수준으로서 도저히 감내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사사건 조사결과 고인이 도움병사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대 중대장은 고인의 도움병사 분류사유를 다른 부대원의 사유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등 그에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내부 부조리 및 병력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국가배상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부 부조리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인을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는 ‘군 복무 중 경험한 중대장과 선임병 등으로부터의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적 요인과 부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순직Ⅲ형”으로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대한 심사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서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 Ⅲ형’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이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토

이 사례는 고인은 입대 전 심리상담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있으나 징병신체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한 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로서, 고인이 도움병사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부조리 및 병력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국가배상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내부 부조리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인을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 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 사망군경의 요

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이므로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 Ⅲ형’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마. 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2013-04787, 재결일자 2013. 8. 27.) : 인용

1)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98.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자 1998. 12. 1. 초소 앞 공터에서 자살하였다는 사유로 2012. 6.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²⁴²⁾ 2013. 1. 9. 보훈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기울리한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지원순직군경유족 등록결정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4. 3. 고인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재심의를 통하여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보상의 대상이 아닌 국가를 위해 스스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견디기 어려운 공황상태에서 사

242) 2012년 보훈법 개편은 7월 1일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보다 며칠 전인 6월 27일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다.

망한 숭고한 희생임을 확인받고 싶은 것일 뿐임에도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희생이 숭고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이나 받으라는 피청구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²⁴³⁾). 고인은 선임병이던 병장 박○○ 등으로부터 1998년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구타·가혹행위를 받은 점, 박○○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뜻을 비추거나 소대 분위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전출을 보내달라고 하여 분대장 김○○이 소대장 류○○에게 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 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와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43) 이 판결은 자해사망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매우 의미있는 판례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검토

이 사례는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라, 고인이 선임병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구타·가혹행위를 받은 점, 선임병의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고인이 자살 및 전출요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대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로부터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고인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2회에 걸친 자살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고인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한 촉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고인의 상태는 정신의학적 응급상태였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적은 환경으로의 보호 및 즉각적인 정신의학적 평가와 치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적극적인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재결 사례이다.

4. 주요 판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종래의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등특별 원호법」의 2개의 기본법률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등 5개의 지원법률이 통합되어 1984년 8월 2일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²⁴⁴⁾이 제정되고 1985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1997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⁴⁵⁾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국가보훈 기본법」²⁴⁶⁾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보훈보상자법 ²⁴⁷⁾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률

244)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245)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일부개정].

246)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72호, 2005. 5. 31., 제정].

247)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정].

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보훈체계²⁴⁸⁾와 이후의 보훈체계는 차이가 있는바, 이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라 한다. 그리고 이때의 보훈체계에 대한 이론 및 판례는 군대 내의 자살자(의문사)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및 국가배상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시기를 양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 2012년 보훈법 개편 이전

1) 국가유공자 관련 판례²⁴⁹⁾

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군 소령 자살 사례)²⁵⁰⁾ :
국가유공자 인정

(1) 판결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86. 2.경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4. 6.경 소령으로 진급한 후 1995. 10. 30.경까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제39전대 제131비행대대에서 팬텀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대대로 전출되어 제2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제213비행대대 전입 후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6. 5. 11.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손목자해에 의하여 자살하였다. 원고는 1997. 7. 2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망인이 집무실에서 자살한 것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순직군경에

248) 즉,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1호, 2011. 3. 29., 일부개정]까지의 보훈체계를 의미한다.

249) 이 외에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판례 검토는 조성제,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305쪽 이하 참조.

250) 이 판결의 제2심인 원심은 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7구4593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1997.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망인이 자살 당시 불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만을 인정한 후, 가볍게 망인의 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²⁵¹⁾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인정한 사실만으로 만연히 망인의 자살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자유의지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검토

이 사례는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251) 그 당시 법 시행령 제3조의2 (순직·공상군경 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 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차단된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우울증에 따른 자살이므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군 복무와 우울증 발병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순직군경에 해당에 해당하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²⁵²⁾ :
국가유공자 불인정

(1) 사실관계

망인은 2002. 1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해 오던 중, 2003. 8. 23. 15:30~17:30 경 소속부대의 교보재 창고 천장 서까래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8. 12. 26. 피고에게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망인의 생모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것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고, 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 원고가 망인의 생모임을 확인할 수 없어 동 법 제5조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 6.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

252) 이 판결의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구단374판결, 원심인 제2심은 대구고법 2010. 5. 28. 선고 2009누1656 판결 참조. 제1심은 원고 패소 판결, 제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2. 경북과학대학 전산정보계열 1학년 재학 중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은 후 2003. 1. 24. 제12보병사단 37연대 3중대로 배치되어 무선전화병으로 복무하게 된 사실, 망인은 2003. 4. 28. ‘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03. 5. 28. 퇴원하는 등 잦은 병원 치료로 인하여 자신의 담당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과 질책을 받은 사실, 망인의 퇴원 직후인 2003. 6.경 본부소대의 행정인력이 감축되면서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으며, 이러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새벽까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등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면서 동료 소대원들에게 “미치겠다. 자살하고 싶다. 부대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본부분대장인 병장 소외 2는 2003. 6. 초순경 권투 실력을 보여준다면서 망인에게 침낭을 안게 한 후 주먹으로 때려서 충격이 가도록 폭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고, 선임병인 상병 소외 3도 망인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망인의 뺨을 때리거나 할퀴었으며 인신공격성 욕설을 하여 망인을 괴롭힌 사실, 망인은 2003. 8. 9. ‘우측관절 연부종양술 후 과반흔증 및 감염의증’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친구 소외 4에게 ‘매일 약간의 우울증을 비롯한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 망인은 2003. 8. 18. 퇴원하여 다시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3. 8. 23. 15:00 경

소의 2 병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고 흥분한 상태로 “군 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고 하면서 교보재 창고로 들어가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 한편 망인의 사망사건 조사기록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망인은 고참 병사들의 상습적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정서를 동반한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Depressed Mood)’를 앓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확실한 스트레스가 전제되었을 때에 가능한 진단으로 우울 장애(Depression)는 아니다.” “망인은 자대 전입 후 분명한 스트레스(잡은 업무질책과 폭언, 폭행, 가혹행위, 신체질환)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자발적인 우울감의 표현, 외로움, 지속적인 피로, 수면부족, 자살충동, 업무상 장애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존심 저하, 절망감, 분노 및 모멸감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위와 같은 적응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대학 1학년 재학 중이던 2001. 9. 19. 부친이 사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부친 장례식 때 자신보다 16~20세 연상인 이복형제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실, 망인은 신장 178cm, 체중 46~48kg의 허약한 체질로서 우측 발목 연부조직 종양 절개수술 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교육훈련 누락으로 예정일보다 1개월 늦게 일병으로 진급하게 되었으며, 내무반에서도 표정이 시무룩하고 말이 없어 동료 사병들은 망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군복무 중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적응장애는 선임병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사실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토

이 사례 역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수행과 우울증의 발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2) 국가배상 관련 판례²⁵³⁾

가)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 : 국가배상 인정

(1) 판결요지

망인이 휴가기간 만료일인 2005. 6. 7.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그때로부터 4일이 경과한 6. 11. 한강대교 교각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체

25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에 특별한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엄격함이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되었으며,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2005. 4. 2. 부터 4. 8. 까지 7일간 입창 처분을 받는 등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소위 6, 8 등 망인의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며, 더구나 망인은 1차 휴가를 마치고 군대에 복귀하기 전에 손목을 자해한 경험이 있어 보다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상관의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으로부터의 폭언 내지 질책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달리 망인에게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및 질책과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선임병들과 소속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특히 망인이 한 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점, 동료 사병들이 망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없어졌고,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및 망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망인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으며,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국가인 피고는,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29,448,704원, 형제자매인 원고 3, 4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검토

이 사례는 의무복무병사가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따라서 과실상계 80% 함)한 사례인바, 자해사망자의 과실상계를 80%로 하여 국가의 책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과실상계 80%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라는 추상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자해사망자의 권리구제에 너무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전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048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 :
국가배상 인정

(1) 판결요지

망인 A는 2004. 3.경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군수과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A의 부모이다. A는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인 B와 선임병 C로

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B는 2006. 3. 중순경 제35보병사단 군수와 사무실에서 공문유지 등 기본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뺨쳐’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3. 초순 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2006. 3.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귀를 잡아당겨 A로 하여금 책상과 바닥을 보게 하여 A를 폭행하였다. 또한, B는 2006. 3. 초순경 제35보병사단 정보작전과 사무실에서 정보과 병사 2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일지 작성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야 새끼야, 씨댕아,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좇같은”이라는 폭언을 하는 등, 200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C는 2006. 3. 경 제35보병사단 예비군 식당 안에서 태권도 연습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에게 “개새끼, 씨발놈, 미쳤냐”라는 폭언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A는 2006. 6. 5. 제35보병사단 예비군 식당 뒤편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전투화 끈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휘관인 B, 선임병인 C은 망인에게 고의로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소속부대 지휘관들 및 선임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 3. 초순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6. 6. 5. 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 피고는, 부모인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2) 검토

이 사례 역시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복무기간 중 부대 내에서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1) 국가유공자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 사례)²⁵⁴⁾ :
국가유공자 인정

254) 이 판결은 2012. 6. 18. 행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바, 해당 판결을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의 사례로 제시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개정되어 2012. 7. 1.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하지는 않았지만, 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한편, 이 사건의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10구단851 판결이고, 원심인 제2심은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이다. 이 판결의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다.

(1) 사실관계

망인은 1978. 11. 24. 생으로 대구 ○○○대학교 기계계열과 1학년을 휴학하고, 1998. 5. 4. 공군 병529기로 입대하였다. 소속부대에 전입된 후에도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선임병들로부터 무능하다는 이유로 자주 질책과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후임 병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평소 구타 및 가혹행위, 1999. 4. 23. 강제에 의한 대리시험·적발·감찰조사 이후 1999. 4. 24. 자해사망하였다.

원고는 2001. 3. 5.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5. 17. 망인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 및 소외 24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01구7535호)은 2002. 6. 28.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02누1688호)은 2003. 1. 17. 망인의 자살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3. 6. 13. 상고심(대법원 2003두1325)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4. 18. 군의문사진상위원회에 망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2. 8. ‘망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과 부대원들에 의한 집단적인 따돌림, 중대장, 선임병 등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대리시험 발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격의 침해를 받고도 이를 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 의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문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결정문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변경할 만한 요건 변동 자료로 볼 수 없어 망인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4. 2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

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비록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제4호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개정 전에는 위 법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제외 사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 제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이 사례는 2011. 9. 15.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같은 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 법률을 적용한 사건이다.

다수의견은 개정 전 동 법 제4조 제1항 제4조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어 개정 후 동 법 제4조 제6항으로 변경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견해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별개의견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무조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반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구체적인 예우를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자’로 할 것인지를 단계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을 유보하고 있다.

소수의견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 그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사전적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견해로서, 자살이 도저히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만을 동 규정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⁵⁵⁾

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에 대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²⁵⁶⁾ : 국가유공자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255)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판례평석은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 XVII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196쪽 이하 참조.

256) 이 판결의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이고, 원심인 제2심은 대구고법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참조.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다.

(1) 사실관계

망인은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2015. 5. 24. 흑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5. 9.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재해사망 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

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 ·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 등이 직무상 코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코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 · 성질 · 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검토

이 판결은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요한다. 첫째 자해사망자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대법원은, 2012. 7. 1. 보훈법 개편 이후 자해사망자에 대한 두 법률의 적용 배제사유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

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근거로 들고 있으면서도, 동 규정은 주의적·확인적 규정이라고 하여 자살자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 규정을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하지만 군인이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넷째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와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70449 판결²⁵⁷⁾(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

(1)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1981.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2. 8.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9. 4. 15.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받아왔고, 사고 전날에도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소속 부대 간부를 찾아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자, 더 이상 군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절망과 무력감, 구타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두려움 등으로 정신적

257) 이 판결의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구합60825 판결이며, 제1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는 2013. 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1. 기각되었다.

공황상태에 처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진상규명결정을 바탕으로 2012. 10.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군입대 8개월이 조금 지나 소속 부대 유티고 초소 야간 경계근무 중 자신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법상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5호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에 의거하여 2013. 3. 15.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함과 동시에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처분을 하였다.²⁵⁸⁾

(2)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이 위입법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 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 등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것'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258) 이 사례는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처분을 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제1심 및 제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다.

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자해행위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한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직접적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인 경우에는 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전제에서 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률적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순직군경에 해당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

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만한 희생과 공헌, 국민적 귀감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공익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은적 성격을 띠고 있고,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수급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어 공익목적에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점, 망인과 같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자법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국가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수급권의 국가보은적 성격,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국가보훈 대상의 증가, 국민의 인식,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의 구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날로 정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가장 부합하겠지만, 그와 같이 할 경우에는 예컨대 공무상 질병의 발병일과 같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날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순국선열과 같이 그 사정 발생일이 국가유공자법의 시행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전까지 소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일로 할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기하고 국가의 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을 한 날’을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와 권리관계의 명확성 등 관련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를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9. 4. 1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0.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3. 15. 피고가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기부처분을 한 사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가 2009. 4. 1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으로 비로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진상규명결정 이후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날'인 2012. 10. 22. 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유공자 등을 보호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 4. 1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받고도 2년 이상 지난 개정법 시행일 2012. 7. 1. 이후인 2012. 10.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이상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검토

이 사례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즉,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직접적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인 경우에는 위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현행 보훈법 체계 내에서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순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국가배상 관련 판례

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국가배상과 보상의 관계)²⁵⁹⁾ :
국가배상 불인정

(1) 판결요지

원심은, (가) 망인이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하사로 임관 후에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이 사건 합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2011. 3. 27.부터 그다음 날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사망한 망인을 상속한 사실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우울증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망인의 상관이나 소속 부대 지휘관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 망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지원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국가

259) 이 판결의 원심은 부산고법 2015. 6. 25. 선고 2014나52759 판결 참조.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나) 또한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각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등으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등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대상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및 개정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토

이 판결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당시 원고들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의 단서를 적용할 때 구법이 아닌 개정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개정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면, 각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등으로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타당한 판결로 보인다.

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국가배상과 보상의 관계 및 이중 배상)²⁶⁰⁾

(1)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

²⁶⁰⁾ 이 판결의 원심은 서울고법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참조.

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11조가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설령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이에 장래 일실수입 등에서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급여액 등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정해지게 되므로,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중첩되는 영역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²⁶¹⁾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 밖에 달리 보훈보상자법에

2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이와 같이 선지급된 손해배상액을 장래 지급할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망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망인의 상관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 2007. 4. 9. 새벽에 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②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들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10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3.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함께 111,015,460원을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0. ‘망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④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하거나 환수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훈보상자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검토

이 판결은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둘째 대부분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보훈보상자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셋째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중첩되는 영역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 넷째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급여액 등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이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이에 장래 일실수입 등에서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이와는 반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중배상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⁶²⁾

262) 「군인 재해보상법」은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정] 최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동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배상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조성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112쪽 이하 참조.

제2절 사례 고찰을 통해 본 보훈법 해석방향 분석

1.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가. 헌법재판소의 입장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보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사립학교 교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이란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이를 허용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중략)…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제1조),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으며(제2조), 이에 따라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위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국가의 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하였고(제3조), 제4조에서는 현 단계에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를 15개 유형²⁶³⁾으로 한정·열거하였다(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이는 우리 헌법이, 그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였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

263)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18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 이념을 선언한 것과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을 명시한 것 등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4조 제1항²⁶⁴⁾에 그 바탕을 두면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그에 상응한 '영예로운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되도록 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상응하도록 보훈의 대상과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국가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 또 그 보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앞서 본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²⁶⁵⁾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공상군경'요건 관련 사건)에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

264)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65) 헌재결 1994. 6. 30. 91헌마161.

도의 도입 취지, 국가유공자 제도의 목적과 이념 및 위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게 되는 상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유형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제2항에서 ‘공상군경’의 요건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6호에서 ‘공상군경’의 의미를 먼저 정의한 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나아가 위임조항 자체에서도 ‘공상군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희생·공헌의 정도나 그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⁶⁶⁾

나. 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

266) 헌재결 2016. 12. 29. 2016헌바263.

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²⁶⁷⁾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동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동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처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26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할 만한 희생과 공헌, 국민적 귀감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국가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공익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제외된 자의 보상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입법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국가보훈 대상의 증가, 국민의 인식,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은 합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²⁶⁸⁾²⁶⁹⁾

268)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70449 판결 참조.

269)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153쪽 이하 참조.

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별의 합헌성

첫째,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입법재량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률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위반도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는 입법취지, 법률 및 시행령의 조항들이 헌법에 반하지 않으므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차별적 예우 및 지원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훈보상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인정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자 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으로서 직접 관련성의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거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및 제2-2호에 의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²⁷⁰⁾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해당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수호 등

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해당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넷째, 2012. 7. 1. 보훈법 개편 이후에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까지도 부정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²⁷¹⁾

그렇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실제 적용 모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및 판례의 태도에 대체로 수궁을 하면서도, 일부 명확한 기준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음을 밝혀 둔다.

2.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국가책임

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視角)

최근까지 아니 지금도 군에서 자해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이의 주요 원인을 망인의 개인적 원인에서 찾으려 하며 군대라는 환경적·부대적 원인은 애써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특성을 감안하고 의무복무병사의 근무지 및 담당하는 직무가 지휘·명령에 의해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무복무병사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책임을 대부분 의무복무병사 당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더욱 더 인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현실은 여전히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 및 보상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의무복무병사 자해사망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2013- 04787, 재결일자 2013. 8. 27.)에서의 청구인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고인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자해행

270)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27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심의 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하였는바, 국가를 위해 스스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견디기 어려운 공황상태에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희생이 숭고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이나 받으라는 피청구인 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숭 고한 희생이므로 이를 확인받고 싶은 것일 뿐이다.”는 외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 을 준다.²⁷²⁾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보훈법 체계에서 의무복무병사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 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 정·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급여금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둘째 「군인 재해보상법」²⁷³⁾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동 법 제2조에 의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복무 병사인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에 의한 사망보상금만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국 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 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민사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다. 대체로 혜택이 많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보훈보 상대상자 등록을 예비적 청구로 신청함과 아울러 「군인 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 금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행정심판 재결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따라 서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뒤따

272) 자해사망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유가족의 입장에 대하여는 최기홍 등 5명, 「군 사망자 유가 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0, 119쪽 이하 참조.

273)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정].

르는 입법 및 판례의 전향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 자해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대한 법리의 변화

1988. 12. 3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에 처음 신설되었고, 2002. 1. 26. 개정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률적으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그 근거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군 소령 자살 사례)에서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²⁷⁴⁾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경우에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²⁷⁵⁾ 그

274) 그 당시 법 시행령 제3조의2 (순직·공상군경 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 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275)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참조.

러나 이를 제외한 이 시기 대부분의 판례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로 판단하였다.²⁷⁶⁾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전, 대법원은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법리를 변경하게 된다.²⁷⁷⁾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70449 판결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직접적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규정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법령 체계 내에서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판결인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의무복무병사 자살)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결 및 판례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⁷⁸⁾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2011년 개정 시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

27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등 참조.

277)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등에 이어져 적용되었다.

278)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 판례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재승 등 6명,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국바부, 2020, 180쪽 이하 참조.

인정 제외사유였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이면에는 최소한 자해사망자를 보훈보상자법으로 구제하겠다는 입법적 고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호는 재해사망군경을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⁷⁹⁾ 2012년 보훈법 개편 이후의 판결은 대부분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라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망’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27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도 제15호는 제정 이후 2회의 걸쳐 개정되었는바, 보는 바와 같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점차 완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 6. 27., 제정]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5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42호, 2022. 5. 9., 일부개정]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록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국가의 수호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과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고,²⁸⁰⁾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복무 중 가혹행위 등의 사유로 자해사망한 의무복무병사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그렇다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는가 하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고 판례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다만, 해석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다른 한편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²⁸¹⁾

다. 자해사망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1) 행정소송상 증명책임

2012년 보훈법이 개편된 이후에도 자해사망의 경우 여전히 국가유공자 내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바, 이러한 이유는 증명책임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서 행하는 재판을 의미

280) 세부적인 근거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을 들고 있다.

281) 자해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조성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 자해사망 및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378쪽 이하 참조.

한다.²⁸²⁾ 우리 「행정소송법」은 심리절차에 있어서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²⁸³⁾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지는 것을 말하며, 직권탐지주의(또는 직권심리주의)는 그 책임을 법원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²⁸⁴⁾ 주요사실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거가 문제되기 이전에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장책임은 증명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편,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일정한 사실의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될 당사자 일방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한다.²⁸⁵⁾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를 증명책임의 분배문제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원고책임설, 피고책임설, 법률요건분류설, 행정법독자분배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법률요건분류설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²⁸⁶⁾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거는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²⁸⁷⁾고 판시하고 있다.

282)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623쪽.

283) 「행정소송법」 제26조.

28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20, 1158쪽.

285)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22, 992쪽.

286)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고(동법 제3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4조). 자해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항고소송(취소소송)이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

28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첫째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과 같은 소송여건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소송으로 취급되어 결국 원고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둘째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예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셋째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청이 부담한다.

2) 현행 보훈법 체계에서의 증명책임 분석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역시 원칙적으로 법률요건분류설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의 법적 성질 및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²⁸⁸⁾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²⁸⁹⁾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

체 판결 등.

28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28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⁹⁰⁾는 입장이다.

검토컨대, 판례는 원고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하면서 상당이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²⁹¹⁾

3) 현행 보훈법 체계에서 증명책임의 전환

심신이 건강한 청년이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건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해사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은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는 달리 보훈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증명책임의 전환이란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게 된다. 군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피

29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291) 참고로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이 가진 손해전보적 성질은 국가가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 수준을 강화할 동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주의 수준에 대한 강화 경향은 군대 내 총 사고비용의 최소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증명책임의 전환이 국가의 주의 수준의 강화로 나아가 갈 동기를 제공한다면, 증명책임의 전환은 이들 법률이 가진 성질을 잘 반영한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²⁹²⁾

라. 과실상계

보훈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실상계 문제이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의무자(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한편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대하여는 공법설과 사법설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공권설과 사권설로 구분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법설을 취한다. 판례가 사법설을 취하는 결과 국가배상청구권 역시 사권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국가배상에 있어서도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훈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상받는 금액이 매우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실상계에 의해 국가책임을 20~30%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²⁹³⁾

과실상계에 있어 자해사망자의 과실 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자해사망에 이르게 된 개인적 동기, 개인의 성향, 우울증과 같은 기왕증, 군대 내 생활 부적응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반면 국가의 과실 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군대라는 집단의 폐쇄성과 특수성,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의 정도,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292)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263쪽.

293)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048 판결 등 참조.

당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당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군대의 현실, 가혹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군 시스템의 실패 등이 제시될 수 있다.²⁹⁴⁾

판례는 과실상계의 이유로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망인을 혼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보통의 병사를 기준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으며,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²⁹⁵⁾라든지,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²⁹⁶⁾라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원고의 책임을 80%로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검토컨대, 판례에서 보듯이 과실상계의 정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²⁹⁷⁾ 징병제 국가라는 점, 주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해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이기도 한 자해사망자에게 이처럼 높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과실상계비율 완화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294)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앞의 논문, 266쪽.

295)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296) 전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048 판결.

297) 고작 ‘제반 사정에 비추어’가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소결론

이상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방향에 대한 연구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 또 그 보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보상을 하고 있는 현 보훈법 체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2012년 보훈법 개편 전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2012년 개편 이후에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또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등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인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반면, 2011. 9. 15.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되면서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셋째, 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증명책임 전환의 법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책임의 강화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Paradigm-Shift) 되어야 하며,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의 확대 측면에서 자해사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완화하기를 제시한다.

제4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실태분석

제1절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령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등을 들 수 있다.

사망자 발생 시 조치 순으로 살펴보면, 각군 또는 국방부에서 「군인사법」과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 의해 전공사상심사를 하고 군인의 사망이 순직인지, 일반사망 등인지를 확인하며,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지배적으로 정해지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그 유족에 대해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며 이후 유족의 신청에 의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여기에 따른 예우 및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죽음을 엄숙히 대하고 그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법령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입법의 취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공훈을 선양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동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지에 반하여 일부 법·제도에 흠결이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에 대한 타당성, 의무복무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확대 필요성,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병의 권리보장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章)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상과 개선방향을 주로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그에 따라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과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1. 순직등급 구분의 타당성

가. 문제의 소재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전사자 등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2호에서는 순직자를 I II III 형으로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을 통해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분류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²⁹⁸⁾ 그리고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를 신설하여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순직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표 4-1] 순직자의 범위²⁹⁹⁾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1.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비전공상자의 구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순직자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순직자의 범위를 확대(제54조의2 신설)
2.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재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제54조의3 신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달리 순직등급의 차별화는 국가기관 내부의 필요

298)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개정, 2015.9.23. 시행(2015.6.22., 일부개정)

299) 「군인사법」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52호, 2015. 6. 22., 일부개정]

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망인과 유족에게 실익이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특히 군인의 고결하고 엄숙한 죽음을 등급화한다는 것은 망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정당한 등급을 받지 못한 유족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순직의 등급화가 아니라 단순 유형의 분류라고 하겠지만 일반군인이나 유족이 느끼는 감정은 이를 넘어 등급의 경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의 차이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방부에서 순직자로 결정이 났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순직자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순직이 아닌 재해 사망이거나 일반사망에 해당한다는 취급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 타당성

1) 순직의 정의와 등급의 차별

순직(殉職)의 사전적 의미는 ‘직에 따른 죽음’,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사법은 순직을 등급화하여 구분하고 있는바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구별은 순직이란 용어를 자의적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⁰⁾

300) 오진영,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2016), p.192.

[표 4-2] 전사자등의 구분³⁰¹⁾

<p>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p> <p>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p> <p>2. 순직자 가. 순직 I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 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 III 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p> <p>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p> <p>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p> <p>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p> <p>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p> <p>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p> <p>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p>

2) 순직등급 차별의 목적과 용도

국방부와 각군본부는 전공사상심사 후 국가보훈처에 망인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통보하고 있는바, 이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군인사법」 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301) 「군인사법」 [시행 2022.7.5.] [법률 제18680호, 2022.1.4., 일부개정]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령이다.

[표 4-3] 사망확인 통보³⁰²⁾

제10조 (사망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 영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영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 가. 사망자 연명부 1부
 - 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1부
 - 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유족에 대한 통지 및 안내 : 각 군 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결과 사망구분이 변경(전사·순직)된 인원에 대한 제적명령 정정발령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망확인서를 발급하여 유족에게 통지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결과 접수 후 7일 이내에 유가족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사항(현충원 안장, 보훈수혜 신청 등)을 공지한다.
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 ② 국방부는 유가족 또는 민원인에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망구분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서로 통보한다.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간 사망자 현황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국방부와 각군본부는 전공사상심사 결과 순직 I II형 분류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 통보하는데, 순직II형이 국가유공자법에서 명시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의 순직군경과 의미의 일치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와 각군본부에서 순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인원을 100%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302)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시행 2020. 12. 15.] [국방부훈령 제2489호, 2020. 12. 15., 일부개정]

심사를 통해 해당 인원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방부의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될 뿐이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군 사망자 보훈심사 현황을 보면, 순직 I 형 분류자 13명 전원(100%)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결정을 받았고, 순직 II 형 분류자는 16명으로 그중 10명(62.5%)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6명(37.5%)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으로, 순직 III 형 분류자는 총 323명으로 이중 국가유공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247명(74.6%)이 82명(25.4%)은 비해당 결정³⁰³⁾을 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의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전사자 및 순직자 분류기준표가 상이하다는 데 있다.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 시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7 ‘전사자 분류기준표’ 및 별표8 ‘순직자 분류기준표’를 적용하여 전사자와 순직자를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심사 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표’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를 판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순직자 분류표 및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303)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2022). p.140.

[표 4-4]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³⁰⁴⁾

구분	기준 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I 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이하 생략
순직 II 형	2-2-1	순직 I 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 주특기 훈련, 그 밖에 유사시(有事時)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4	이하 생략

30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6. 30.>

순직 Ⅲ형	2-3-1	순직 I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이하 생략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4-5]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³⁰⁵⁾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	기준 및 범위
2-1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2) 경찰공무원, 3) 소방공무원, 4) 공무원 관련 기준 생략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

305)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3.>

	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접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생략

위 표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국방부에서 분류한 순직자나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표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다 세분하여 순직자를 분류한 것이고 국가보훈처는 군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과 범위만을 살려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 기관이 유사한 기준으로 순직자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추후 협의를 통해 하나의 공통된 기준표를 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순직등급 차别的 실익 여부

전공사상심사 결과 순직 결정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현역군인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4항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인원을 규정하는바, 제2항에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현역군인으로 사망한 자는 전사자와 순직자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순직자는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전공사상심사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순직 해당 여부만 필요할 뿐 순직등급은 고려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30조는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0조 제1항은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의2는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진급시 순직자의 등급이 아니라 순직 여부만 고려된다고 할 수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해 순직유족연금이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동법 제5조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어 순직유족연급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군본부나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 결과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순직에 해당하면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으며 이때 순직의 등급은 필요하지 않다. 사망보상금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공사상심사 결과에 의해 순직 해당 시 지급되는 구조이다.

「군인사법」의 순직등급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국가보

훈처는 국방부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보훈심사는 전공사상심사와 별도로 이루어 지기에 국방부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결정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급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실익이 없는 순직등급 구분으로 인해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차별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낮은 단계의 등급을 받은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군인사법」의 순직 구분이 등급이 아니라 단순 유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족이 그것을 등급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호에서 순직자를 I II III형으로 구분하기 전에는 사망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였다. 국방부는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우와 보상 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순직자를 차별함으로써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녀를 잃고 애통해하는 유족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만 양산하는 순직자 차별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이 여기에 있다.

4)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 불일치로 유족에게 불만과 혼란 초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바라보는 순직의 용어와 범주에 차이가 있다. 「군인사법」은 순직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범주를 명시하고 있는바, 순직II형을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순직III형을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경’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국방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보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본다는 것이다.

군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역에 종사하는 모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국가방위의 역량에 포함되어 국가안보를 위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군인은 접적지역에서 각종 작전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하고 비접적지역에서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전투지원활동 등

을 통해 국가방위에 종사한다. 동일한 병사가 밤에는 GOP 경계초소에 투입되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낮에는 주둔지 경계시설물 보강 작업이나 주변 환경 정리에 투입될 수 있다. 필요시 취사장에 지원을 나가 밥을 짓거나 보조작업을 할 수도 있다. 눈이 오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제설작업에 투입되어 보급로를 확보해야 하고 비가 내리면 유실된 도로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도로를 유실된 상태로 방치하면 작전차량이나 보급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해 작전수행이 불가하거나 부식을 제공받지 못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경계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각종 자재와 벽돌을 운반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길어 보강작업을 해야한다. 수풀이 우거지면 제초작업에 투입되고 산불이 나면 진압작전에 투입된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병사가 수행하는 일상의 업무이다.

전방에서 GOP 경계작전 임무를 마치고 FEBA 지역으로 나오면 그동안 밀린 교육훈련과 각종 전투수행능력 평가를 받느라 여념이 없다. 중·소대 전투력 평가, 대대 ATT, 여단 BCT, 사단 전투지휘검열...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사격, 수류탄, 지뢰 및 부비트랩, 철조망, 대전차화기, 무반동총, 박격포, 전차, 장갑차, 각종 구경의 포 사격, 구난차, 화생방, 유격훈련, 공수훈련, 헬기레펠... 등 군인의 훈련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빠빠한 교육훈련과 전투력 평가의 와중에 환경미화, 대민지원 등의 업무도 곧잘 부여된다. 이 모든 것이 자의가 아닌 부대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다. 적어도 의무복무자에게는 그렇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대는 항상 안전사고와 군기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휘관은 늘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안전확인팀을 운용하기도 한다. 육군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해군과 해병대, 공군도 종류를 달리할 뿐 전투준비와 작전수행 등의 기본 임무는 동일하다.

군의 전투력은 작전과 교육훈련 그리고 원활한 부대관리를 통해 완성된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군대는 강한 전투력을 유지하여 어떠한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시에는 강한 억제력을 발휘하여 국가안보를 지키고 전시에는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한다. 이것이 군대와 군인의 역할이고 숙명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북한은 배합전을 통해 전후방 동시전투를 강요하는 전투개념을 갖고 있어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의무복무자는 이러한 전투와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활동에 반의사적으로 투입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어떻게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로 또 어떤 경우는 직접적이지 않은 관계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복무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우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의 경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 만일 있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감 속에서 순직의 개념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방부에서 순직자로 결정되면 당연히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사망자이나 심지어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녀를 군에 보내어 훈련 중에 사망했음에도 국가가 순직자가 아닌 재해사망자나 일반 사망자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로 유족에게 불만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 개선방향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구분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망인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적 용도로만 활용될 뿐 군인과 유족에게는 실익이 전무(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등급을 구분함으로써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차별하고 이로 인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차별항목을 삭제하고 ‘순직’으로만 명시하여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엄숙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심사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해당여부 의견을 통보할 때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내용을 활용하면 된다. 오히려 하나의 공통된 기준표를 활용하여 망인을 평가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검토한 바로는 국방부의 순직 분류표가 세분화되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분류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상 국가보훈처에서 심의하는 국가유공자 심의 대상의 90% 이상이

군인임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양 기관의 분류표를 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검토한 바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대한 정의 중 ‘직접적인’ 구절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심사대상을 국방부에서 ‘순직자’로 분류한 자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순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순직의 개념을 한정시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범주로만 제한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같은 국가기관인 국방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법의 영역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법률에 한정함으로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억지스럽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왜 순직자로 부를 수 없는가? 군인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군에서 순직으로 분류하고 예우하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동일한 죽음을 순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순직은 맞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의 죽음을 욕되게 만들고 유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순직자라고 불러주지 못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서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 기준에 비추어볼 때 국가의 편협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군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족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등 이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군인의 죽음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재해로 평가하는 것은 망인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와 같다. 죽은 자는 말이 없겠지만 적어도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국가가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아픔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의 캐치프레이즈는 입대에서 국립묘지까지 군인의 건강과 복지, 예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군인의 죽음을 담보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최고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도 가져야 하겠다. 이에 동의한다면 군인의 죽음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여 재해사망이라는 용어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하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협의가 필요하다.

2. 「군인 재해보상법」상 수급권자 범위의 타당성

가. 문제의 소재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망자가 부양하던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 유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형평성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인의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의 재조사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망한 군인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상당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보상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과거의 사건들 상당수가 이미 사망에 따른 보상을 수령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포함하고 형제자매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⁶⁾

나. 유족의 범위와 권리

1) 유족의 정의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2호는 유족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로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와 2촌 이내의 혈족 중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 중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최선순위 유족만 수급권자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유족의 범위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여부에 관계 없이 수급권이 인정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 그러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장애가 있지 아니한 자녀는 25세가 되던 해 수급권을 상실한다.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모 이혼 시에도 인정되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재와

306) 하주희 등, 「순직군인 형제자매 보상에 관한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21, p.5.

관계없다. 이 조항 때문에 어려서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여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父)나 모(母)도 수급권자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주에 들지 않기에 생략한다.

손자녀와 양손자녀를 모두 인정하며, 조부모와 외조부모 및 실부모와 양부모, 양부모의 실부모와 양부모 모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손자녀도 장애가 없을 경우 25세가 되면 수급권을 상실한다.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재보험법과 비교 시 불평등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법 제63조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명시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명시하고 있다. 유족의 범위의 나이의 경우에도 두 개의 법이 각기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과 산재보험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군인 재해보상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약 비교

구 분	「군인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의 범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 1. 배우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부모 4.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5. 조부모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1. 배우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4.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5.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6.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수급자격 순서	민법의 상속순위: 1. 직계비속(배우자),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順

「군인 재해보상법」과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범위와 수급자격 순서를 달리하고 있지만 가장 대별되는 것은 산재보험법은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고 「군인 재해보상법」은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수급자격 순서를 「민법」의 상속순서를 따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상속순위에 포함된 형제자매는 그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의 흠결인지, 의도적인 제외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산재보험법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형제자매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3) 유족의 권리

유족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최순순위 유족만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또는 순직유족일시금)과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직유족연금은 ①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②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되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 초과가 불가하다.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특수직무순직자(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액 평균액의 45배 금액, 그 밖의 순직자는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 개선방향

「군인 재해보상법」의 유족의 범위에 기존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25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누락 없이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도 자동으로 수급권

자가 되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순위자만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할 경우는 드물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의 소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이다. 사전 법 개정을 통해 극히 적은 경우가 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부양’을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순직군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던 경우는 결혼한 군인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부양의 표현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무복무자 등 미혼자로서 순직자가 된 경우 이들이 부양하던 가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모도 본인이 부양하기보다는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부양의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 부양이라는 용어에 천착하여 순직자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군인 재해보상법」의 부양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라고 여겨진다. 장기복무자와 의무복무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유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부양’의 용어를 ‘생계를 같이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2절 일반사망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1. 문제의 소재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³⁰⁷⁾. 그러나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사망은 전사자나 순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사망의 분류 유형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의무복무자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받기 때문에 군 간부들에 비해 보상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재원이 「군인연금법」과 같이 군인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교부금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사망시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법의 재원이 군인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아니라 국가가 전액을 제공하므로(「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의무복무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사망으로 결정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등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군인사법」 개정에 의해 의무복무자가 사망 시 순직자로 분류한다고 했지만, 의무복무자가 자해사망할 경우 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307) 그 제정 이유에 대해서 국회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843]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국방위원장)의안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T9X0K9R2K4C1E9Q4V8P1C1W7R2M6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의무복무자의 사망 시 순직을 확대 적용하여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2. 일반사망자 지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

가. 일반사망자 지원제도 분석

1)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상 일반사망자 처리 및 지원

「군인사법」상 일반사망자는 전사나 순직이 아닌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2022년 1월 신설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인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조문에 의하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바,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그것이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기존의 일반사망자 분류를 순직으로 분류한 진일보한 입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여 자해사망의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순직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자살 간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폐쇄적 집단이기에 군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증거가 은폐되기 쉽다. 보훈보상자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가해자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

는 위험영역이론을 고려할 때 증명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³⁰⁸⁾. 의무복무자가 「군인사법」상 순직으로 처리되어도 보훈 심의 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 보상은 불가하다. 하물며 일반사망자로 분류 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이다.

2) 「군인 재해보상법」상 일반사망자 지원제도

군은 일반사망자 발생 시 필요한 지원과 책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자해사망자(미순직 자살)와 안전사고 사망자(교통사고, 익사 등)로 분류되는데, 의무복무자의 경우 자해사망자 중에서 순직처리자는 사망보상금 1억 3천만원과 병 전우사랑 위로금 1억이 지급되는데 반해 미순직처리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어 병 사망위로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된다. 안전사고 일반사망자는 사망보상금 1억이 지급되며, 병 나라사랑카드 발급 병사가 영외 상해사고 사망 시 은행별로 1천만원~5천만원이 지급된다. 순직자와 일반사망자의 보상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해로 인한 일반사망자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의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군인 및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령으로 「군인연금법」과 통합되어 시행되었으나 2019년 12월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시행 중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사망보상금을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으며,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였다.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30일부로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308) 김민영 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2017), p.234.

[표 4-7] 「군인 재해보상법」 목적 및 적용 범위³⁰⁹⁾

<p>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p> <p>1. <u>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u></p> <p>2. <u>병(兵)</u></p> <p>3. <u>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u></p>

「군인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규정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사망자가 아닌 순직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일반사망으로 분류될 경우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되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복무자가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분류하고 또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재해사망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가결되거나 부결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³¹⁰⁾³¹¹⁾.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가결로 판정된 경우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된다.

30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04호, 2022. 2. 3., 일부개정]

310)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2626(2022.8.19.) “군인 재해보상법 상 제심사 현황”

311) 군 사망사고의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 및 유가족의 국가 보상을 위해 제심사 지원 등이 가능토록 기여하고 있는데 군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직무 관련성 있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은 제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국가 보상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다.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해서도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의 기관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8]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원심) : 2020년~2022년 6월

구분	심의 건수	가결	부결	보류	각하
'20년	78	37	37	4	-
'21년	72	34	31	7	-
'22년	14	4	8	2	-
합계	164	75	76	13	-

같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간부와 병사의 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에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 재해보상법」과 유사한 법령인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산재보험법은 적용대상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병사도 그 신분상 엄연히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같은 군인이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고 예우와 복지에 대해서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한 부사관과 병사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 제2조 적용 범위에 “이 법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군인 재해보상법도 이를 따랐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이 부사관 이상 간부로 적용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그 재정이 군인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교부금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들은 당연히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시 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군인연금법」을 그대로 따라 적용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군인 재해보상법」은 그 운용자금 전액을 사용자인 국가가 제공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의 재해보상은 국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체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한 부사관이나 병사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일반사망자 지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순직개념 확대 필요성)

1)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에 대한 개념 고찰

국제관계학자들은 안보와 안보만이 보장할 수 있는 생존은 국가의 최고이익이며, 안보는 국가행위의 핵심가치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믿는다. 경제발전, 국제교류와 비교한다면 안보는 경제와 발전 등의 '로우 폴리틱스(Low Politics)'와 구별되는, 또한 이를 초월하는 국가의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이며 종종 일종의 보편적 공통인식으로 간주된다. 국제정치학의 거두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는 안보라는 명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국가적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¹²⁾

국가의 생존과 번영,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인 국가이익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으로 국민, 영토, 주권 수호를 통해 국가존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으로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으로 국민경제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정립과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국제적 역할 확대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실현이 가능하다.³¹³⁾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헌법」도 국가안전보장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최고의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만이 보장할 수 있는 생존적 이익은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가이익이다. 국가가 안보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국권침탈 일제 36년 등의 뼈아픈 역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존재하며 생존이라는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직업으로 군인이 필요한 것이다.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군의 존재와 가치를 그 이

312) 주평 지음·이상원 옮김, 「국제관계이론과 동아시아안보」(서울: 북코리아, 2014), pp.24~25.

313) 하정열 외 공저,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서울: 오래, 2014), pp.65~66.

념과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국토방위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여러 현황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국방부의 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는 수십 회에 이르는 반복적 언급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여 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군인의 존재 그 자체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실질적으로 억제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인의 역할을 달리 해석하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에서 명시한 순직의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억제는 라틴어로 공포심, 무서움을 뜻하는 ‘terrere’에서 유래했다. 즉 억제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심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말한다. 억제전략은 ‘적이 침략을 통해서 얻으리라고 예상하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여건을 불리하게 조성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침략행동을 단념케 하는 전략이다. 즉, 적에게 공포심을 주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하는 전략인 것이다. 적이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보복에 의해 얻는 피해나 침략에 의한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시켜 적의 전쟁 도발의지를 말살하거나 확전을 방지한다. 억제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능력과 의지, 환경(신뢰성)에 있다. 즉, 적이 침략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위력이나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복능력을 갖추고, 응징을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능력과 의지를 적이 인식토록 여건(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³¹⁴⁾

군의 각종 정책과 작전수행, 교육훈련은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여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능한다. 군은 적이 인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한다. 군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하여 적의 도발을 막아 평화를 이루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력을 받

314)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서울: 플래닛미디어, 2016), pp.204~205.

휘하여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법으로, 안장대상자에는 현역군인 또는 20년 이상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이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서, 여기에는 순직군경이 포함된다. 「군인사법」,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은 모두 군인과 관련이 있는바, 그 배경에는 군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죽음은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사망 당시의 상황과 조건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군인은 사망하기 직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방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군인의 죽음의 무게이다.

2) 의무복무자의 입대, 부대배치, 직무부여의 과정 분석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의무적으로 복무하는데, 이때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를 제외한 병사는 입대와 부대 배치, 병과 및 주특기 분류, 직무, 교육훈련 등에 관해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조직의 필요와 상관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적 도발에 대비한 작전의 수행이나 교육훈련, 각종 직무나 심지어 휴식 및 취침도 부대계획과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수행된다. 개인의 자발적 의사나 사정이 고려되어 계획과 명령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병사들은 입대 후 병과별로 분류되어 개인 주특기를 부여받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특기는 6자리 숫자로 표시되는데 전투병과인 보병은 111101 소총수부터 시작하여 M60/K3 기관총, 60밀리 박격포, 90밀리 무반동총, 106밀리 무반동총,

81밀리 박격포, K4 고속유탄기관총, 4.2인치 박격포, 대전차유도탄, 체육지도병, 유탄발굴병, 군마조교병, 의장병, 복지병, 훈련소조교병, 기계화보병, 낙하산 포장정비, 특공병 등이 있다. 기갑은 K계열 전차 승무원, 전차 시뮬레이터병, K계열 전차 부대정비, K계열 전차 포탑정비, M계열 전차 부대정비, M계열 전차 포탑정비, 전자통신 정비, 장갑차 조종, 장갑차 정비, K-21 보병전투차량 조종수, K-21 보병전투차량 포수가 있다.

포병은 131101 105밀리 견인포/자주포병부터 155밀리 견인포/자주포병, K55자주포 조종, 견인포화포 정비, K55자주포 정비, K-9자주포 조종, K-9자주포 화포/장갑 정비, 다련장 운용/정비, K-239 운용/정비, MLRS/ATACMS 운용/정비, MLRS/ATACMS 사격지휘전산, 105밀리 사격지휘, 155밀리 사격지휘, 로켓포 사격지휘, 음향장비 운용/정비, 포병측지, 포병탐지레이더, 자동측지 운용/정비, 포병측지, 포병탐지레이더, 자동측지 운용/정비, 현무 미사일 발사대 운용/정비, 현무사격통제장비 운용/정비, 포병기상이 있고, 방공은 141101 발칸운용, 오리콘 운용, 비호 운용, 방공작전통제, 휴대용 유도무기 운용/정비, 천마 운용, 발칸 정비, 오리콘 정비, 비호 정비, 천마 정비, 방공레이더 운용/정비가 있으며, 정보는 151101 군사정보, 심리전, 방송병, 특수정보, 정찰, 신호정보, 전자전운용, 땅굴탐지, 지형자료관리, 탐지분석, 감시장비 운용, TOD 운용, 보안, 어학병, 카투사, 무인항공정찰기, 드론 운용 및 정비병이 있다. 공병은 161101 전투공병, 지형자료관리, 장애물운용, 야전건설, 측량, 소방장비, 배관 및 기계설비, 전기설비, 장갑전투도저 운전, 다목적굴착기 운전, 교량전차 조종, 도하장비 운전, 정수장비 운용, 공기압축기 운용, 크레인 운전, 도저 운전, 그레이더 운전, 발전기 운용/정비, 로더 운전, 굴삭기 운전, 도로포장기 운전, 공병장비 부대정비가 있다.

정보통신에는 171101 통신운용/정비, 무선전송장비 운용/정비, 무선장비 운용/정비, 이동통신장비 운용/정비, 정보통신망관리장비 운용/정비, 영상음향장비 운용/정비, 교환설 운용/정비, 기록통신장비 운용/정비, M/W 운용/정비, 위성 운용/정비, 암호 운용, 레이더 운용/정비, 네트워크 운용/정비, SW 개발병, 전술C4I 운용/정비, 정보통신체계 운용/정비, 정보보호병이 있고, 항공에는 항공운항/관제, 소형공격헬기 정비, 중형공격헬기 정비, 소형기동헬기 정비, 중형기동헬기 정비, 대형기동헬기 정비, 헬기 기체 정비, 헬기 계기 정비, 헬기 무장 정비, 항공통신전자 정비가 있다.

이외에도 기술병과와 행정병과 및 특수병과도 수십 개의 주특기로 분류된다. 이

는 육군의 경우를 예로 든 것으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도 개인 주특기를 부여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소 장황해 보이지만 의무복무 병사가 부여받는 주특기를 이와 같이 소개한 이유는 병사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병사들은 개인 주특기를 부여받고 다양한 환경에서 각종 교육훈련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수백~수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국가수호와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로 단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의무복무자의 부대 배치와 직무수행, 교육훈련의 종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것은 군인의 죽음의 상황 또한 본인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는 전방에 배치되어 적을 마주 보고 비무장지대와 철책선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누구는 함정을 타고 바다를 누비며 영해를 수호하고 또 누구는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수색 및 매복, 정찰, 사격과 기동, 지뢰 및 부비트랩, 불발탄 제거, 강하, 헬기레펠, 패스트로프, 잠수함 작전, 유격, 고압선 작업,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운전 및 정비, 취사, 범인 체포, 경호업무, 대테러작전, 재난현장 투입, 긴급구조활동, 계호업무, 산불 진화작업 등... 병사들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류의 직무와 교육훈련에 투입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의무복무자의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유무를 갖고 순직의 등급을 나누거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므로 대단히 신중해야 함을 나타낸다. 24시간 통제된 병영에서 살아가는 의무복무 병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순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해석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 군 복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담보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자신의 인생의 젊은 날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군은 군 복무에 적합한 군인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동안 군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군대라는 영역은

위험한 무기와 장비를 다루고 극심한 인내가 요구되는 교육훈련과 직무를 수행하기에 각종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 악습 및 폐습, 병영 부조리 등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늘 노심초사하며 자녀의 무사 귀환을 기다린다. 이러한 와중에 군대에 보낸 자식의 사망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크나큰 고통이며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을 수 없는 트라우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냈으니 건강한 상태로 돌려보내 달라는 부모의 외침은 그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자녀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죽음의 유형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과 피를 말리는 결정 과정 속의 기다림 등은 유족을 두 번이나 고통 속에 밀어 넣는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활용하다 희생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고의 기반 위에서 군인의 숭고한 죽음은 엄숙하게 처리하여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복무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의무이므로 그 희생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반문해 봐야 하며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 등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인 등은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 그리고 「군인 재해보상법」 외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는 앞 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의무복무자가 2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무복무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나 순직을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는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국가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헌법과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의무복무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군인 재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가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2중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의무복무자도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의무복무자의 숭고한 희생의 기반 위에 지탱되고 있다. 병사들이 없는 군대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는 국가이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존이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국민으로 하여금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을 훈련시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모든 병사는 그 존재 자체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시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자녀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부모가 자녀를 군에 보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을 국가방위에 활용하고 때가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보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부모와 국가 간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자녀가 군에서 아프거나 만일의 경우 사망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오죽하면 군에 보낼 때는 나라의 자식이고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자식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들려오겠는가? 국가와 군은 군에서 복무한 자녀를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으며, 만약의 경우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무복무자의 순직과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개선방향

의무복무자의 반의사적 복무환경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의 상황과 조건, 직무와 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 순직등급을 분류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 자체가 강력한 군대

를 건설하여 적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사망은 순직 처리가 마땅하다. 자해사망자의 죽음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대적 요인을 인정하여 정상적인 사고의 결여로 인해 자해에 이르게 된 점에 방점을 두고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의 취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망자 분류를 최소화하여 망인과 유족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도 반영되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죽음에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일반사망자 지원 확대는 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자 분류를 확대하고, 보훈심사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공사상심사에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24시간 통제된 병영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고의나 과실, 위법,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를 최소화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더위에 훈련 도중 대열을 이탈하거나 수영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잠시 강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한 처사라고 보여진다. 과실이 될 수도 있고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개인의 이탈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지 못한 부대 책임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군인의 죽음을 단순히 일반사망으로 규정하여 예우와 보상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소 국한된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부대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자살한 경우는 순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일반사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내에서 자해사망 하면 순직이고, 부대를 이탈하여 영외에서 자해사망 하면 일반사망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입법의 취지를 살려 부대요인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할 경우는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무지 이탈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도 안 되며 사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와 사망 구별을 판단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사망자 분류에 관한 시행령에서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에 대한 항목 삭제가 요망된다.

[표 4-9] 「군인사법 시행령」 일반사망자 분류기준 일부개정(안)

기 존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p> <p>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② 법 제54조의 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p> <p>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② 법 제54조의 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u> 2. <u>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u> 3. <u>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u>

그 외에 일반사망자 지원 확대는 의무복무자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군인 재해보상법」 보상대상에 의무복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는 병사의 경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별되기 이전 「군인연금법」에서도 동일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법」에서의 적용범위에 병사를 제외한 것은 군인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리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여금 부담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사를 「군인 재해보상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무복무라는 이유로,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적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병사도 군인이므로 급여의 수종 등이 다른 신분의 군인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보상 등의 차별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4-10]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대상 일부개정(안)

기 준	개 정
<p>「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p>「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간부후보생(군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p>

제3절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개선 및 장병 권리보장 체계화

1. 문제의 소재

군내 사고발생 시 자체 조사는 부대 부조리나 잘못을 은폐하고 사고발생 요인을 개인적 원인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육군본부에서는 2003~2007년 발생한 군대 내 자살의 원인이 부대관계(근무 및 훈련 부적응, 선임병 횡포, 따돌림 등) 32.4%, 개인관계(가정환경 비관, 염세 비관, 이성관계, 성격결함 등) 67.9%로 개인적 원인이 군대 관련 원인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하며 군대 내 자살은 부대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라고 보았다.³¹⁵⁾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군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에서 찾는 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사고발생 시 조사기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유족의 신청에 의해 보훈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군의 보안 강조 및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접근이 제한되어 유족의 입증책임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자녀를 잃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이 망인의 명예와 보훈을 위한 등록심사 과정에서 또 한 번 고통을 맞게 된다. 국가가 해당 절차와 관련된 도움을 주지 않는 것과, 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바로 넘겨주면 행정적 편리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유족의 불만 소리가 높다. 유족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전공사상심사와 보훈심사를 일정부분 통합하거나 심사과정을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과 사망사고 처리 간 장병 권리보장 실태

가. 군 사고발생 시 조치과정

군에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관련 법과 규정은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의 직

315) 국민권익위원회, “군 자살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과제 연구용역보고서, 2008, p. 17.

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국방부훈령),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국방 안전 훈령」(국방부훈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각 군의 군사경찰 업무규정 등이 있다. 군사경찰은 이러한 각종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바에 의거 사고를 처리하고 조치하고 있다.

사고는 정상을 이탈함으로써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끄는 사안으로 그 결과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와 「군형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군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부대관리훈령」 제185조). 군은 사고를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하는데, ‘안전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군기사고’는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특히 군은 군기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종류에는 군무이탈, 총기 및 폭발물 강력사고, 군용물 사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 보안사고, 교통사고, 공금횡령, 강도, 절도, 강간, 대민 관련 사고, 군 위계질서 문란 등 각종 범죄사건 및 사고가 있다.

군은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 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 사고’라고 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부대관리훈령」 제259조). 이 중 사망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는 부대장 책임하에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VTR 및 사진촬영, 증인녹음 등을 실시하고, 반드시 유가족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 처리 후에도 유가족이 부동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군의 사망사고 처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³¹⁶⁾

<p>제264조(처리원칙)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부대의 완벽한 현장보존, 객관성·전문성 있는 상급부대의 현장감식,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활동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 의혹 불식 2. 중요 강력사건 발생 시 군사경찰 수사 우선 실시 3. 수사기관의 과학적·전문적 수사기법 적용 4.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및 유가족의 불신 해소대책 강구(관련 법규 허용 범위내 유가족 요구 사항 최대 수용) 5. 사건의 왜곡·편파보도 방지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차단 6.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 편성 운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부대는 즉각적으로 부상자를 구호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가능한 현장사진을 촬영하며, 지체없이 상급부대와 관할 군사경찰대에 통보하여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을 보존한다. 각 군은 사고처리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대책반을 편성·운용한다. 사고처리 수사관은 사건현장 도착 후 사고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물 훼손을 방지하고 민원제기의 핵심인 사고 현장 훼손을 사전 차단하여 유가족 도착 시까지 원형변경을 금지한다. 그리고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을 출석시키고 유가족 요구 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를 조치한다. 만약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는 관할 군검사와 토의후 결정하며,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유가족에게 설명한다.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사고 발생 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적부대의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사고통계와 관련한 군사경찰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수사 및 정보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첩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및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을 통합함으로써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 검찰(법무), 감사(감찰), 인사 기능별 주무부서(기관)으로 관련 기관은 수집된 첩보를 교환·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316)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2. 5. 20.] [국방부훈령 제2655호, 2022. 5. 20., 일부개정]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및 각 군은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 등의 협의의 위하여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위원회를 운영한다.

각군본부는 군 관련 범죄의 수사를 위해 군사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각군 중 2개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교통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국방부훈령 제2503호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수사 시 인권보호와 법령 준수, 합리적인 수사, 임의·불구속 수사 원칙, 비밀의 준수, 수사의 제척·기피 및 회피, 수사의 조직적 운영, 수사지휘, 사건의 관리와 수사 보고, 범죄의 내사, 피해신고, 변사자의 검시, 범죄인지, 고소·고발·자수 사건, 임의 수사, 피의자 신문, 압수와 수색, 검증,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긴급통신수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조사를 위한 조직과 체계가 구축되어있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군의 사법기관으로 국방부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하고(헌법 제110조), 국방부 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 인권보호감독관실, 범죄정보실을 두고 있다. 고등검찰부는 상소사건과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보통검찰부는 공소유지 및 항소제기와 군사법경찰의 수사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인권보호감독관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담당한다.

군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1심 군사법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 하지 않고 일반법원의 재판관할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위의 범죄들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아니라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였다.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군인의 사망이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경찰 및 군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³¹⁷⁾. 이는 군 자체의 개혁 노력이 아니라 2021년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수사과정 중 은폐와 왜곡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외부에 의해 개혁조치된 것이다.

나. 군 조사기관의 한계 노정과 군의 개선 노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조직이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제정되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동년 9월 14일에 출범하여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진상조사를 통해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 회복 등의 요청을 해왔다.

군사망사고 진상조사만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진상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 위원회는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군 조사기관의 부실함을 확연히 알 수 있는 통계자료와 구체적 사건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상조사를 통해 망인의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을 요구한 현황과 그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표 4-12]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누계³¹⁸⁾

(단위 : 건)

사망구분	전공사상 심사결과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사항	사망구분 (재)심사 요청 처리결과
계	1,083		
전사	17	.	.
순직	266	2건 전사로 재심사 요청	1건 전사 결정, 1건 심사중

317) 이상경,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p.16.

31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2022), p.61.

일반사망	612	3건 전사, 449건 순직으로 재심사 요청	1건 전사 결정, 298건 순직 결정, 14건 보류, 16건 기각, 123건 심사중
기록없음	188	4건 전사, 4건 순직으로 심사 요청	4건 전사 결정, 1건 순직 결정, 3건 심사중

조사활동보고서에 의하면 “군 내부에서 자해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내성적 성격, 이성문제, 가정문제, 복무염증, 염세비관 등으로 사망원인을 국한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축소·은폐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부실한 군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무리한 추정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³¹⁹⁾고 분석·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자해사망 사건 원인 비교³²⁰⁾

사건명	관련기관 수사결과	위원회 조사결과
진정 제196호 정소위 사건	통제된 군 생활 등 개인적인 고민	부대적응 어려움에 따른 주요우울장애 악화
진정 제256호 김상병 사건	정신병 증세 비관	보안부대의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적 조사, 프락치 활동 강요
진정 제427호 정일병 사건	애인 변심 비관 내용의 유서	열악한 복무환경,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565호 김이병 사건	가정 빈곤, 세상 비관	열악한 복무환경,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진정 제590호 박이병 사건	부모 이혼, 경제적 빈곤, 지병(허리디스크) 등 염세 비관	간부의 과도한 질책과 폭언,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605호 임상경 사건	질병 비관	질병으로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환경에서 반복된 폭언, 인격 모독, 암기 강요 등
진정 제607호 조이병 사건	군 생활 부적응, 염세 비관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와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613호 김병장 사건	전역 후 취업문제, 업무미숙으로 인한 심한 욕설과 질책	상관에게 당한 잦은 욕설, 질책, 비인간적 대우

31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2022), p.103.

320)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7차 조사활동보고서」(2022), pp.104~106.

진정 제688호 최이병 사건	애인 변심, 전방부대 생활 부적응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및 신병 관리소홀로 인해 발현된 우울 증상
진정 제691호 박이병 사건	여자관계 고민, 가정 빈곤, 원인불상	소속대 내의 일상적 구타·가혹행위 및 사적 심부름, 전입 신병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696호 김이병 사건	미국 등 장기간 외국 생활에 따른 부적응	선임병들의 모욕적인 욕설과 구타·가혹행위, 고된 포병 훈련, 신병 관리 소홀
진정 제710호 양하사 사건	장기복무 후회, 가정 빈곤	병사들의 하극상, 구타·가혹행위, 지휘관의 무관심
진정 제730호 최소위 사건	막중한 책임감, 업무량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강박감에 대한 스트레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과도하고 반복적인 공개 질책과 직무상 스트레스
진정 제757호 전이병 사건	군 복무 염증	선임병, 지휘관의 구타·가혹행위,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768호 이이병 사건	지병인 정신분열증 비관	암기 강요, 구타·가혹행위,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800호 권상병 사건	피부병 비관	질병에 대한 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악화
진정 제852호 정상병 사건	복무 부적응, 부모 및 이복형제들과의 갈등	입소 당시부터 존재하던 대인기피 및 적응 장애가 군 생활의 영향으로 악화
진정 제898호 김상병 사건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 비관	군 병원의 치료소홀, 부대의 관리소홀
진정 제925호 변일병 사건	염세 비관 내용의 유서	후방부대의 과중한 업무,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와 폭언, 부대 관리소홀
진정 제934호 윤일병 사건	군 생활 염증,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염세 비관	업무 스트레스, 억압적인 내무생활, 부적절한 인사조치
진정 제947호 서이병 사건	향수심, 군 복무 부적응	암기 강요, 욕설, 질책
진정 제978호 조일병 사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소홀	선임병들의 욕설,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발현된 적응장애, 우울증,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988호 서일병 사건	허약체질로 유격 훈련에 대한 두려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1070호 유소령 사건	세상사 비관	6·25전쟁 참전 후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정 제1073호 안이병 사건	복무 부적응, 100km 행군에 대한 두려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1098호 박일병 사건	공사계 업무에 대한 부담	업무과중, 직무상 스트레스, 병력 관리소홀
진정 제1104호 김이병 사건	내성적인 성격, 군 복무 염증	열악한 부대 생활, 일상적인 구타·가혹행위, 병력 및 탄약 관리소홀
진정 제1106호 소이병 사건	자살 미수로 보직을 받지 못한 심적 부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가혹행위, 신병 관리소홀
진정 제1118호 임하사 사건	내성적인 성격, 인생의 허무함, 전역 지체에 대한 비판	안질환, 자해 미수 등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을보인 병력에 대한 관리소홀
진정 제1138호 방이병 사건	헌병 특기에 대한 실망	기피 대상 주특기 일방적 부여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

이러한 조사활동 결과는 군 수사·조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단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상당수의 조사결과는 과거의 군 수사기관이 지휘관과 부대의 편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엄중한 군인의 사망을 복무염증 등 개인의 문제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망으로 몰아간 부대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개인의 복무 부적응과 염세주의, 가정문제 등으로 몰아갔다. 물론 군의 자정 노력으로 인해 오늘날의 군 수사기관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해가 갈수록 의문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군의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여중사 사망사고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 군의 수사·조사기관은 개혁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군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조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 수사·조사기관이 지휘관의 영향 아래 놓여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조사에 제한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 수사·조사기관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군사경찰이 수사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전·평시 작전수행을 위한 군 작전 운용의 한 부분이므로 완전한 독립체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간의 이유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고로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자 군 사법기관이 지휘관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군에서는 군사법개혁 중 군사경찰 및 검찰 등 수사조직을 지휘관(사·군단장)으로부터 독립시켜 각군본부 참모총장 직속으로 통합하기 위해 군별 수사단과 검찰단을 창설했다. 이를 창설 순으로 살펴보면 공군수사단이 2021년 10월 1일, 육군·해군·해병대 수사단이 2022년 1월 1일 창설되었으며, 검찰조직 역시 해군 검찰단이 2021년 2월 1일 창설되었고, 공군 검찰단이 2022년 1월 1일, 육군 검찰단이 2022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부대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별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 및 통합하게 됨에 따라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는 작전 및 예방·안전 활동 위주 임무를 수행하며 각 군의 수사업무는 각 군 수사단이 전담하게 되었다. 이는 제대별 지휘관들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확인된다. 군은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 군 의무복무자 전공사상 및 국가유공자 심사과정 분석

1) 전공사상자 심사

각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상사고 관련 군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면 심사를 개시한다. 이때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한다.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국방부로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망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서 사망사건을 재조사하여 전사망민원조사단장이 유족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재심사 절차를 안내한다. 전공

사상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7일 이내에 유족에게 통보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현충원 안장 및 보훈심사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공지한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통전공사상심사 시 유가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4-14]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³²¹⁾

<p>제32조(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①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인사법」 제54조의 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p> <p>1. ‘갑’반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가. 대상: 장군, 국가 또는 육군 차원의 단체 재해로 사망구분 판정이 곤란한 자 나. 위원: 인사행정처장, 인사참모부 차장·군사경찰실장·법무실장·의무실장·정신과 군의관 중 2명, 외부전문위원 5명 이상 다. 위원장: 인사참모부장 라. 간사: 보훈지원과장</p> <p>2. ‘을’반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가. 대상: 갑반 심사대상을 제외한 인원 나. 위원: 인사사령부 보훈지원과장, 정보작전참모부 교육훈련 관련 과장·의무실 과장·군사경찰실 군사경찰장교(중령급)·법무실 법무장교(중령급)·정신과 군의관 중 2명, 외부전문위원 5명 이상 다. 위원장: 인사행정처장 라. 간사: 보훈계획장교, 전사망보훈부서관</p> <p>② 개최시기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전공사망자(군인, 비군인), 전사 확인자 등 심사대상 건수를 확인하여 심사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 및 개최 상신하고 위원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한다. ④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은 비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목의 절차에 따라 논의 후 결정한다. 가. 심사대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8의 전사·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육규 15513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논의한다.</p>

321) 전공사망자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 [육군규정 155, 2022. 3. 30., 일부개정]

- 나.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7과 별표8의 전사·순직자 분류 기준표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항목으로 결정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망으로 결정한다.
- 다. 사안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 전 또는 심사 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5조제2항 각 호 중 인용, 보류, 기각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라. 사망원인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선행·후행심사로 사망구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행심사는 명확한 사고조사 및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화하여 실시하되,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8의 전사·순직자 분류기준표에 명시된 전사, 순직 I 형, 작전 및 교육훈련 중 사망자, 주요 전투장비 조작 중 폭발사고 등 사망원인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성급 부대의 지휘관 건의에 의해 인사사령관이 선행심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마. 선행심사의 경우 조사 및 수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관계기관(군사경찰대대, 법무실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유가족에게 통지한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사상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그 사상 경위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는 전사·순직(I II III형)·일반사망 등 망인의 지위를 결정하고 진급과 국립묘지 안장, 「군인 재해보상법」의 보상,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공사상심사의 불처분성³²²⁾, 유족 참여권의

322) 대법원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훈령은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 각군 참모총장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사망구분을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일정한 경우 국가보훈처, 유족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2015.6.22. 개정된 군인사법에서는 사망자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분류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54조의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제54조의3)이 신설되었다. ②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지 여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

미보장, 최대 80명의 위원 중 9인이 교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함에 따른 순직 결정 기준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된다.³²³⁾

유족의 입장에서는 전공사상심사에 입회하여 사망한 자신의 가족이 어떠한 사망 구분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자료는 공정한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 지, 혹여 억울한 면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최대한 망인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기를 바란다. 유족 참여를 허용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기를 원치 않을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반면, 유족이 보통전공사상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일말의 억울함이 없도록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있다. 유족의 진술을 허용하더라도 그 진술 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사망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 시 유족의 참여를 막을 필요가 없다.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가족을 잃은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전공사상심사 시 허용하고 있는 당사자나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출석시켜 의견 개진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15] 전공사상구분 심사 결정³²⁴⁾

<p>제5조 (심사 결정)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상구분을 결정한다. ② ~ ④호 생략</p> <p>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한다.</p> <p>⑥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9.21. 선고2017두42514 판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23)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자료

324)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시행 2020. 12. 15.] [국방부훈령 제2489호, 2020. 12. 15., 일부개정]

1. 당사자

2.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⑦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심사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기존의 원호 관계 법률이 원호처 창설 이후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 제정되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고,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1984년 8월 2일 최초 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칭과 범위를 새로이 정립하고, 종래의 물질적인 원호의 차원에서 진일보하여 국가가 응분의 정신적인 예우와 물질적인 보상을 아울러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순국선열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³²⁵⁾.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이다. 국가유공자는 그 가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단,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제2호).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만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25)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2호, 1984. 8. 2.,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22.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³²⁶)에는 보훈심사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4항).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4-16]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절차³²⁷)

주요 단계	행위주체	대상기관
①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② 요건확인 의뢰	보훈(지)청	군본부, 연금공단 등
↓		
③ 요건확인 통보	군본부, 연금공단 등	국가보훈처
↓		
④ 보훈심사 의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⑤ 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	해당 보훈(지)청
↓		
⑥ 행정 처 분	보훈(지)청	신청인(대상자)

326) 1. 상훈법에 따라 무공훈장, 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 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군인이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전사자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순직 I 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 등

327)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https://simsa.mpva.go.kr/sub01/sub01_3.do (검색일: 2022.11.19.)

일반적으로 군인이 사망시 유가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망원인이 명확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가보훈처의 소극적 인정 경향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고통은 배가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기간의 소요 때문에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족들의 공통적 불만은 왜 국가가 이것을 알아서 해주지 않는가, 군에 데려갈 때는 강제하더니 죽고 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가족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요구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가 군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료에 접근하거나 요청하기가 대단히 까다롭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통보하는 것 외에 별도의 심사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유족은 전공사상심사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군과 국가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 요소가 되고 있다.

3. 개선방향

가.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운영

군 내부조사는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인권, 기본권 및 명예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 1970~90년대에 비해 2000년도 들어 군 의문사 진상조사 요구가 현격히 줄어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군 조사의 공정성에 많은 부문 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군 내부의 자체 조사는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 보인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의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군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

담하고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유족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군은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한 이러한 불신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을 독립시켜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새롭게 재편하였다. 군사경찰은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의 수사 기능을 작전 및 예방·안전활동 기능과 분리하여 수사는 새롭게 창설된 각 군수사단에 귀속시키고 예방·안전활동은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휘관들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군검찰도 마찬가지로 각 군검찰단을 창설하여 관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였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 내부의 자정노력의 효과는 앞으로 수사 결과로 입증될 것이다.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각 군수사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제대별 지휘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치는 필요한 개혁조치로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혁조치를 하면 향후 발생하는 사건·사고 군 수사결과에 대해 유가족은 만족하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국민들은 군사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의심 없이 완전한 신뢰를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이다.

군대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전우애와 애대심을 통해 단결력을 제고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훈련받은 조직이다. 특히 부대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의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그간 군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은폐되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인들 스스로 외부에 군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무리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더라도 동료들이 부대와 전우를 위해 군 내부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군사경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수사 베테랑들이 증언하는 바이다³²⁸⁾. 이러한 군의 습성은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도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들이 미래의 유가족이 되어 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심정적 부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군 내부의 노력은 필요하고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완전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

328) 문병덕 증언,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2차 토의(국가인권위원회, 2022.11.14.)

는 구조적·문화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에 보낸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온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의 애통함은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라리 군에 보내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노와 회한 가운데 군을 원망하며 그 죽음의 원인을 부대에서 찾고자 한다.

군 내부의 수사결과 망인의 죽음이 부대 요인이 아니라 개인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다. 이들에게 군의 수사가 완전했으니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일말의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망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는 군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다시 한번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잃고 비통해하는 부모에게 마치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독립된 조사기관이 될 것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축소된 형태의 독립된 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군을 감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억울한 희생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거나 국회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독립된 조사기관을 뒤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2022년 7월 1일부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일명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2021년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2021년 12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식 출범에 이르렀다.

본 조직의 특징은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 조사 그리고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군인권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유부즈만에 비하여 군내 인권침해 예방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²⁹⁾ 군인권보호관은 체포·구인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지만 조사 거부, 진술서 제출 거부, 출석요구 거부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거부 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표 4-17] 강화된 군인권보호관 권한과 역할

구분	관련 근거	세부내용
① 군인 사망사건 입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는 군인 등이 사망시 인권위에 통보 ○ 군인권 신속대응조사팀 구성 즉시 출동 ○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 유가족 지원 강화
② 진정사건 조사	법 제50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사건 발생 1년 경과 시 각하→1년 경과해도 조사 가능(단, 전역한 지 1년 경과 후 진정한 사건은 각하)
③ 군부대 방문조사권 신설	법 제50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권위원회 의결로 군부대 방문조사 가능 ○ 군인권보호관 직접 긴급방문 시 사전통지 생략 ○ 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결과 공포
④ 군인권보호위원회 신설	법 제5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관련 전담 심의 ○ 군인권 관련 수시 의결체제 구축으로 권리구제 신속성 도모
⑤ 군인권교육 특화	직제령 제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협력 시행 ○ 군인권교육 체계화, 프로그램과 자료 등의 개발 보급 및 관리

나. 의무복무자 전공사상 및 국가유공자 심사과정 일부 통합

우리나라는 사망군인의 직무수행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방부에서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심사를 통해 국가유

329) 박병욱 등, 「군 사망사고 관련 조사, 사법제도 등 개선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1, p.153

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독일, 대만 등은 군인의 직무수행성 심사를 단일체제로 운영하는데 이는 각국의 전쟁이나 독립 등의 역사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직후 참전제대군인 및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보훈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국가로 보훈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보훈제도의 특징은 본인 중심의 보상금과 연금 및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보훈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여 의회에서 조정, 결정하며 신체상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활교육을 통해 사회 재적응을 지원하고, 제대군인부 중심의 업무 일원화를 통해 현역은 국방부, 사후관리는 제대군인부라는 역할분담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대군인에 대한 최우선의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 보훈선진국이라고 하겠다³³⁰⁾.

우리나라의 사망군인 직무수행성 심사제도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보훈 제도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보훈제도는 1950년 「군사원호법」이 제정되어 사회부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전사한 자 또는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군사원호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61년 「군사원호청설치법」이 제정·공포되며 동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다가 1962년 원호처로 개명되었고,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1961.11.), 「군사원호대상자정책대부법」(1961.7.), 「원호특별회계법」(1961.11.), 「군인보험법」(1962.4.),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4.), 「원호재산특별처리법」(1963.7.),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7.),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63.8.), 「애국지사사업기금법」(1967.3.)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1980년대에는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4.), 「원호기금법」(1981.4.)이 제정되었으며, 1984년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의 2개의 기본적인 법률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책대부법」 등 5개의 지원 관련 법률이 통합되어 1984년 8월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동법은 1997년 일부개정되어 「국가보훈 기본법」이 제정되고 2011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군인의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체계가 형성되었다³³¹⁾.

330) 박혜란, “미국의 보훈정책,” 2010년 한국보훈논총(한국보훈학회, 2010), p.81.

이를 분석해보면 최초의 군사원호청은 군 복무 중 전사자 및 순직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원호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가 이후 전 공무원 및 국민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와 보상을 전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는 군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업무 대상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한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록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대상의 90% 이상이 군인이지만 군인만을 고려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하겠다.

군인들과 유족들이 원하는 바는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심사를 통합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문제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둔 유족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명예를 고양하고 순직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기 희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유가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등록심사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다. 유족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자동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는 불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망 군인의 직무수행성 판단을 위한 배상·보상·보훈체계의 역사성을 볼 때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심사를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관련 분야의 개혁을 통해 두 과정을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먼저 간부와 의무복무자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군 간부는 국방부 외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고, 의무복무자는 순직 시 전공사상심사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논스톱으로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고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의무복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법 개정 소요는 다음과 같다.

331) 김성배, 앞의 책, p.25.

[표 4-18] 의무복무 순직자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자동화(안)

기 준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제2호</u></p> <p>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제2호</u></p> <p>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兵)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p>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전공사상심사 및 국가유공자 심사과정 일부 통합은 장기복무 군인이나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과 차별되는 의무복무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될 것이다. 죽음의 가치와 유족의 슬픔의 무게가 다르지는 않겠지만 의무복무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였는데 일정의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간 협의를 통해 일부 법·제도 개선만 하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군의 전공사상심사 결과와 사망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에서 공유함으로써 유족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유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론

국가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적 국가이익이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일정 기간 군에 입대하여 의무적으로 복무한다. 폭력을 관리하는 군대는 위협의 영역으로 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요구받는다. 군대의 위협은 육체와 정신의 극한적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무기와 장비를 다루며 각종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을 행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특히 의무복무 병사는 24시간 통제된 병영에서 엄한 규율과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러한 군의 복무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사고로 이어져 병영에서는 사망 및 부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군기(軍紀)와 안전(安全)의 관점에서 임무(任務) 위주로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 이 가운데 장병의 인권은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바람은 한결같이 이들이 무사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사망·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군 간부들도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병 의식을 개선하고 군 문화와 시스템을 고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군의 선진화와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여러 기관·기구의 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장병 권익보호는 장병과 유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이 희생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해주어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요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

순직은 단어 그 자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했음을 공인하는 국가의 보증적 언어이다. 고결한 순직의 언어에 등급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군에서 순직으로 분류한 이를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순직이나 재해사망이나를 재정의할 필요도 없다. 유공의 정도를 따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단하면 그뿐이다. 국방부의 순직등급 차별항목을 없애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협의하여 국방부에서 순직자

로 판단한 인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심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수급권자에 순직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만일의 경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마땅하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을 의무복무 병사들에게도 확대하고, 의무복무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한 순직으로 처리하여 예우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일반사망자 분류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대요인이 원인이 되어 군무를 이탈하여 자해사망한 인원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이들의 헌신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순직시 전공사상심사와 보훈심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병 권익보호를 위해 군 내부적으로도 노력해야 하고 외부에서도 이들을 감시하고 필요시 개입하여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독립된 조사기관의 운영도 필요하다. 2022년 7월부로 새롭게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때 군 장병의 권익은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군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5장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항목 및 구성

가. 설문조사 항목

설문의 목적은 설문 대상자의 현 보훈보상 체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입원 병사 및 간부의 설문조사 구성은 기본사항, 질병(부상)·의료정보, 인지도, 만족도, 개선분야 등 5개 대분류이고, 다시 인지도는 2개 소분류로, 만족도는 3개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첫째, 설문 대상자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 보훈보상 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해 및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거나 원인 불상 자살에 대한 장병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둘째, 만족도는 부상 및 질병 등 사고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입원, 공상 신청 등을 할 때 군의 정보 제공현황을 확인한다. 또한 만족도 확인을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문자의 의견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개선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현 보훈보상 체계 중 가정 먼저 개선할 분야와 분야별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 구성요소는 [표 5-1]과 같다.

[표 5-1] 설문조사 구성요소

분 야	내 용
질병(부상)·의료정보	• 건강상태, 병명, 질병(부상) 장소 등
보훈보상 체계 인지도	• 보훈보상 제도 교육·숙지여부, 보훈보상체계 인식
보훈보상 체계 만족도	• 부상·질병 사고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제공,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 확인
개선할 분야	• 보훈보상 체계 개선 우선순위 등

1) 질병(부상)·의료정보

설문 대상자의 병명, 부상을 당한 장소, 당시 하고 있었던 일 등을 확인하고, 또한 의무대나 군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즉 입대 전에 가진 군병원에 대한 이미지와 입대 후 군병원을 이용한 후 서비스에 대해 설문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설문조사하였다.

2) 보훈보상 체계 인지도

설문 대상자의 현 보훈보상 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훈보상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상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 절차, 일반장애보상금 신청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의 의료권 보장에 대해서도 설문에 포함하였다. 보훈보상 체계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병사나 간부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히 기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에 관련내용(법률, 규정, 병 복지 길라잡이)을 설명하여 설문에 응하는 입원 장병 및 보호자, 의료진에게 도움을 주었다.

3) 보훈보상 체계 만족도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상·질병 사고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제공,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사고발생 후 군 조치

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절차와 소속 부대의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입원 장병은 공상 여부에 관심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제공을 확인하고, 공상 신청 시 부대나 병원에서의 서류 준비나 안내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였다. 보상수준에 대해서는 장병이 당장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4) 개선할 분야

현 보훈보상 체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액, 보상절차, 군의 정보제공 등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분야별로 개선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예를 들면, 보상수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나. 신분별 설문조사 구성

설문조사 구성은 신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신분별로 문항을 달리하였다. 다시 말하면 입원 병사의 경우는 간부의 제재나 간섭으로 인해 군 병원을 제때 입원을 못했거나, 사고발생 후 입원 간 애로사항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입원 간부는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부대의 교육훈련 일정 때문인지, 혹은 상급자와의 소통문제인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아울러 현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을 소속부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양성 교육기관에서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료진 설문조사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병과 간부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료진에게는 현 보훈보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이외에도 입원환자·보호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장병 보호자에 대한 설문은 입원 자녀(가족)와 관련하여 보호자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특히 현 보훈보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공상 처리 등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하였다. [표 5-2]는 대상별 설문조사 구성

을 나타낸 것이다.

[표 5-2] 신분별 설문조사 구성

구 분	문항내용
입원 병사·입원 간부	기본사항, 질병·의료정보, 인지도, 군 조치의 적절성, 숙지여부, 만족도, 군의 정보제공, 개선분야
군 병원 의료진	기본사항, 인지도, 만족도, 환자 및 보호자 관심사항, 개선분야
장병 보호자	기본사항, 질병·의료정보, 인지도, 개선분야

2.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조사는 군병원³³²⁾ 입원 장병 및 보호자, 군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최초 설문 대상은 입원 병사 200명, 입원 간부 20명, 의료진 20명, 보호자 1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입원 병사의 수가 부족하여 198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48명 중 입원 병사가 198명으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입원 간부 및 의료진, 보호자 등이 20%를 차지한다. [표 5-3]은 설문 대상자별 신분별 현황을 나타낸다.

[표 5-3] 설문조사 대상자 신분별 현황

합계	입원 병사		입원 간부		의료진		보호자	
	명	%	명	%	명	%	명	%
248명	198	80	20	8	20	8	10	4

세부 신분별 현황을 보면 병사는 이병 13명, 일병 79명, 상병 80명, 병장 26명이다. 간부는 장교 6명, 부사관 14명이고, 의료진 중 군의관은 4명, 간호장교 9명, 의정장교는 7명이 설문을 하였다. 또한, 보호자는 10명 중 30대 1명, 40대 3명, 50대 6명이다.

332) 군병원이란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군포항병원, 해양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을 말한다(국방부, 「국방 환자관리 훈령」(2022.3.3.), p. 1.

[표 5-4] 설문조사 대상자 신분별 세부 현황

(단위: 명)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보호자
신분별 인원	이병: 13 일병: 79 상병: 80 병장: 26	장교: 6 부사관: 14	군 의: 4 간 호: 9 의 정: 7	30대: 1 40대: 3 50대: 6
합계	198	20	20	10

입원 장병의 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180명, 해군 12명, 공군 12명, 해병대 14명이다. 주로 해군, 공군, 해병대 장병은 수도병원과 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다.

[표 5-5] 군별 입원 장병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사	198	161	12	11	14
간부	20	19	0	1	0
합계	218	180	12	12	14

군병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방병원인 양주병원 41명, 수도병원 164명, 후방병원인 대전병원³³³⁾은 4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양주병원은 0군단 지원병원으로 0군단 지역 내 환자들이 입원하고, 대전병원은 후방병원으로 대전지역 각 부대 장병과 전방병원에서 후송된 환자가 입원한다. 수도병원³³⁴⁾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급 의료기관이다.

333) 양주병원·대전병원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입원 및 요양, 수술,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의 기능을 수행하고, 수도병원은 응급진료 및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입원 및 수술,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중증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특화된 진료지원을 한다(국방부, 「국방환자관리 훈령」, 2022.3.3.), p. 2.

334) 수도병원은 군의관 146명, 간호장교 149명, 간호군무원 60명 등의 의료진이 편성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2020년도 군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12.18.), pp. 248-250.

[표 5-6] 군 병원 유형별 대상자 현황

(단위: 명)

합계	전방병원(양주)	수도병원	후방병원(대전)
248	41	16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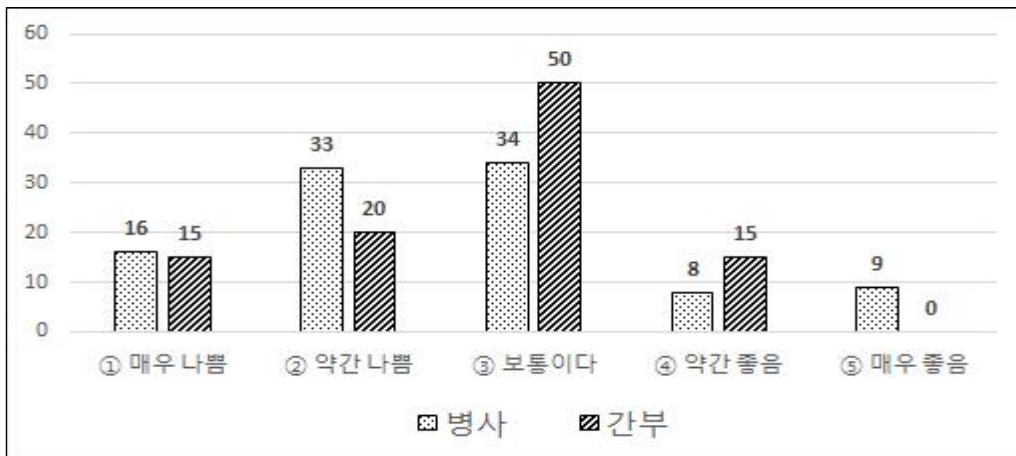
제2절 군병원 입원 장병 및 보호자·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1. 입원 장병의 군 병원에 대한 인식

입대 전 장병의 군 병원에 대한 인식은 병사의 경우 매우 나쁨은 16%, 약간 나쁨은 33%로 설문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간부도 매우 나쁨 15%, 약간 나쁨 20%로 35%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입대 전 군 병원에 대한 마스크의 부정적 보도에 자주 노출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7] 입대 전 군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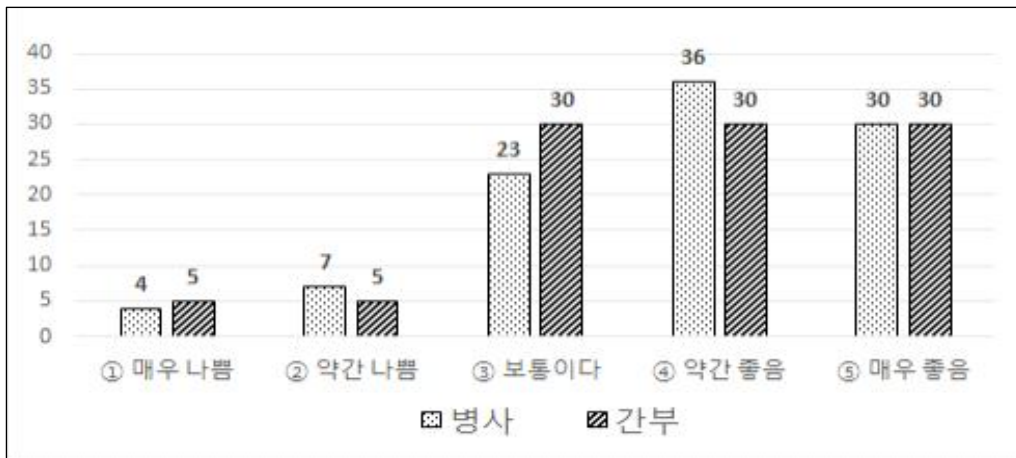
하지만 입대 후에 군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병사의 경우 매우 나쁨과 약간 나쁨이 11%이고, 간부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이유는 국방부의 지대한 관심과 취약부분을 지속 보완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병사들이 군 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막연하게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다. 이러한 일반병사들의 부정적 선입견은 실제 의료 제공자인 군의관과 이용자 사이의 신뢰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

쳐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를 통해 발생한 2차적인 문제들이 군 의료 전반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병사들 대상으로 군 의료관리체계 및 의료 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³³⁵⁾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마스크 등을 통한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홍보가 필요하다.

[표 5-8] 입대 후 군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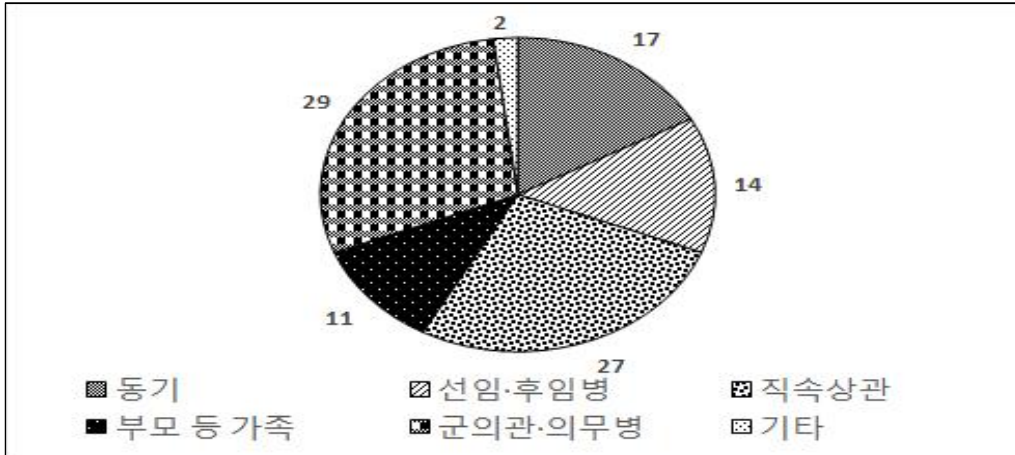
병사가 아플 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인원은 군의관·의무병, 직속상관, 동기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군의관·의무병, 직속상관이 절반을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기와 선·후임병, 부모 등도 4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사와 간부들의 의사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병사와 간부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아플 때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확률(미충족 의료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³³⁶⁾ 사실 병사의 입장에서 몸이 아파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군에 대한 이미지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작은 병을 크게 키우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335)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p.200.

336) 2020년 인권위에서 군 건강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보니 ‘아플 때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미충족 의료율)’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에 24.8%에 달했다. 우리나라 민간의 미충족 의료율이 2019년에 6.4% 정도이다(SBS, “군대 속 인권 어디까지 왔을까?” (2022.9.4)).

[표 5-9]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은 인원(입원 병사), 복수 선택

(단위: %)



2.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보훈보상제도 인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먼저, 보훈보상제도 교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 여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의 17조 의료권의 보장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상 신청 절차, 재해보상법 상의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신청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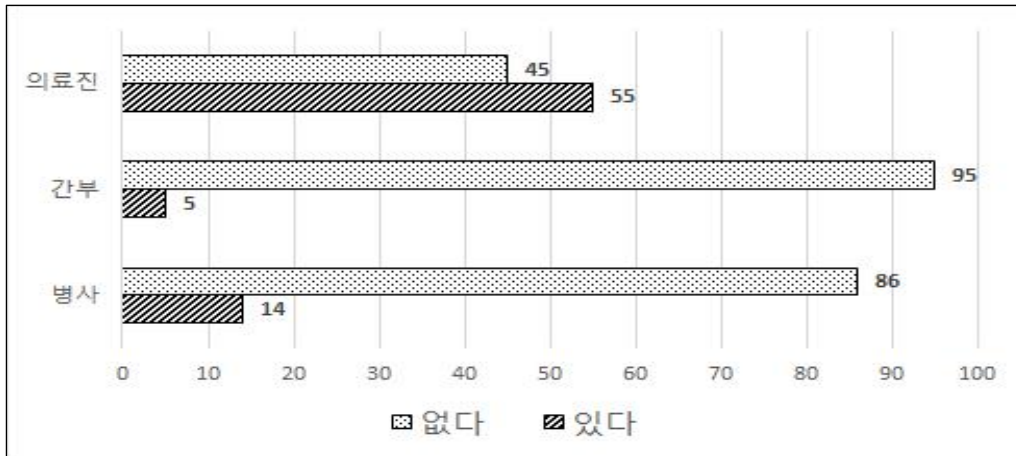
가. 보훈보상제도 교육 여부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다. 특히 국방부에서 발간한 「병 복지 길라잡이」에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 여부 조사결과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병사의 경우 14%이고,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86%였다. 또한 간부의 경우 20명 중 단 1명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55%가 교육을 받아 입원 장병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은 편이다. 보훈보상체계에 대해 거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자는 배포하였으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0]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 여부

(단위: %)



헌법상 보장되는 건강권과 관련하여 장병 개개인의 적절한 의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사들이 적시에 보건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하게 되었다.³³⁷⁾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군인복무기본법의 제17조 의료권 보장³³⁸⁾은 장병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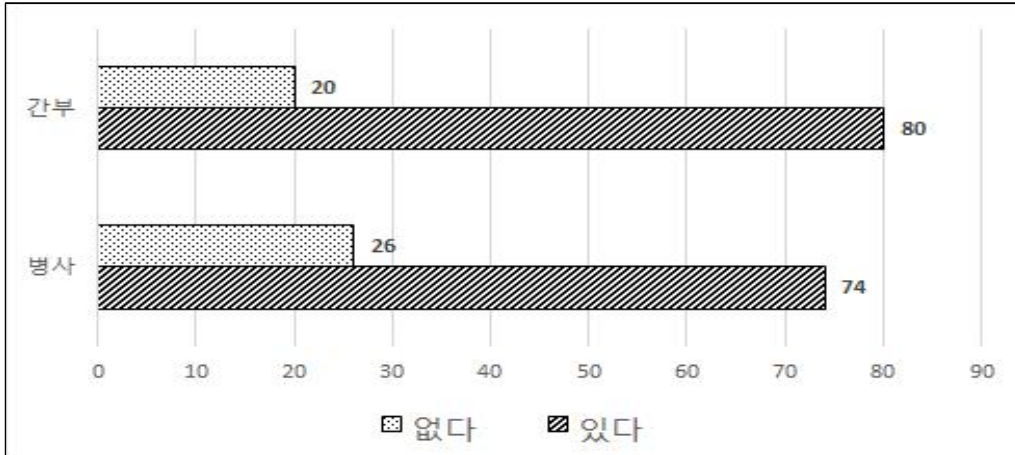
군인복무기본법은 병사의 경우 74%, 간부의 경우 80%가 교육을 받았다. 왜냐하면 군인복무기본법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병이 교육을 받은 걸로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37) 육군교육사령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해설서,” 「국가와 안보(II)」, p.54.

338) 제17조 <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표 5-11]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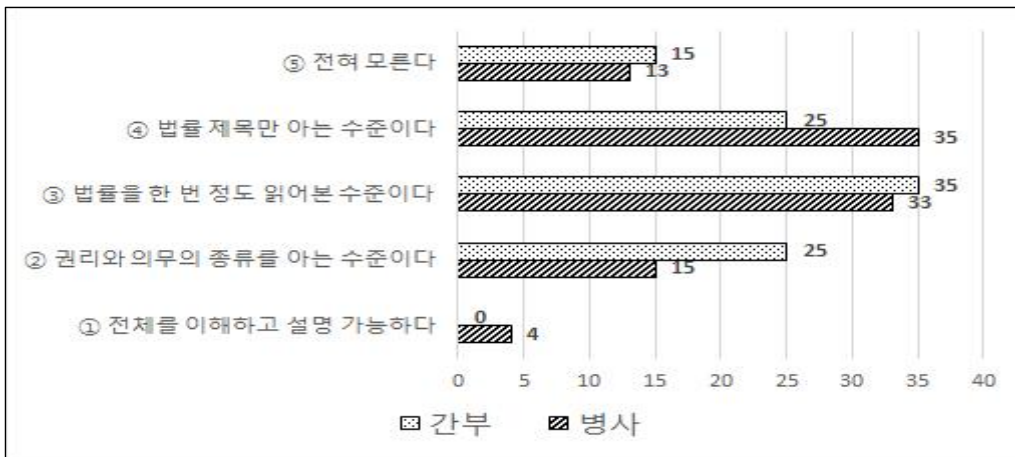
(단위: %)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인복무기본법 숙지정도를 확인하니 병사는 법률 제목만 아는 수준이거나 법률을 한번 정도 읽어본 수준이 68%를 차지한다. 또한 간부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아는 수준이 25%, 법률을 한 번 정도 읽어본 수준이 35%이다. 군인복무기본법은 소속부대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군인복무기본법 숙지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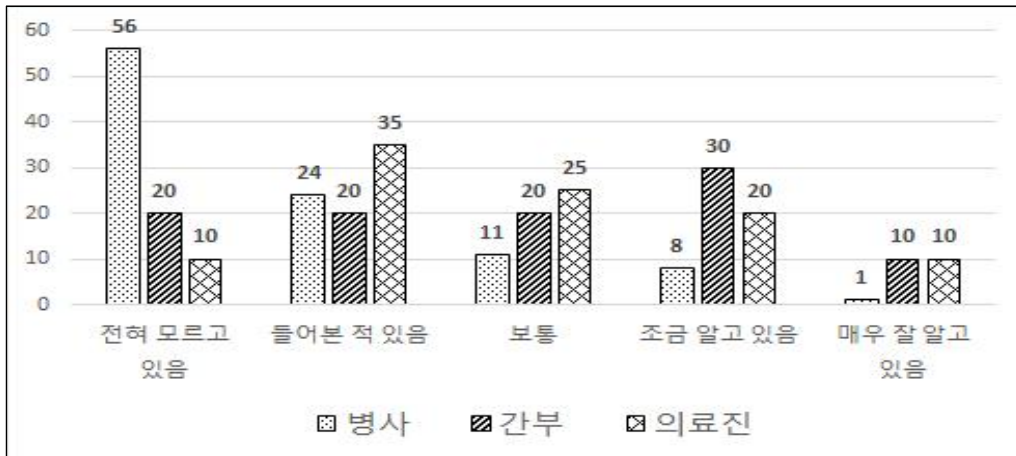


나. 보훈보상체계 인지 정도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권리보장에 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공상 신청절차,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 신청절차에 대해 인지 정도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 후에 질병이나 부상 관련하여 공상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공상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입원병사의 56%, 간부는 20%, 의료진은 1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장병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 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공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간부나 의료진을 제외하고 병사는 대부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표 5-13] 공상 신청절차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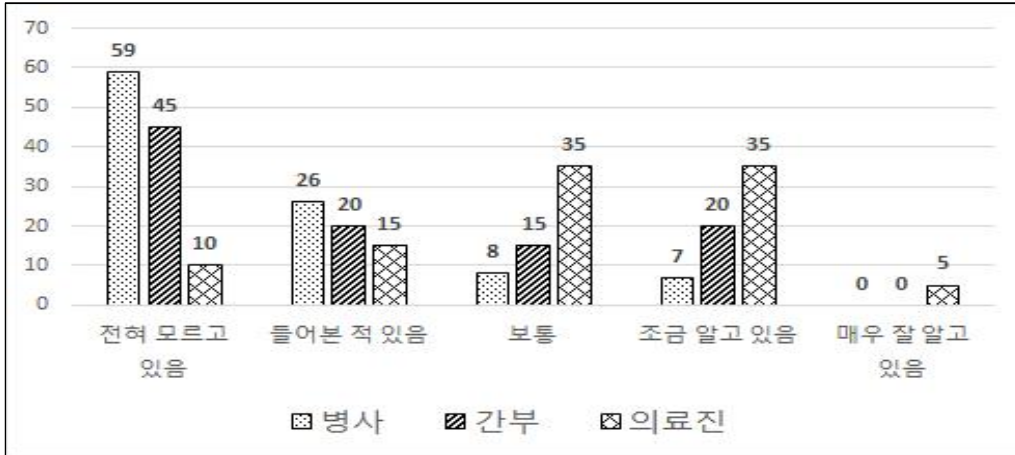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신청절차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병사는 59%, 간부는 42%, 의료진은 10%가 모르는 상태로 병사가 간부나 의료진보다 모르는 인원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각 군과 협업해 ‘병(兵)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³³⁹⁾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제대로 알고 있는 장병이 적음을 알 수 있다.

339) 국방일보, “현역 군인 휴대전화로 보훈제도 안내 받는다,” 2022.4.25.

[표 5-14]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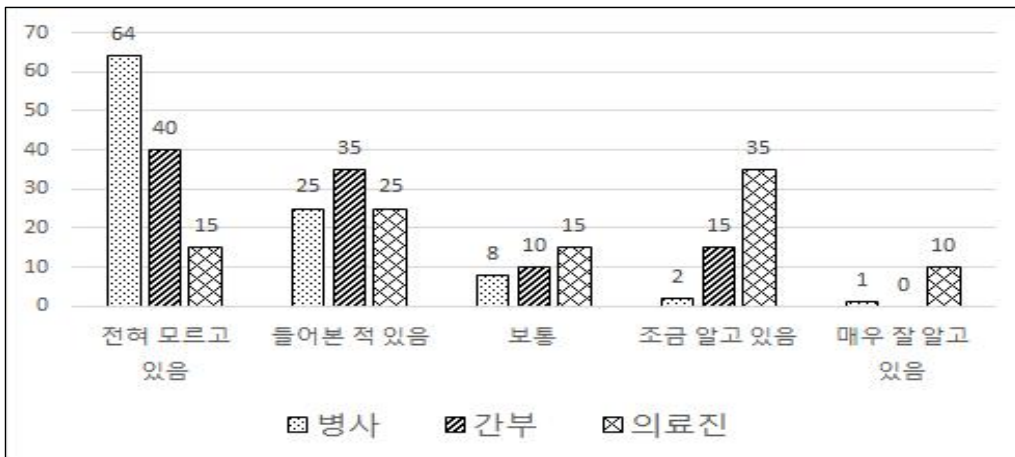
(단위: %)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인지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병사의 경우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89%, 간부는 75%, 의료진은 40%를 차지한다. 병사 및 간부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의료진은 보통 이상이 6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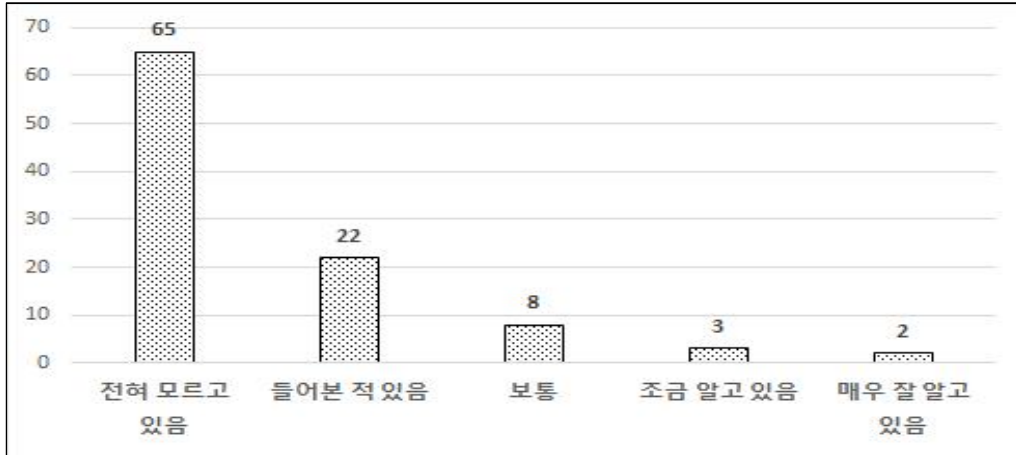
[표 5-15]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

(단위: %)



[표 5-16]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병사)

(단위: %)



재해보상 분야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병사에게만 해당되어 병사만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87%로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조금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인원은 설문 대상자 본인이 일반장애에 해당되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술하였듯이 보훈보상제도 교육 여부와 보훈보상체계 인지 정도를 설문조사 하였다. 보훈보상제도 중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을 받은 병사는 14%, 간부는 5%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의료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인원은 병사 74%, 간부 80%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군인 재해보상법 분야와 군인복무기본법 분야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병의 소속부대에서 정규시간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받은 것과 참고자료로 발간하여 활용하게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체계적인 교육시간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보훈보상체계의 인지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① 공상 신청 절차, ②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③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 절차, ④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

에 장애보상금 신청 절차 등 4개 분야를 설문조사 하였다.³⁴⁰⁾ 그 결과 공상 신청 절차의 경우 “조금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병사의 경우 9%, 간부 40%, 의료진 30%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는 병사 7%, 간부 20%, 의료진 40%를 차지하였다. 또한 재해분야 사망보상금 신청 절차는 병사 3%, 간부 15%, 의료진 45%가 조금 알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사에게 해당하는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는 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입원한 병사와 장병 모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의료진은 직접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평균 40% 이상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에 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범위를 설문조사 하였다. 먼저 사고 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 다음으로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 여부, 마지막으로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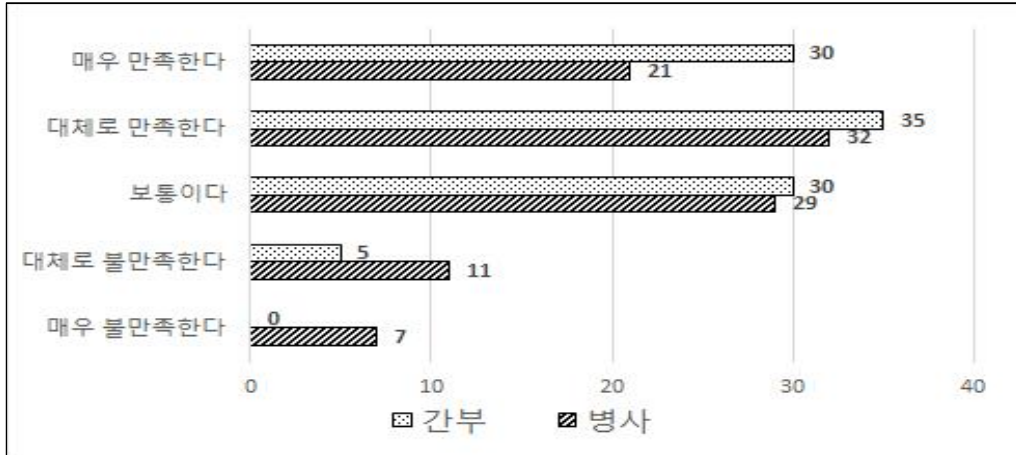
가. 사고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입원 장병은 사고 발생 후 소속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병사의 경우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53% 이고, 간부는 65%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입원 장병이 연대 및 대대급 이하에서 근무하는데 부상·질병 장병에 대해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40)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상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등 4개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공상 신청 절차는 육·해·공군 등 각 군의 환자관리규정과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재해보상분야 사망보상금 신청 절차,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신청 절차는 ‘병 복지길라잡이’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5-17] 부상·질병 발생 후 소속부대 조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한편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입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5-18]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³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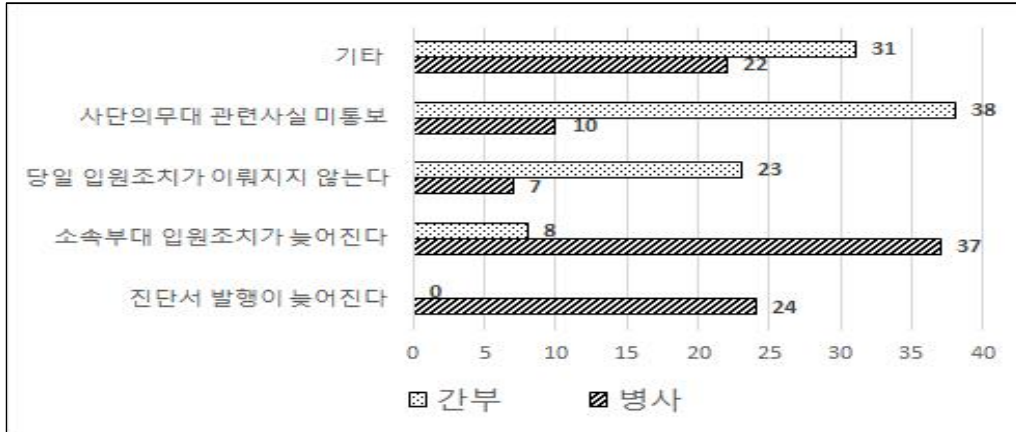
① 군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장이 진단서를 발행하여 원소속부대장으로 하여금 입원조치를 하도록 하며 다만, 사단급 이하 보건의료기관 입원은 소속부대 군의관 또는 군병원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한다. 이때 담당군의관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진료 당일 입원 조치를 하되, 사단의무대를 거쳐 군병원 입원 시 입원환자에 대해 사단의무대에서는 원소속부대에 진단서를 송부시켜 관련사실을 통보한다.

하지만 규정에 입원 절차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간 사단의무대나 군병원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인원이 다수 있었다. 병사의 경우 소속부대에서 입원 조치가 늦어진다고 여기고 있고, 간부는 사단의무대에서 관련 사실을 소속부대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기타 불만 사항으로 병사는 군의관이 오진을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간부는 입원절차가 복잡하고, 질병·부상 입은 간부에 대해 지휘관이 그러한 사실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341)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5조(입원절차)

[표 5-19] 입원절차에 대한 불만족 사유

(단위: %)



입원 간 군 병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군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병사는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 시설 개선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간부는 의료인력 공급 확충, 시설 개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입원 장병이 체감하는 바는 의료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설이 개선은 되었으나 민간병원보다는 낙후되었다고 여긴다.³⁴²⁾

[표 5-20] 군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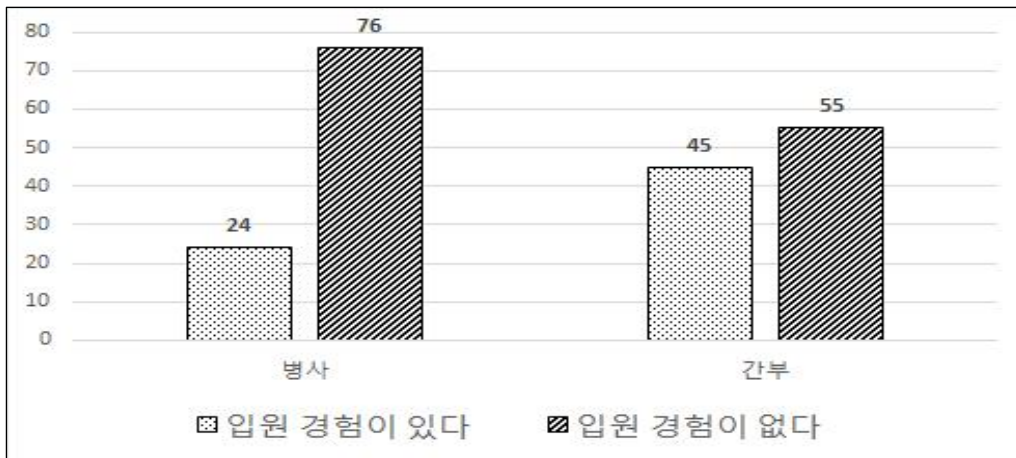


342) 설문조사 간 입원 장병 보호자는 각 병실마다 화장실이 없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호소하였다.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병원 입원·진료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병사의 경우 47명으로 전체 인원의 24%를 차지하고, 간부의 경우 9명으로 45%를 차지하였다. 중기 혹은 장기복무의 간부는 군 병원에 입원할 정도이면 부상 혹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병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병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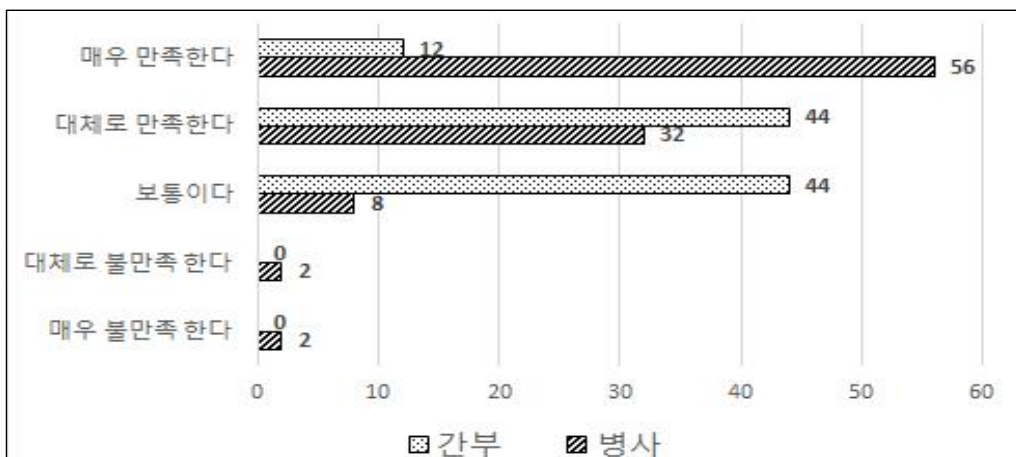
[표 5-21] 민간병원 입원(진료) 경험

(단위: %)



[표 5-22]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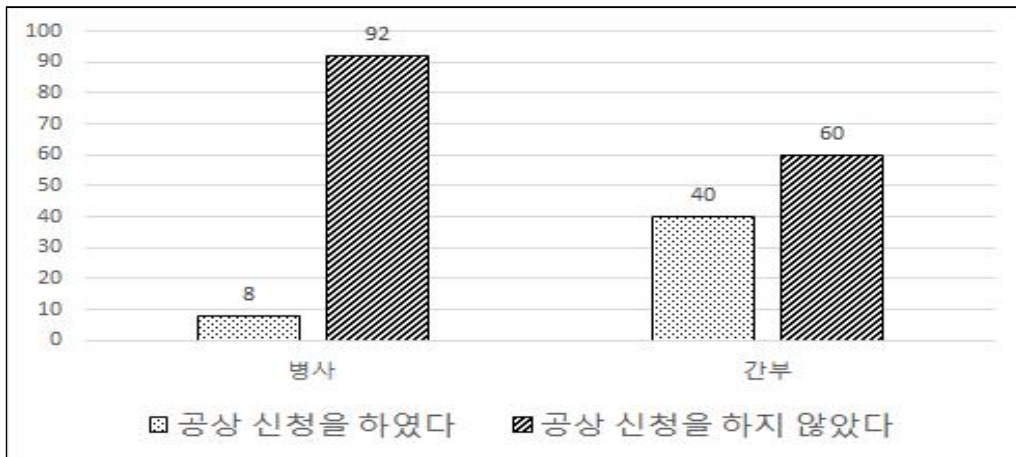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민간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47명 중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88%로 나타났다. 간부의 경우는 9명 중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56%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입원 장병을 대상으로 공상 신청 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병사는 16명으로 전체의 8% 인원이, 간부는 8명으로 40%의 인원이 공상 신청을 하였다. 입원 간 공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니까 절차를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었고, 부상이나 질병이 심하지 않아서 안 한 경우도 있었다.

[표 5-23] 공상 신청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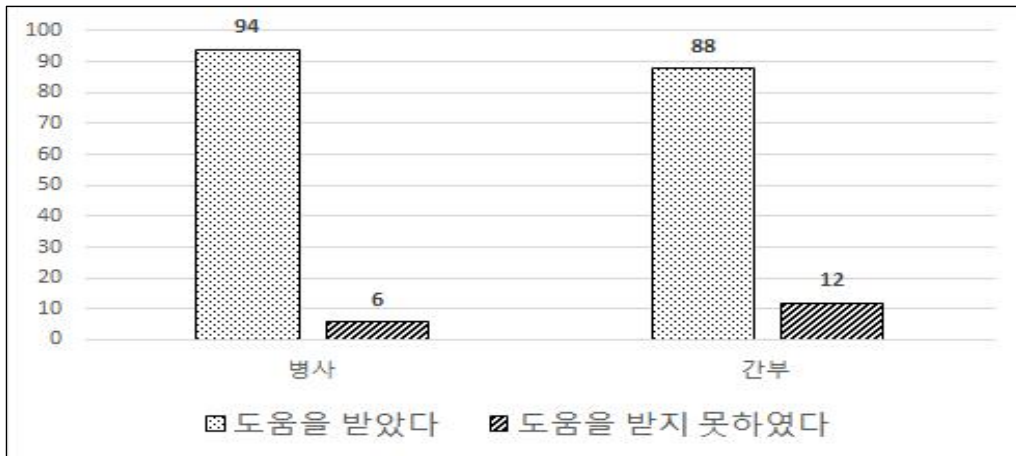
공상 신청을 한 인원 중 군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을 받은 여부를 조사하니 병사는 1명을 제외한 15명이 도움을 받았고, 간부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상을 신청할 때 소속부대와 군 병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내용은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에 명시된 공상 신청 절차이다.

[표 5-24] 공장 신청 절차³⁴³⁾

- 민원인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심사신청서, 발병경위서, 의무기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이다,
- 보통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판단한 모든 자료를 심사결과와 함께 민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표 5-25] 공장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을 받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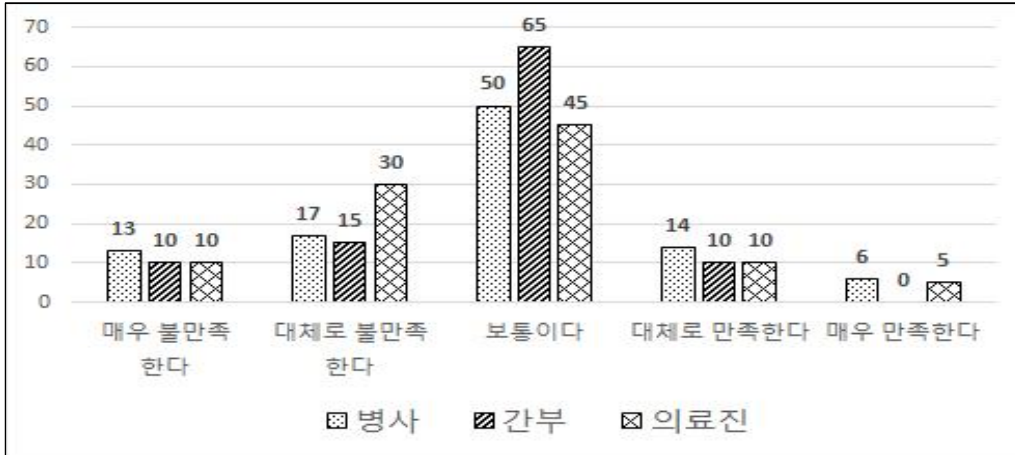
다.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

입원 장병 및 의료진의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등 4 종류의 보상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보상금의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설문지에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매우 불만족’ 또는 ‘대체로 불만족’의 비율이 병사 30%, 간부 25%, 의료진 4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준이 낮다고 여기고 있다.

343) 육규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9조)

[표 5-26]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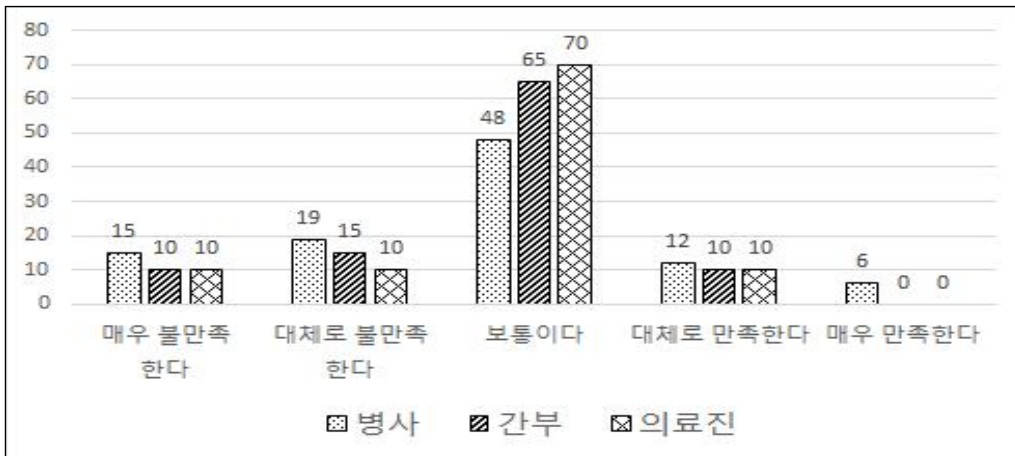
(단위: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불만족' 또는 '대체로 불만족'의 비율은 병사 34%, 간부 25%, 의료진 20%로 각각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와 별 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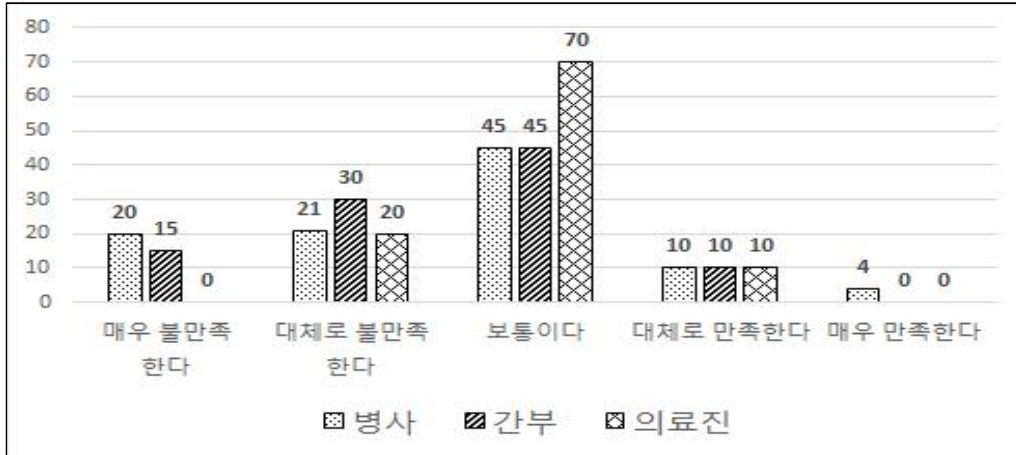
[표 5-27]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표 5-28] 군인 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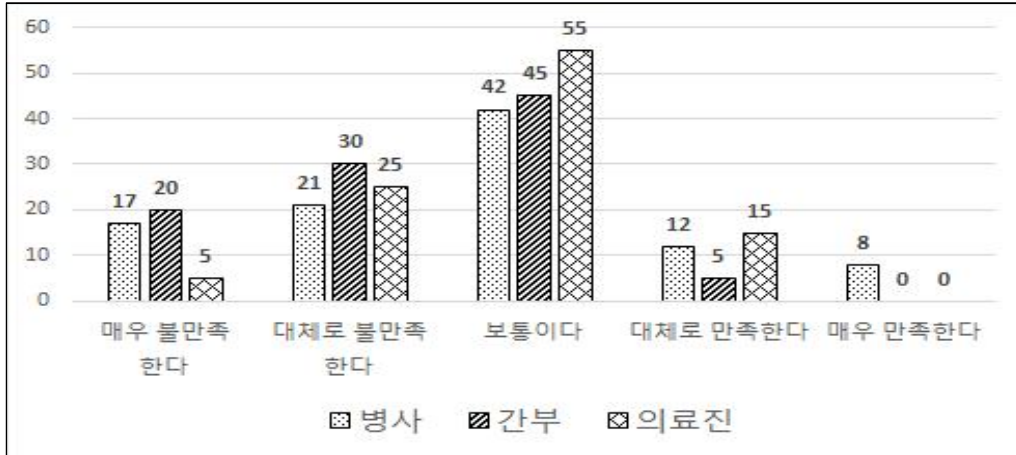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다. 하지만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사망보상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병사의 41%는 매우 불만족하거나 대체로 불만족하고, 입원 간부는 45%, 의료진은 20% 정도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보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불만족하거나 대체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병사 38%, 간부 50%, 의료진 30%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장애보상금의 금액³⁴⁴⁾을 보면 1급(심신장애 1~2급)은 4,770만원, 2급(심신장애 3~5급) 3,180만원, 3급(심신장애 6~7급) 2,385만원, 4급(심신장애 8~9급)은 1,590만원 이다. 이렇게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에서 9배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344) 2019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0만원이다.

[표 5-29]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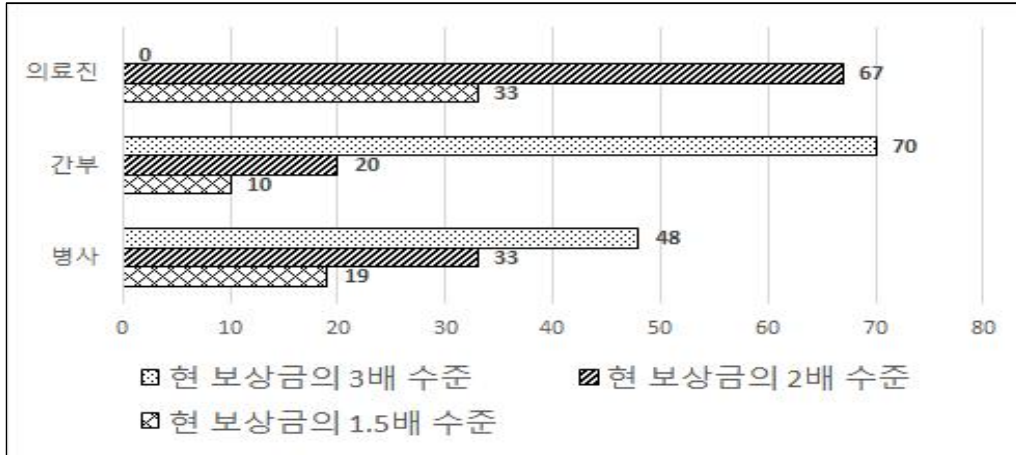


한편 20년 이상 근무한 군의관은 “일반장애(심신장애) 보상금을 간부에게도 지급 하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의정장교는 “병사들의 경우 장애보상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생각되지만, 간부들의 보상제도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간부들은 특수직무공상일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병사는 영내에서 축구하다 다쳤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 대한 기준보다 공상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에 대한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에 대한 보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보상금이 적다고 ① 매우 불만족하거나 ② 대체로 불만족한 인원을 표시한 부분을 보면 병은 75명, 간부는 10명, 의료진은 6명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병사는 현 보상금의 3배 수준, 2배 수준, 1.5배 수준 순으로 나타났고, 간부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료진은 2배 수준, 1.5배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입원 병사, 간부, 의료진 모두 현재의 보상금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라. 소결

보훈보상체계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사고 발생 후 군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사고 발생 후 입원 장병의 소속부대 조치에 대해서는 병사와 간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군 당국의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원 절차에 대해서는 병사는 소속부대에서 다소 입원조치가 늦어진다고 여기며, 간부는 사단의무대에서는 소속부대에 진단서를 송부시켜 관련 사실이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입원 절차상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사는 66%, 간부는 60%로 나타났고,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을 상대로 민간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병사 88%, 간부 56%로 나타났다. 병사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고, 간부는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입원 병사 중 공상 신청을 한 병사는 8%, 입원 간부는 40%가 해당되었다. 이 중 군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을 받은 병사는 94%, 간부는 88%로 거의 대부분의 입원 장병이 도움을 받았다. 즉 공상 처리 시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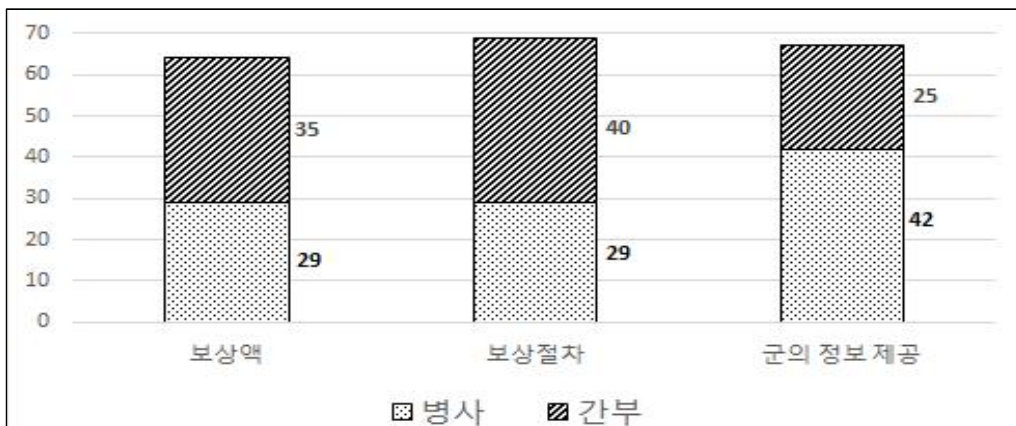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상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 보상대상자 보상금,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재해보상 분야 장애보상금, 적절한 보상금 수준 등 5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상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입원 병사는 18%, 입원 간부는 9%, 의료진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보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간부가 제일 낮고 다음으로 의료진, 병사는 이에 비해 조금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해서는 병사와 간부는 현 보상금의 3배 수준, 의료진은 2배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현 보상금 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대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예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4. 現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

가. 보훈보상체계 개선 우선순위

현 보훈보상체계의 개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병사와 간부에게는 보상액, 보상절차, 군의 정보 제공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기 항목 외에 전담조직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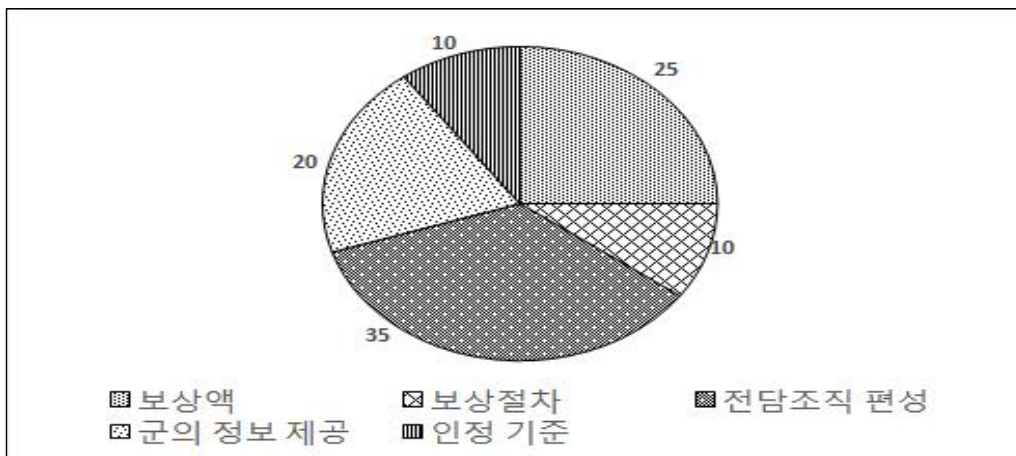
[표 5-31]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병사·간부)
(단위: %)



설문 결과 병사는 군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문에 응한 인원이 4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보상절차, 보상액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병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속부대에서 작성하는 발병경위서나 군병원에서 작성하는 의무기록 등을 직접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은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간부의 경우는 보상절차, 보상액, 군의 정보 제공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간부의 경우 공상 처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주변 동기나 선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도 거의 잘 처리가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5-32]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의료진)
(단위: %)



의료진 설문 결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전담조직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보상액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근무한 의료진은 현 보훈보상체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공상, 비전공상 구분하지 말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20년 이상 근무한 군의관은

“보훈대상이 안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군병원에서의 진료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군병원 입원 기간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훈 여부가 결정되어 자연스럽게 진료가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장교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 의료진들이 진료, 간호를 위해 집중하도록 행정절차 교육, 설명, 안내 등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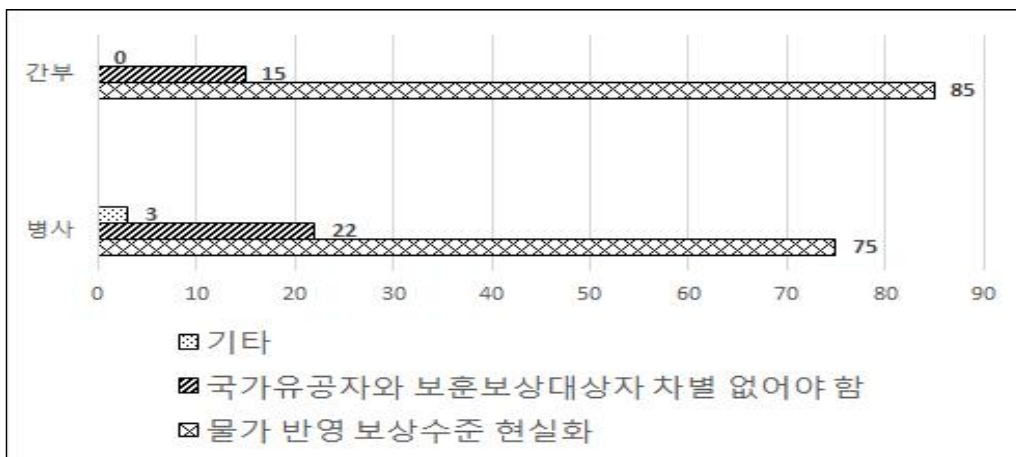
의료진들은 공통적으로 상이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고,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의료진은 진료·간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분야별 개선 우선순위

개선 우선순위는 보상수준, 공상 신청 절차, 공상 관련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 5-33] 보상수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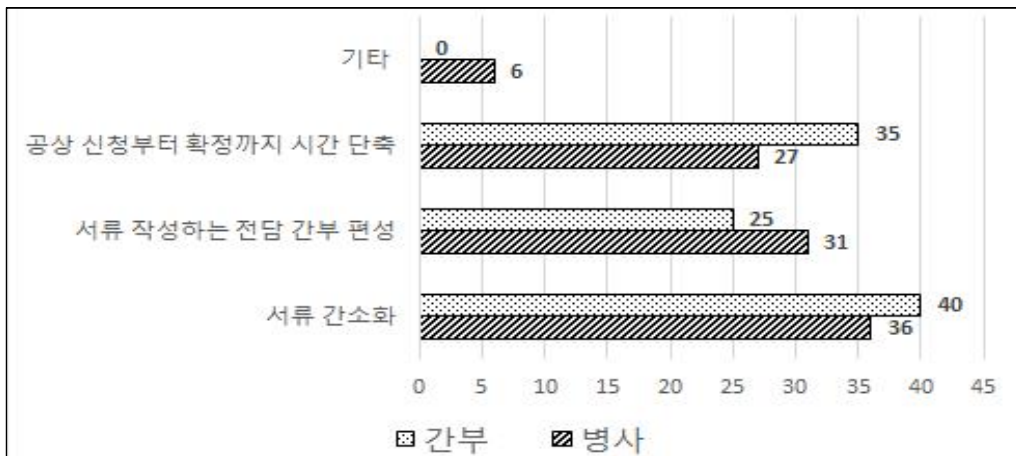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상수준 관련하여 병사의 경우 물가를 반영하여 보상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5%,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였다. 간부의 경우는 보상수준 현실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85%를 차지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15%였다. 요컨대 병사와 간부 모두 보상수준이 현실과는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최근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0여만 원이고, 2025년에 병장 봉급이 2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뉴스도 한뼘하였을 것이다.³⁴⁵⁾

[표 5-34] 공상 신청 절차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분야

(단위: %)



공상 신청 절차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병사의 경우는 공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공상 신청 시 서류를 작성하는 전담 간부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를 차지한다. 간부의 경우 공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가 40%, 공상 신청 후 확정까지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5%를 차지한다. 공상 신청자는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345)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또한 2025년 병장 봉급은 2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테일리, “25일 윤 예산안 시정연설... 병장 월급 얼마나 오르나,” 2022.10.25.).

활용동의서, 발병경위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등을 제출³⁴⁶⁾해야 하는데, 서류 종류의 많고 적음보다는 소속부대나 군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여긴다. 한편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전담 간부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공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병사와 간부 모두 소속부대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아는 장병은 공상 신청을 하고 모르는 간부는 공상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공상 신청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 들어서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표 5-35] 공상 관련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분야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공상 신청 절차 관련하여 원소속부대에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80	40	13	65
② 공상의 중요성에 대한 간부(상급자)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57	29	4	20
③ 서류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게 원소속부대나 군병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57	29	3	15
④ 기타	4	2	0	0
합계	198	100	20	100

20년 이상 군 생활한 주임원사의 공상에 관한 소견은 다음과 같다.

“절차와 규정을 잘 아는 간부는 신청하고, 잘 모르는 간부는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본인의 사례만 해도 수도병원 진료를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되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검사를 받은 후 취장을 많은 부분(2/3)을 절제하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공상이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관점으로 포기한다.”

또한 10년 근무한 부사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346) 육군본부, 「육군규정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p.23.

“공상 처리절차, 병가 사용 방법 등 병 치료를 위해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공상 처리에 대한 필요성, 안내, 신청절차가 군 병원 게시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같이 입원하고 있는 간부 입에서 입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 기타

1)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의견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단순히 군 관리책임자로서의 국가와 자살자의 문제가 아닌, 병역처분과 입영판정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제 징집처분을 하는 국가와 군대 내부의 질서와 운영을 하는 국가의 책임문제가 공조하고 있으며, 자살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이 20대 내지 80대³⁴⁷⁾가 아니라, 적어도 병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징집처분을 하는 국가와 군대 내부관리책임자로서의 국가가 80% 이상의 책임을 지고 도저히 징병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거나 군 입대 후 발생한 사정변경과 개인적 사유를 국가가 입증하면 개인의 책임이 2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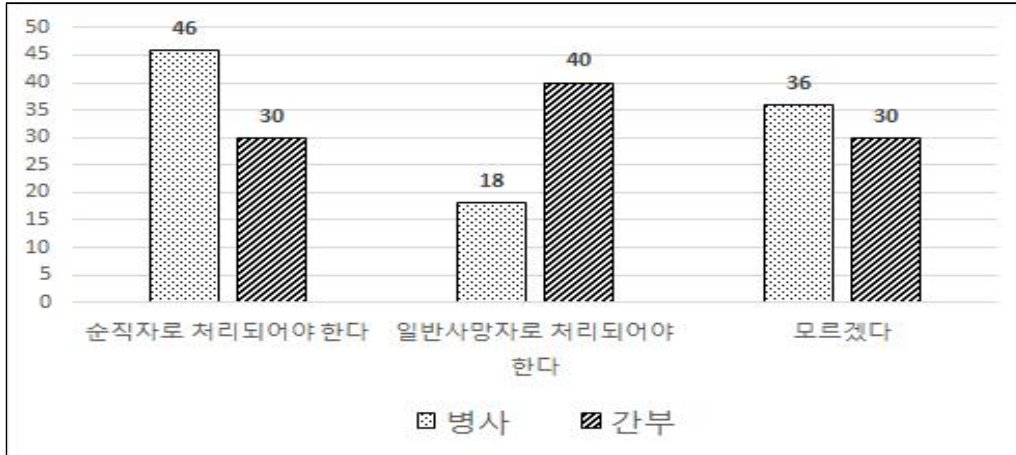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병사의 경우는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46%,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36%,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간부는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40%,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비율과 모르겠다는 비율이 각각 3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분석하면 병사는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고, 간부는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47) 군내의 자살에 있어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통상 20% 정도로 제한하는 판례가 일반적이다(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발표자료, 2022.5.27.)), p.64.

348) 김성배, 위의 글, p.65.

[표 5-36]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인식

(단위: %)



2) 입원 장병의 보호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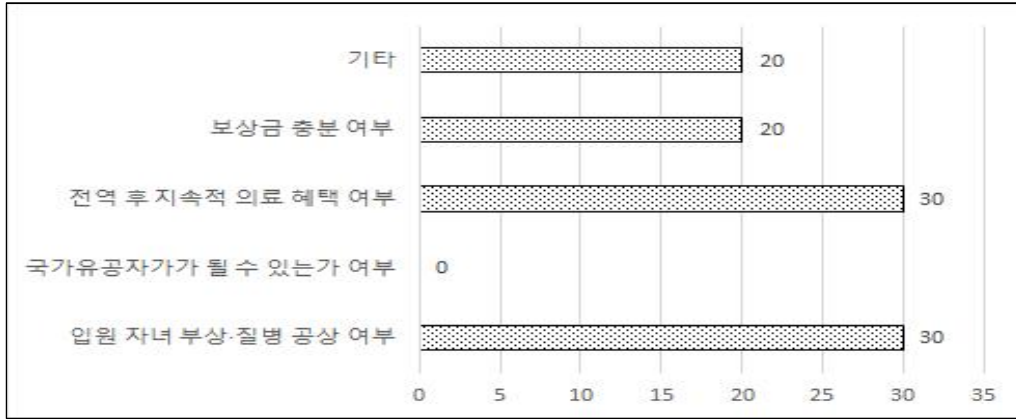
입원 장병의 보호자는 대부분이 부모였으며 설문조사는 입원 자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훈보상제도를 알고 있는지, 입원 자녀 관련하여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가) 입원 자녀(가족) 관련 가장 궁금한 내용

입원 자녀(가족)의 현 상태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원 자녀의 부상이나 질병이 공상에 해당될까?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한다. 기타 사항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후유 장애가 있을지를 염려하였다.

[표 5-37] 보호자가 궁금해 하는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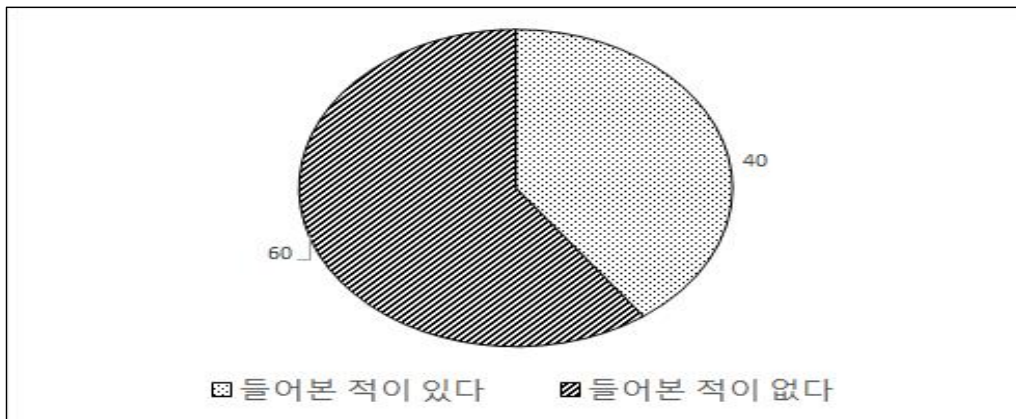


나) 군 사망 및 부상자 보상제도 인지 여부

입원 장병 보호자를 대상으로 군 사망 및 부상자 보상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보호자는 4명이었다.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확인하니 입원한 자녀로부터 들은 인원은 2명, 군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인원 1명, 소속부대로부터 들은 인원이 1명이었다. 입원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원 장병의 보호자가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가족으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표 5-38] 보훈보상제도 인지 여부

(단위: %)



다) 입원 자녀(가족) 관련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

입원 중인 자녀 관련하여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원 장병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전역 절차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이 40%이고, 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공상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20%를 차지했다. 다음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장병 보호자의 의견이다.

“사고조사 과정 자체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여러 이유를 들어 명확히 설명도 하지 않는다.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묻거나 신청 없이도 공상 처리되고 유공자 자격 획득도 당연한 결과일 텐데 행정절차가 많다. 심적으로는 얼마를 준대도 다치지 않는 편이 나왔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도 절차와 심사로 보상에 인색하다면 차라리 병역 기피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사고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고, 훈련 중 사고가 아닌 경우는 공상 처리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

[표 5-39] 입원 자녀(가족) 관련 조치하려고 하는 분야

구분	명	%
① 공상 신청	2	20
②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	1	10
③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장애보상금 신청	1	10
④ 전역 절차 확인	4	40
⑤ 기타	2	20
합계	10	100

3) 의료업무 관련 의료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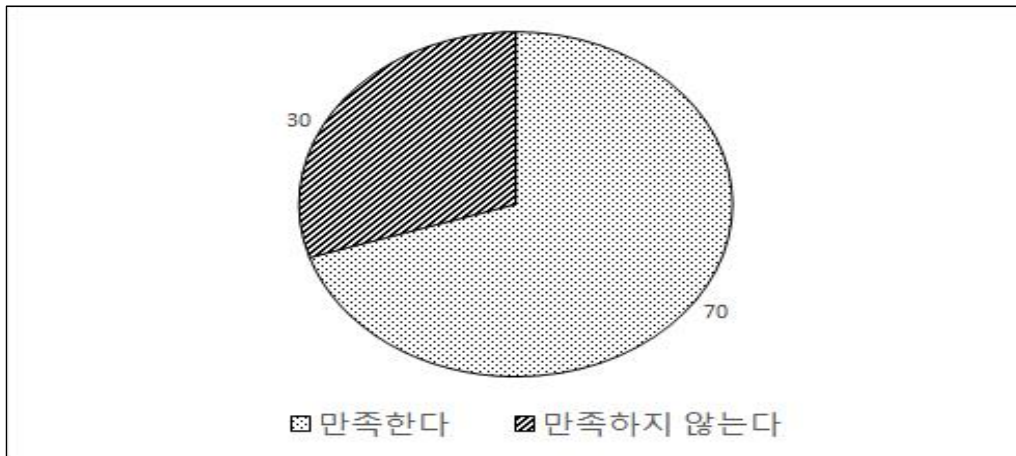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상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병경위서 작성에 대한 만족도와 의무조사 업무 수행 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확인하였다.

가) 발병경위서 작성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발병경위서는 인사행정권이 있는 입원 장병의 소속부대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공상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부대에서는 발병 원인 및 경위가 6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³⁴⁹⁾ 발병경위서 작성 만족도 설문결과 대부분은 만족하였으나 30%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발병경위서 작성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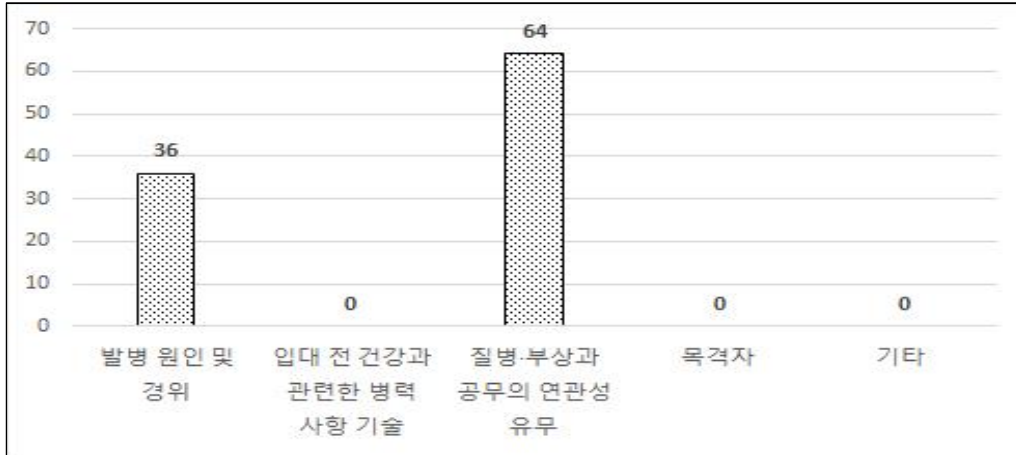


발병경위서 작성 관련하여 만족하지 않은 인원 6명이 복수 응답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64%는 질병·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응답하였고, 발병원인 및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되었다고 답하였다. 소속부대 지휘관은 장병의 질병 및 부상이 교육훈련, 직무수행, 부대활동 등과 연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49) 국방부, 「국방부훈령 제2635호 국방환자관리 훈령」 (2022.3.3.), 별지 제13호 서식(발병경위서).

[표 5-41] 발병경위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분야(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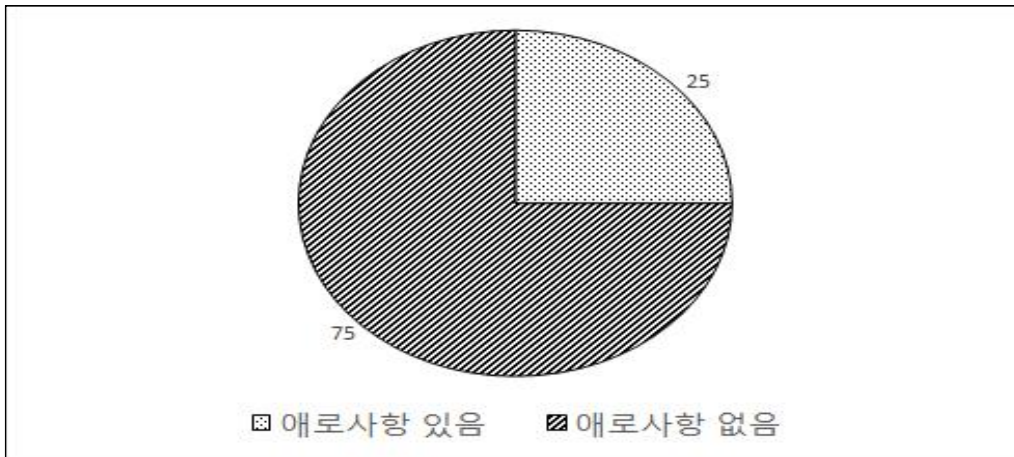
(단위: %)



나) 의료진의 의무조사 업무 수행 간 애로사항

[표 5-42]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유무

(단위: %)



의무조사는 의무조사위원회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 진찰, 검사,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³⁵⁰⁾ 의무조사보고서는 각 군 본부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중의 하나이다.

군 의료진이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은 느낀 인원은 5명으로 25%에 해당한다. 즉 대부분이 애로사항이 없으나 일부 인원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의무조사 관련한 의료진의 의견이다.

다음은 20년 이상 근무 중인 군의관의 의견이다.

“민간병원에서 수술 혹은 치료받은 환자들 중 의무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군병원으로 연계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신경외과 군의관은 의무조사 관련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가 군의관의 병력 청취 및 신체 진찰을 통한 단면적 평가만 가능한 한계점이 있다. 국가 보상 액수가 막대한 만큼 전담 부서의 객관화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군병원과 연계되어 의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입원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이에 대한 객관화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을 느끼는 5명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였다. 먼저 발병 및 전공상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심신장애 등급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의무조사보고서 작성란에는 발병 및 전공상 구분에서 (8)번 항목 전공상 구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³⁵¹⁾ 심신장애 등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다.³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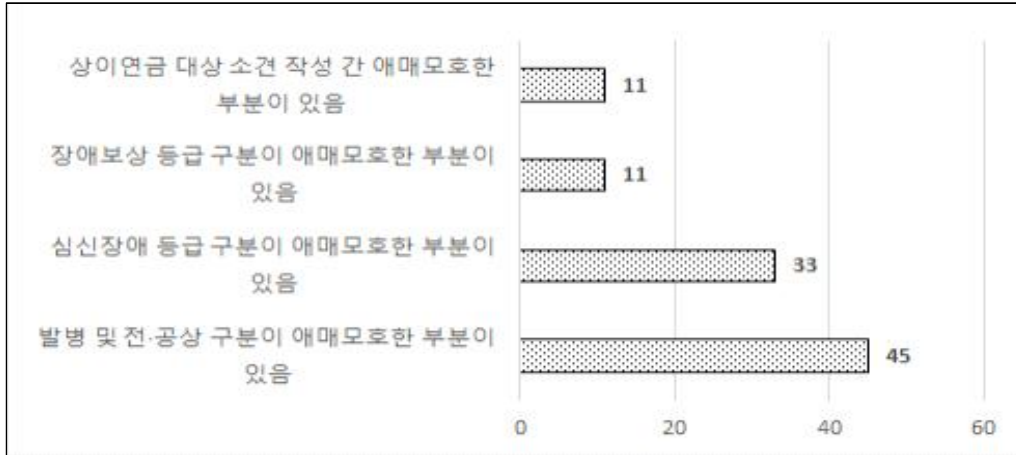
350)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국방부령 제1091호, 2022.7.28.).

351) 국방부, 「국방 환자관리 훈령」 (2022.3.3.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서식(의무조사보고서).

352)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2020.2.3.), 세부내용은 과별, 심신장애의 정도, 평가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5-43]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분야(복수 응답)

(단위: %)



라. 소결

현 보훈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① 개선 우선순위, ②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 ③기타 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선 우선순위에서 입원장병은 보상절차, 군의 정보제공, 보상액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조직 편성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전담조직 편성, 보상액, 군의 정보제공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 및 간호장교 입장에서 볼 때, 공상 처리나 재해보상 관련 행정처리가 다소 본래 임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훈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 편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야별 개선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보상액, 즉 보상수준 관련하여 입원병사와 간부 모두 물가를 반영하여 보상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수준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상 신청 절차 관련하여 입원 장병 모두 1순위로 공상 서류를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막연하게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는 미상 자살자에 대한 장병의 의견, 보호자 및 의료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미상 자살자에 대한 의견은 병사의 경우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고, 간부는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입원 장병 보호자에 대해 입원 자녀에 대해 가장 궁금한 내용은 공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전역 후 지속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또한 의료진의 경우 발병경위서에 작성에 대해 대부분 만족을 하였으나 일부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질병 및 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부분의 기술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대부분이 만족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한 부분은 발병 및 전·공상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즉 「군인사법 시행령」의 공상자 분류기준표에서 3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업무수행 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소결론

1. 보훈보상체계 인지도에 대한 분석

보훈보상체계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훈보상제도 교육 여부, 보훈보상체계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군인복무기본법의 제17조 의료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입원병사, 입원 장병 모두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상 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재해보상 분야 장애보상금 신청절차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3~9% 인원이 조금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10명 중 겨우 1명 정도가 알고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입원 병사이기에 그렇지 군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병사는 거의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상제도를 알지 못하면 제때에 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각종 검사 및 영상 판독결과 등을 준비 못 해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 모두 양성기관이나 훈련소, 신병교육대 등에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보훈보상체계 인지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술한 4가지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중에서 공상 신청 절차는 간부와 병사가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부가 공상에 대해 아는 수준은 매우 낮다. 20년 이상 복무한 행정정보급관(부사관)은 공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상 신청 시 서류가 너무 많고, 인터넷 카피본과 함께 원본도 보내야 해서 자대에서 1~2일 준비 후 보내야 하고 개인이 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상 절차도 복잡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가 개인이 전부 준비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전역 시 공상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공상 해당 여부, 공상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장병 모두에게 교육이 절실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공상자 분류기준표’에서 제시한 37개 항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

행위 또는 업무 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³⁵³⁾도 공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장병에 대한 보훈보상체계 교육이 이뤄지면 부상이나 질병으로 상이를 입은 장병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훈보상체계 만족도에 대한 분석

보훈보상체계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군 조치의 적절성,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보상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보상 수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상 수준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군인 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 등 4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하였다. 물론 입원 병사나 간부, 의료진 모두 보상금을 받은 경험은 없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나 병장 봉급이 조만간 200여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뉴스는 입원 장병에게 현재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 받는 보상이 적다고 느껴질 것이다.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해 보상금의 2배~3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낮은 이유는 대상자가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전쟁사상, 평시사상, 참전군인, 제대군인으로 군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군인, 경찰, 공무원, 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정서와도 괴리가 있다. 이 역시 과거 공무원의 복지가 낮았던 상황에서 정책적 배려에서 시작된 제도라고 할 것이고, 모든 순직·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⁵⁴⁾ 이런 부분은 역사적 배경과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53)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 (2022.6.30.), 공상자 분류기준표(기준번호 2-3-12).

354)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5.27.), pp. 147-148.

3. 개선방안 논의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확인 후 현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입원 병사 및 간부는 보상절차, 군의 정보제공, 보상액 순으로 나타났고, 의료진은 전담조직 편성, 보상액, 군의 정보제공 순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공상을 포함한 처리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할 보훈보상체계 전담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장병 입장에서는 공상 처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병사의 입대 순환주기는 18개월에서 채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 즉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병사가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이 복무 중에 상이를 입고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자랑스럽게 군 복무를 할 것인가. 상이를 입는 인원이 소수라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인색하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장병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장병이 복잡하게 여기고 있는 공상 신청 등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보훈보상체계 One-Sto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향상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고, 자살에 대한 입원 장병의 인식 변화로 자살자에 대한 순직 범위를 확대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항목별 분석과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 구성요소의 인지도, 만족도, 보훈보상체계의 개선우선순위 등으로 분류하고 데이터화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개별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장병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보상금 수준향상 및 자긍심 고취가 되어야 하며, 공상 신청 등에 대해 One-Stop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상 자살에 대한 입원 장병의 인식 변화로 순직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제6장 군 사망·부상사고 심층면접 조사 결과분석

제1절 심층면접 개요

1. 심층면접 항목 및 구성

심층 면접은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부상 장병 가족의 경우 현재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장병의 가족 중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부상 장병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입원 기간, 부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부상 이후 상급자로부터 보훈 및 공상 신청 관련 절차를 안내받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의료 및 보훈정책 관련 개선 방안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군 의료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각 군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의 조사 결과도 종합해서 작성하였다.

둘째, 사망 장병 유가족의 경우 장병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원인,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 후 보상 및 공상 처리, 현재까지 소송 등이 진행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군과 국가에 대해 바라는 점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문의하였다. 사망 장병 유가족 면담은 심리적 아픔이 있는 관계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세심하게 접근하였고, 유가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회한 등을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 사망자 관련 문제점 및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각 군 및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도 참조하였다.

셋째, 각 군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대면 및 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먼저, 본인의 소속 기관, 직책 및 계급, 담당 업무 등 기본 정보를 확인했다. 업무 담당자 면접은 익명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했고, 그래야 조사자가 경계심을 풀고 솔직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군 사망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상자 발생 시 군 병원의 진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또한, 사망, 부상 시 인권보장, 공상처리 등 행정조치가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사망, 부상자 발생 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군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 것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넷째, 기타 기관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가 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망, 부상자 발생 시 어떠한 처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훈 및 공상 처리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 및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귀 기관의 보상수준이 적절한지, 어떠한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지, 마지막으로 군 관련 정책적 제언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 및 제대 군인 지원 단체 담당자의 경우 군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군 및 국가 기관과 협업이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심층면접 문항 구성은 [표 6-1]과 같다.

[표 6-1] 면접조사 구성요소

분 야	내 용
부상장병 가족	• 가족에 대한 통보 시점, 의료서비스 수준, 보훈보상제도 숙지 여부, 공상 신청 관련 인지도 등
사망자 가족	• 사망 관련 통지 시점, 장례 및 안장 진행, 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보훈보상체계 인식,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각 군 및 업무담당자	• 부상·질병 사고발생 시 업무 과정, 업무 수행시 애로사항, 업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 정책적 개선 방안 등
기타 기관 담당자	• 보훈보상 체계 관련 기관의 업무 특징, 정책적 개선 방안, 군과의 협력 방안, 향후 업무 추진 계획 등

2. 설문조사 대상자

심층면접 대상자는 부상 장병의 부모, 사망 장병 유가족, 각 군 및 보훈 업무담당자, 경찰청 등 기타 기관 및 시민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³⁵⁵⁾ 심층면접

355) 또한, 군 제대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업체(카페 가입자 수 10,000명 이상)에 가입해서 여러 제대군인의 사례, 주요 이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은 군 사망 및 부상 사고 관련 피해 당사자, 부모, 각 군 담당자, 시민단체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군 사망, 부상 관련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실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 및 법령 개선이 바람직한지 살펴볼 수 있었다. 지자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국가 및 여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대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 부상을 당한 제대 군인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부상 장병 가족 10명에 대한 심층 조사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가족의 성별은 남성이 6명, 여성 4명이고, 입원 장병과의 관계는 부모가 7명이고 형제자매가 3명이다. 연령은 30대 1명, 40대 3명 50대 6명이다. 입원 장병의 입원 기간은 1개월 이내가 3명이고, 2~3개월이 4명, 6~12개월이 2명, 기타(3년) 1명이었다. 국군수도병원은 특성상 소대, 중대, 대대급 1차 의료기관,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입원한 사례가 많다. 부상 장병중에는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부상이 위중해 제대를 고려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부상 장병의 가족들로부터 군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및 공상 처리 관련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청취하는 데 유용했다.

군 사망 장병 유가족은 1차적으로 국가인권회에서 추천해준 유가족 6명을 섭외해서 연구자들이 분담해서 대면 방문 및 유선 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께서 추천해 준 부모 및 연구진이 섭외한 대상자 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군 사망 장병 유가족과의 면담은 국가 및 군에 가지고 있는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이었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아가는 현실적 어려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및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 등에 관한 견해를 청취할 수 있었다.³⁵⁶⁾

각 군 및 보훈 업무담당자의 경우 현역 및 공직에 재직중인 분들이 다수인 관계

356)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 풀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조사에서 첫 질문이 가장 어려웠고, 부모님 입장에서든 첫 대답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 쉽지 않았다. 본인의 면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주신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 분들께서 아픔을 극복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로 익명을 전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각 군 관계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는 현역 및 현직에 재직중인 분들이 많은 관계로 섭외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중간 보고회 참석 등 계기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한 분들을 중심으로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이 분들이 소개해 주신 분들을 연락해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서울 및 계룡대 근무하는 인원들은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방 및 지역 병원 등에 근무해 면담이 어려운 분들은 심층면접 취지를 설명하고 유선 및 메일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³⁵⁷⁾

기타 기관 관계자의 경우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 보훈 업무 담당자 2명, 서울시 청년제대군인 상담센터 등 지자체 기관 3명, 보훈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3명, 국회보좌관 2명, 예비역 수사관 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방청 및 경찰청 관계자 면담은 재난 대응 등의 이유로 대면 면접이 어려운 바, 유선 및 메일 회신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청년 제대군인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인이 군에서 부상을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 면담 과정에서 군에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후 어떤 기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제대 군인 및 가족들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 및 국가 기관들이 지자체 산하기관 등 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제대 군인 및 가족들을 안내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 문항은 부록으로 첨부할 예정이고, 심층면접 대상자 분포는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심층면접 대상자 신분별 현황

구 분	합계	부상 장병 가족		사망 장병 유가족		각 군 및 업무담당자		기타 기관 관계자	
		명	%	명	%	명	%	명	%
인원수	50	10	22%	10	22%	20	44%	10	22%

357) 현직에 계신 분들은 군 사망, 부상 관련 민원 및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섭외가 쉽지 않았다. 섭외를 한 이후에도 익명을 전제로 해야 솔직한 조사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면 조사보다는 유선 전화, 메일 등 형태로 면접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6-3] 심층면접 대상자 신분별 세부 현황

(단위: 명)

구분	부상 장병 가족	사망자 유가족	각 군 및 업무담당자	기타 기관 담당자
연령/ 각 군	30대 1명 40대 3명 50대 6명	50대 6명 60대 4명	육군: 8 해군: 4 공군: 4 조사본부: 2 국가인권위: 1 군의문사 진상규명위: 1	소방청: 1 경찰청: 1 서울시: 3 변호사: 2 국회보좌관: 2 예비역수사관: 1
합계	10	10	20	10

제2절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결과

1) 개요

부상 장병 가족 심층면접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장병의 보호자 10명을 선정해서 진행했다. 10명 중 6명이 남성, 4명이 여성이었고, 부모가 7명, 형제 자매가 3명이었다. 면접자 나이는 30대 1명, 40대 3명, 50대가 6명이었다. 입원 장병의 입원 기간은 1개월 이내 3명, 2~3개월 4명, 3~6개월 1명, 6개월~1년 이내 1명, 1년~3년 이내 장기 입원한 장병 1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사 문항은 자녀 및 부모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입원 장병의 질병 및 부상 관련 소속 부대나 병원에서 적시에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공상 신청 등 과정에 대한 안내 여부, 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조사했다.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첫째,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높았다. 군 의료서비스 관련 대다수 보호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친절하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전방에 있는 6개 병원 및 국군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에 해당하고, 수도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층면접에 응한 가족들의 경우 병원 내부에 전문의 및 간호 인력 등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³⁵⁸⁾

358) 우리 군 의료체계는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병원 14개,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등 20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고, 전문인력 및 최신 장비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의료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대, 중대, 대대 단위 1차 의료기관이 의료진 및 장비 면에서 열악하다는 데 있다. 문도원,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10권 2호, 2017, p.87.

[표 6-4] 국군병원 3단계 진료체계의 특징³⁵⁹⁾

전달체계 상의 위치		특징 및 제공기관
1차 의료	특징	주로 외래환자, 초기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진료, 30인 미만의 병상수 보유
	제공기관	의무소대, 의무중대, 의무대대
2차 의료	특징	법적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 및 외래에서의 전문 진료, 30인 이상의 병상수 보유
	제공기관	전방 병원-종합 병원
3차 의료	특징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보유, 2차 진료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장비와 고도의 전문 의료 인력의 서비스, 500인 이상의 병상수
	제공기관	수도병원-상급종합병원
2차 의료 (1차 의료)	특징	군에서만 존재하는 '정양환자' 때문에 필요한 단계, 급성기 치료를 마친 회복기 요양 의료기관
	제공기관	후방병원-요양의료기관

이는 각 군 본부 및 의무 관련 담당자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군 의료시설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지휘관들도 위중한 환자가 식별되면 의무사령부 보고 및 지침에 따라 상급 병원 이송 및 필요시 민간 병원에서 치료권을 보장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각 군 보훈 업무 담당자들도 병영문화혁신 추진으로 장병들에 대한 처우 및 의료 여건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이 휴대폰 사용 등을 통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제보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이 즉각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장병들의 의료 여건 관련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군의 한 간부는 의료 여건 보장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망,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상태에 따라 군 병원 진료 또는 민간병원 진료가 결정되며, 의무사 종합상황지원상황센터(119 상황실과 비슷)에서 전군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제는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진료권 보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간혹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지연 치료에 대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다수가 교육사 기지병원으로 판단되며, 이

359) 문도원,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10권 2호, 2017, p.97 인용.

는 의료진이 부족하여 대다수 환자에 대한 1인당 진료 시간이 길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심각한 경우 가까운 군 병원으로 이송시키지만 군 병원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둘째, 자녀가 부상·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때 소속 부대나 군 병원에서 자녀의 부상·질병 정보에 대해 적시에 통보해 주었는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적시에 통보해 주었다고 대답한 인원은 8명이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1~2일 후 통보, 또 다른 1명은 약 1주일이 되어 알려주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에서 환자 가족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장병 부모와 소통하는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들이 군 병원에 입원한 병사 관련 관심사에 관해서는 자녀의 병명 및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장기 입원한 병사 부모의 경우 공상 신청 및 제대 후 생활, 보훈 대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자녀의 입원 사유가 뇌졸중 등 위중한 병명의 경우 치료 및 제대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자녀가 단순 골절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제대가 아닌 자대로 복귀해야 하고, 복귀 후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한 부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었고 최악은 면했지만 부상 전과 부상 후의 신체 상태는 확연히 다르고 일상과 건강에 막대한 불편이 따른다. 현재 치료 중이지만 입원기간이 이미 6개월 이상이고, 수술을 3차례나 받은 후에도 제거 수술이 남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4급이라 남은 기간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사고로 긴 기간 동안 환자도 가족도 심신이 지쳤는데 퇴원 즉시 전역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소모품 취급당하는 것 같다. 이 상태로 사회에 바로 복귀하기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할 텐데 배려가 없다.”

군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전역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무조사를 시행한 후에 결정된다. 1차는 군 병원, 최종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전역 심의 후 계속 복무 또는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상기 사례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자녀가 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계속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장병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가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주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군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부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병원과 달리 소속 부대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던 장병의 부모는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육군 제대군인 장병의 부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이가 육군 일병 근무 중 대상포진에 걸렸으나 소속 연대병원에서 경험이 부족한 군 의관(비전문의로 판단됨) 오진으로 단순 피부병 치료만 2주간 받는 동안 대상포진이 방치되었다. 통증이 심해져 2주후 사단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고, 사단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대상포진 신경통 증세가 심각하나 군 내에서는 더 이상 다른 조치가 없어 부모의 강력한 요청으로 민간병원에 입원치료를 전제로 1개월간 귀향치료를 실시했다. 민간 대형 종합병원(서울○○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하나 대상포진으로는 대형병원에 입원이 안되어, 편법으로 작은 병원에 입원하고 대형병원(○○병원)으로 다시 통원치료를 하여야 했으며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액 부모 부담으로 지불했다. 이후 부대 복귀하여 3개월간 ○○병원 처방약으로 약물치료를 하여 회복은 되었으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³⁶⁰⁾

군 병원에 입원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5장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군 장병들과 부모들은 민간 병원을 선호한다. 군 병원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속 부대의 1차, 2차 병원 수준에서는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장병들은 군 병원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부상 장병 부모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한다. 상기 언급한 육군 제대군인 부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군 의료진이 너무 약하고 전문성이 없어서 오진으로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 아이의 경우 초기 대상포진으로 진단만 했으면 큰 문제 없을 질병이었는데, 군에서 방치하다시피 하여 결국 부모가 나서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예상되었다. 부모 입장에서 군에서 병사가 발병하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군의료진의 실습 대상이 된다는 느낌

360) 상기 내용은 2014년 육군 일병으로 재직시 피부병 초기 치료가 늦어져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예비역 장병 부친의 언급 내용이다.

도 들었다. 적시에 적절한 판단과 처치보다 실험실에서 이것저것 해보는 식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귀향하여 민간병원 치료 시 입원이 안 되어도 자가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토록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병원 치료 시 모든 치료 입원비를 군이 부담하고, 병사들도 똑같이 민간 의료보험 가입이 필요하다.”³⁶¹⁾

심층면접 결과 군 병원 의료체계 개선은 분명하나, 수도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과 1~2차 의료기관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 의료기관은 주 1~2회 지정된 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진료도 사전 신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접근성도 떨어진다. 또한 많은 군의관들이 임상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간호사가 아닌 양성된 의무병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선 군 병원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민간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군 병원 진단서 및 해당 부대의 청원 휴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게다가 전문의가 아닌 대대급 군의관이 위중한 환자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군의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 바로 위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³⁶²⁾ 결국 군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 대대급 1차 의료 기관 및 지역에 소재한 2차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물론 이는 군 의료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국방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 및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3) 공상 신청 관련 정보 제공 및 만족도

공상 신청 관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상 처리 관련해 입원 장병 가족 10명 중 3명은 자녀가 이미 공상 신청을 하여 공상 인정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나머지 7명은 공상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공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에 집중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한 가족, 공상 분류 기준이 애매해서 신청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한 부

361) 상기 내용은 2014년 육군 일병으로 재직시 피부병 초기 치료가 늦어져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예비역 장병 부친의 언급 중 일부분이다.

362) 군 진료체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오창원,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 진료체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 37 참조.

모도 있었다. 공상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 대다수는 공상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한 장병의 가족은 공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이의 사고조사 과정 자체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군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명확히 설명도 하지 않는다.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로 아이가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나 신청 없이도 공상 처리되고 유공자 자격 획득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심적으로는 얼마를 준다고 해도 다치지 않는 편이 나왔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도 절차와 심사로 보상에 인색하다면 차라리 병역 기피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층면접 결과 입원 장병 가족들은 공상 처리가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모는 국가가 공상 처리 등으로 차별한다면 군대를 갈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 사회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장병 및 가족의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어렵고 자칫 병역의 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풍조도 만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상 인정 여부와 더불어 많은 가족들은 전역 후에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 입원 장병 부모는 자녀의 부상이 공상에 해당하는지,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를 살펴보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군 병원에서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전역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는 다음과 같다.

[표 6-5]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 및 치료

①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병원 입원 또는 외래진료(치과 등)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서 계속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 한 자 중에서 본인이 군병원 진료를 원하는 환자로 한다.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과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 및 전환복무자도 이에 포함된다.

2. 제40조에 의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 중인 자를 포함한다.

② 진료미종결 전역자 치료는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 중 퇴교한 군간부후보생(가입교생 및 기초군사훈련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군사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군 병원에 입원한 군인 및 가족들에게 공상 신청 절차는 물론 공상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입원 장병 보호자들은 공상으로 처리가 될 경우 보상금은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질병 및 부상을 당해 입원한 군인의 부모, 가족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입원 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공상 처리 절차 및 공상 인정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혜택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10명의 조사대상자 중 4명만이 보훈보상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를 인지한 경로를 살펴보면 자녀 2명, 군 병원 1명, 소속 부대 간부 1명이었다. 입원 장병 가족의 보훈 보상 관련 인지도는 군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장병의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소속부대 간부와 의 소통, 군 병원 관계자로부터의 안내,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보호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0명의 가족 중 6명이 보훈보상과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군 병원에서 입원 장병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공상 신청 및 보훈·보상체계를 소개해줄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원 장병 관련 시급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① 전역절차 확인, ② 공상 신청, ③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확인 순으로 답변을 하였다. 전역절차 확인이란 입원 장병의 상태를 고려하여 군 복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쳐 심신장애 판정을 통한 전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도병원을 비롯하여 군 병원에서는 심신장애 전역 절차에 대해 병사용, 간부용 책자³⁶³⁾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63) 국군의무사령부, 「장교·준사관·부사관 입원환자 전역안내서(2022~2023)」, 「병사용 입원환자 전역안내서(2021)」

2. 문제 및 개선 사항

군 병원에 입원한 가족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상 신청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하다. 공상을 신청하고, 국가보훈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발급, 군 복무와의 인과성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을 도와주는 전담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병사와 가족이 진행해야 하는바, 일단 치료를 마친 후 공상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던 가족도 있었다.

둘째, 국군수도병원은 자원이 집중되어 선진화되고 있지만, 지역 군 병원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수도병원은 헬기 이착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응급헬기를 갖추고 있고, 2022년 4월에는 국군외상센터가 개소되었을 만큼 선진화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군인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군 병원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중대, 대대급 야전 부대는 단기 군의관이 진료하고,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해 야간, 휴일 등 시간에 환자 발생 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의사들의 경우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대대급 군의관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진료를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경우 군의관의 미숙함으로 인한 오진,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한다.

심층면접을 진행한 다수의 군 관계자들도 민간 의료 수준은 높지만, 대다수 야전 부대의 현실은 대대급은 일반의가 전담하고, 중대급은 의무대 등 의료시설 자체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상 장병에 대해 군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지역 내에 활용 가능한 민간의료지원도 최대한 받게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고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야전 부대의 현실은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 (대대급 군의관은 일반의), 의료시설의 미흡(대대급 의무대나 소파견지 등) 등이 문제임.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군의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역내에 활용 가능한 민간 의료지원도 최대한 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뒷받침, 민간병원과의 협약 등이 필요함.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조치해주어야 함.”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기록 발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유공자, 공상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록이며, 그 이유는 자신의 부상이 군 복무와 직, 간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은 군 보통전공사상 판정과 국가보훈처의 재해보상심사 결과가 달라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의료기록이다. 따라서 병사들에게도 소속 의무대, 병원, 민간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소멸되기 전에 사본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는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 군에서 전공 심의 담당자들도 의료 기록 전산화 및 수요자 중심의 발급 체계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한 공상 업무 담당자는 한 민원인에 대한 서류를 국회, 국방부, 국가보훈처, 민원인 등 3~4 곳에 보냈던 사례도 있을 만큼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 소모가 심하다고 지적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 키오스크 등 민원발급기계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이 진화하고 있는데, 군은 아직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방부, 각 군, 의무사 차원에서 전자민원 발급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민원인과 담당자의 행정 소모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한 군 병원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 직접 출동하여 관리하는 가칭 ‘환자전담 지원팀’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원팀은 환자 가족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대령 또는 중령급 과장, 4급 군무원이 센터장을 맡고 그 아래 부상, 공상처리 안내, 민원 행정을 담당하는 3~5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상기 팀에서 군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위중한 병사 가족의 경우 1대1로 관리해서 전공상 신청 행정 절차 안내 및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지원팀 조직은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장교가 아닌 3~5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고참 부사관, 군에서 보훈,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제대 군인들을 5~7급 군무원으로 선발해 전담 직위를 신설해 운영하는 방안이다.³⁶⁴⁾

364) 육군의 경우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중 진료권 보장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부로 육군 군단에 의정장교와 간호장교 1명씩 신편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작사 및 육직부대에는

셋째, 국방부 보건정책과, 국군의무사령부 기획관리처 차원에서 국군춘천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대전병원 등 권역별 군 병원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³⁶⁵⁾ 또한, 군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군 의료 업무 관계자 조사 결과 군 의료기관 근무자들은 순환보직 및 단기 근무자가 많아 의료기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고 언급한다. 군 병원 인력의 잦은 이동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며, 해당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³⁶⁶⁾

또한, 군 병원에서 의료장비와 시설이 보충되어 MRI, CT 등 검사도 가능하게 되었지만, 결과 확인을 하는 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병사, 간부를 막론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고, 필요시 민간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과정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거에 비해 자신의 몸이 아플 경우 간부에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군 조직 특성상 선임, 간부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³⁶⁷⁾

넷째, 간부에서부터 병사들까지 군 병원 진료에서부터 필요시 민간 병원 치료를 받고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했어도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가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환급되고 있다.³⁶⁸⁾ 군복무 중 질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병사들의 민간병

미편성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65) 그러나 군 의료시설 확충은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산병원, 원주병원, 부산병원 등 군 병원이 해체되고, 대구병원, 함평병원 등은 감편되고 있어 군인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사단급 의무부대에 CT를 보급하는 등 응급질환 식별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66) 이를 위해서는 장기 군의관 및 의대생 중 군장학생 선발 등 유인대책을 마련하여 숙련된 군의관을 더 많이 확보하고, 군 병원에서 야간 응급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67) 일부 군 관계자는 일부 병사들은 이러한 권리를 악용해서 피병을 부려 업무를 회피하거나, 제대를 하고 싶어 무턱대고 아프다고 하는 일탈 행위도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장병, 간부의 의료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휴가 제한 등 징계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68)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장 민간의료기관 진료 등 제39조의 2 진료비 지원범위를 보면 [별표 8] 민간의료기관별 진료비에 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 최대 80%지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 치료비 지급기준을 국군수도병원 능력 초과가 아닌 부대 인근 군 병원 능력 초과로 기준을 낮출 필요도 있다.

간부들의 의료 여건 보장도 시급하다. 간부들은 민간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 치료비 지원과 보상금 지원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군 간부는 공상 판정을 받아도 폭발, 탄약취급, 재난구조 등 특수직무공상이나 전상이 아니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또한 장애보상금 대상이 되어도 전역 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군 생활이 많이 남은 간부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비공상 판정을 받은 간부는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특수수술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부들도 일반 공상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지급 시기도 전역이 많이 남은 경우 조기 지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상사고 시 군 병원에서 수술할 경우에는 특수수술재료비도 군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결과

사망 장병 유가족 심층면접은 국가인권위 추천 유가족 6명, 연구진이 섭외한 4명 총 10명을 진행하였다. 사망 장병 유가족들의 경우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상처를 되새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유가족의 언급을 최대한 많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는 국가 및 군 당국에 대한 서운함, 소송을 통한 공상 인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살아야 하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관심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국가 및 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모든 유가족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망 통보, 장례, 수사, 공상 신청 등 과정에서 명예보다는 비참함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경험에서 기인한다. 특히, 사망 유형을 구분해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유가족들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故 홍 일병의 경우 2015. 8. 군에 입대해서 2016. 3. 24.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어머니는 자녀가 3. 22. 국군 춘천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에야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고, 불과 이틀 만에 자식을 잃는 경험을 했다. 홍 일병의 경우 2016. 3. 6.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연대 의무중대 진단을 받았는데, 국군춘천병원에 외래를 간 날짜는 3. 22.이다. 홍 일병은 병색이 완전한 상황에서 부대 훈련에 참여했으나 현행 작전이 아니고, 기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군인들을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순직 3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군에서 사망 사고를 겪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본인의 심리도 불안정하지만, 손자를 잃은 조부모, 남편, 형제 자매 등 가족 해체를 겪고 있는 가족도 많이 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아버님은 시간 나면 혼자서 현충원에 가서 손자를 보고 오실 정도로 상실감이 크셨고, 최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최근 언론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가족들을 찾아서 보훈을 한다고 나오는데, 국가에서 최근에 사망한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순직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강원도까지 몇 번 다

녀왔는지 모르며, 몇몇 의원실 보좌관의 도움으로 국방부에 문의하니까 받아보지 못했던 자료들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군에 대해 다시 실망하게 되었다. 최근 언론에서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서 돌아가신 공무원도 순직 인정을 해 주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국방부는 왜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않고 사망에 관해 선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유가족이 소송 등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서류 발급, 입증을 위해 증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든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소송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 과정, 증인을 구하고 부대에 연락하는 등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많이 지치게 된다고 언급한다. 홍일병 유가족의 경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행정소송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소송 준비에만 몰두하다 나머지 가족들을 신경 쓰지 못해 가족이 해체될 거 같은 위기도 경험했다고 언급한다. 최근 5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한 어머니의 언급은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 준다.

“5년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살고 있는 경북 지역에서 서울을 몇 번 오갔는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넣어 가지고 다니던 검정 가방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왔다 갔다 했다. 국방부, ○○사단(소속 부대), 진상규명위, 국가인권위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개인적으로소송 막바지에 최근 제대를 한 간부에게 연락이 왔다. 제대한 간부가 증인으로 나타나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데리고 간 사실 등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5년간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 ‘재해사망군경’ 유족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심정은 권투 경기 12라운드 끝난 후 승리했는데 이겼다는 생각이 안 든다. 패잔병 같고, 허무하며, 인생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웠다는 생각까지도 든다.”

2. 문제 및 개선 사항

가. 문제점

군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군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층면접에 응해준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라는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슬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 결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은 죽음의 등급을 구분하고, 순직 관련 재심 신청 시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사망 유형에 따라 보상 액수에 차별이 존재하는 제도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유가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 서류 발급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부대, 군 병원, 각 군 본부 등을 왕래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짧으면 1년, 길면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폐해지고 지치며, 설사 승소를 한다고 해도 허무한 심리적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군인은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망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사망, 장애에 대해서는 단지 위로금 성격의 재해보상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그 중에서 별도의 심사로 유형을 구분해서 보훈보상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결국 구체적인 직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중에 발생한 재해 외에 일반적인 병영생활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없다. 본 연구 이론 부분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군복무 중 사망시 유가족에게, 재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아래 논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병사들의 처우와 복지 또는 권리를 위해서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는 병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에게 안전한 복무환경을 제공하고 병역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사고질병과 같은 재해로 인한 생명 신체의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데도.....정작 권리인 군복무로 인한 생명 신체의 피해에 대한 열악한 보상수준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모순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 재해로 인한 생명 신체의 피해에 대해서 실질보상 또는 정당보상을 보장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장병과 그 유가족에게 전가하면서 단지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상하거나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며 국가의 책임회피와 같다. 사법부는 군 복무자의 생명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회보장적 급부로 국가의 재정형편과 입법재량에 의존하는 권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은 헌법의 기본권리체계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로서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입법기관은 보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보

상내용까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합당하지 못하다. 현재 장병이 처한 현실에서 시급한 과제는 급여의 상향보다 열악한 재해보상을 법의 이념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³⁶⁹⁾

둘째,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 부상 사고 관련 가족에 대한 보상, 심리 지원 등 규정이 부재하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를 안전사고와 부조리로 인한 군기 사고로 구분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훈련,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데, 최근 3년 간 통계에 의하면 군기 사고에 비해 1/3 ~ 1/4에 이를 정도로 많지 않다. 안전사고의 경우 공상 및 유공자 선정 등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 유가족지원팀이 해당 부대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육군본부에서 군 사망, 부상 관련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해온 간부는 지원담당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군에서 사망 사고발생 시 사고대책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조치하는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음.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육본 차원에서 지원반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피해 장병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피해 장병과 가족의 입장에서 제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개념의 지원담당 전문가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육군 전체의 부대 수요를 고려할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됨. AI 시대를 고려하여 AI로 지원챗봇 서비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⁷⁰⁾

군복무 중 자살을 경험한 유가족은 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가족이 가혹행위 등 내부에서 발생한 책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책임자 처벌 및 국가보훈처 재심 소송 등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가기도 전에 군과 국가에 대한 원망이 더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든 심리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369) 권영복, 이철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2022, p. 138 참조.

370) 위의 인용문은 병영문화개선 TF에 참여했던 현직 간부의 언급 내용이다.

나. 개선 사항

첫째, 국선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심리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한 유가족은 예측하지 못했던 자녀의 죽음으로 정신 없이 장례 등을 치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으며,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무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또한, 순직 판정을 받기 이전이라도 가족들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 5개 지방보훈청에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국가유공자 유족 중 23.6%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유족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³⁷¹⁾

둘째, 유가족 지원팀 인력을 확충해서 장례, 안장은 물론 공상 신청 등 사후 처리 과정까지 전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가족들은 군의 수사 및 결과 브리핑을 듣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간부의 발언이 수사의 진행, 원인 규명을 통해서 밝혀진 사안이면 달라질 수 있으나, 가족이 증거를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경우 가족의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불신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법률적 지식이 많은 가족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족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은 보도가 많아지고, 그 결과 각 군 및 국방부 차원의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는 관행은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371) 군 복무 중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며, 스스로 위축되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응한 유가족들의 경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어머니들과의 만남, 국가인권위 등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강선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 152호, p. 4 참조.

이런 사안은 정부의 노력 및 국회의 도움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한다. 사실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 등 각종 부조리로 인한 자살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함께 출동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출동해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변화이다. 이제는 군 지휘관이 사안을 은폐,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²⁾ 2014년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되었고,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발생 후 군 사법제도 개편 및 국가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언론과 국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재판과 소송을 고독하게 진행해가고 있으며, 이런 사안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유가족은 자녀가 사망한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을 찾아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후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방부는 법 개정예 따라 군 사망사건 발생 시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군 방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망 사건 발생, 특히 자살의 경우 대부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군 인권보호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군 사망 사건 발생 초기 군 인권보호관이 초기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유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이 상대적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상담, 서류 발급 등 과정을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372) 군에서 총기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목격자 진술이 바뀌고, 현장 상황이 조작되었다는 의구심으로 20년째 군 병원 냉동고에 있는 함 모 이병 사건처럼 사망 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검증 및 동료 병사들을 면담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시사저널, “16년째 군 병원 천막 떠나지 못하는 의문사 유족들”, 2018.8.8. 참조.

제4절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결과

각 군 및 보훈업무 담당자 20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육·해·공군의 사망 및 보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면담하였고, 육군 유가족 지원팀 담당자, 해군에서 특수 훈련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부대장,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군 사망, 부상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수사관, 군 인권 개선 TF에 참여했던 관계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국가인권위 관계자 등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각 군 및 보훈업무담당자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군 사망, 부상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례와 안장 등에 있어서 유가족의 명예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장례비용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의 경우 지원하는 장례비용이 550만 원에 불과한 데,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를 경우 1,000~1,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유가족지원팀 관계자 및 각 군 담당자들이 장례비 지원 현실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망자 발생 시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초과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게 되면 명예롭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³⁷³⁾

둘째, 사망, 부상자 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상이 아닌 일반 사망은 자살과 안전사고로 구분된다. 자살자중 순직 처리가 된 인원은 사망보상금 약 1억 3천만원과 병 전우사랑 위로금 1억이 지급되는 데 반해,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되어 병 사망위로금 3천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보상금 1억이 지급된다.³⁷⁴⁾ 따라서 의무복무

373) 육군 담당자들은 사망자 발생 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게 장례 비용 관련 설명을 할 때 본인들도 난감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조 업체는 손해를 보면서도 홍보를 위해 육군이라는 조직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현 계약이 끝난 후 현 업체는 물론 다른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언급한다.

374) 심층면접 결과 일반순직 시 사망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많았다. 사망 보상금은 1950년~1960년대 1,100만원, 1970년~1997년 약 1,300만원, 1997년~2010년 8월 약 4,000만원, 2010년 8월~2013년 6월 1억 600만원, 2013년 7월~현재 1억 899만원이다.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

자로 입대한 병사들 유가족의 경우 보상금 외 적절한 보상이 없어 유족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유가족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소송 등 과정을 통해서만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셋째,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 유형 구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았다. 현재 전사자, 순직자 I·II·III형, 일반사망으로 구분한 것을 전사자, 순직자 I형, 순직II·III형 통합, 재해사망(개인적 원인 부대 내 사망), 일반사망(위법행위 및 사망 장소 고려 재해사망)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순직II·III형을 통합함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고, 일반사망자도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 재해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살자에 대한 순직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일선 부대에서는 일선부대, 각 군 본부, 국가보훈처의 처리가 다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일부 관계자들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순직처리 관련 부대의 설명과 처분 결과가 달라지면서 군이 유가족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언급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군을 불신하게 되고 지휘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언급한다.³⁷⁵⁾

넷째,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되, 징계 양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과도한 징계 등으로 지휘관의 기본권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군에서 사망, 부상 사고 발생 시 언론 보도로 이슈가 되면, 부대 지휘책임, 책임간부 징계 등에 영향을 준다. 지휘관으로서 과실, 책임이 있다면 신상필벌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징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그 형량이 위중하

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담당자는 순직 처리된 사망보상금은 2억 이상, 자살자 중 일반사망자는 5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75) 가령 모 군에서 평소에 자살 징후가 있던 병사가 장교에게 질책을 받고 자살을 한 사안이 대표적이다. 부대에서는 부모님께 순직처리를 약속하고 장례를 치렀으나, 본부에서 재조사 후 일반 자살 사고로 판정하여 공상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부모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부모가 반발하여 언론, 대학 총학생회,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군과 장교를 비판하면서 장교의 경우 재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았으나 장교의 가족은 우울증과 PTSD 등으로 현재까지도 고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게 적용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일선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간부들은 수 주에서 몇 달간 사고처리 과정에서 출퇴근, 의식주, 수면 부족 등 기본적인 제약을 받는 고충을 토로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군대의 존재 이유가 정상적인 전투 준비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의 전투 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언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문제 및 개선 사항

각 군 및 보훈업무 담당자들과의 심층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의료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간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소속 부대 군의관과 지휘관의 허가,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서, 필요시 자비 부담 동의 등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 희망서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군 병원 차원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일선 지휘관이 필요시 청원휴가를 30일까지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⁷⁶⁾

최근 각 군에서는 작전 상황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각 군 본부에서 종합지휘를 하는 응급상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과거에는 일선 부대 내에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 최근에는 헬기 후송 등을 신속히 결정하는 등 응급상황 관련된 조치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일선 중대, 대대급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단기복무 군의관이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장기 복무가 가능하도록 처우 등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국방예산에서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를 위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의료예산 증가가 필요한지 산출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상담센터, 챗봇, 앱 등을 확대하여 군인들이 상

376) 육군은 하사 이상 군인은 병가 30일 제한은 없지만, 병사들의 경우 병가 30일이 원칙이고 그 이상을 사용하려면 군 병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0일의 병가 사용 역시 처음에는 10일만 사용하고, 10일 단위로 두 번의 군 병원 심사를 거쳐야 30일의 병가가 사용 가능하다. 그 결과 아직도 일선 부대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휴가명령 누락, 군 병원 심사자료 누락 등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담을 받고 군 병원 및 민간 병원을 연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이 군사경찰과 함께 수사하는 사법제도 개편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업무 관계자들은 사망자 발생 시 수사 결과에 대한 가족의 불신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한바,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가족 전담 조직과 인원을 확대해서 가족들에 대해 장례, 안장, 보훈 심사 등 절차를 패키지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재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군 및 보훈 업무 담당자들은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 특히 자살의 경우 부대 지휘 책임, 담당 간부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로 인해 부대적 요인을 찾아 처리를 요구하는 가족과 부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도 많다고 언급한다.

유가족지원팀 관계자들은 장례를 치르고 순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안장을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해 2~3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언급한다. 또한, 순직이 의결되어도 고인의 범죄 등 기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만약 범죄나 징계 등 기록이 있으면 안장이 거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족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가족이 납득하기도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고충도 언급한다. 만약 가족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가족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육군은 상설조직 ‘유가족지원팀’ 인력을 확충하고, 해·공군은 3~5명의 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³⁷⁷⁾ 현재 사망자 발생 시 상설조직으로서의 유가족지원팀

377) 육군 유가족지원팀은 2015년 육군 인사사령부 산하 3명의 조직으로 창설되었고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유가족을 전담해서 설명하고, 보훈 및 보상 관련 행정서류 준비 및 안내를 해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군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에 호국보훈담당, 전공상업무담당 각 1명의 장교가 담당하고 있다. 공군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에 사망자, 전공상업무담당 각 1명의 장교가 전담하고 있다. 전직 육군 인사사령관은 유가족지원팀이 그동안 육군에서 수십년 간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만들어진 조직이며, 우수한 부사관 및 군무원을 선발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해·공군의 경우 인력과 사건이 적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부사관 및 군무원 2~3명을 충원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두 개의 조 단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은 육군에만 있는데 1년에 100일 이상 출장을 갈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해·공군의 경우 상설조직도 없고 1~2명의 장교가 순환 보직으로 전담하고 있어,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심의 관련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직부대 등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가족지원팀과 해·공군 간 지휘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육군의 경우 유가족지원팀 인력을 보강하고, 해·공군의 경우 사망자 가족 지원 및 보훈 정책을 전담하는 팀 단위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에서 사망자 발생 시 가족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수사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부상자 발생 시 군 병원, 민간병원, 각 군 본부, 보훈처에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최종 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각 군 본부에서는 보훈처 심의를 위해 공통의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는 행정 수요가 많다. 보훈처는 보훈처 나름대로 전문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각 군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다.³⁷⁸⁾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해 보훈 관련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행정서류 발급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각 군 차원에서는 장기 근무가 가능한 군무원 등을 채용하여 보훈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해서 사망 유가족이나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한없이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 시 유가족 지원팀이 가족을 지원하는 것처럼, 부상자 관련해서도 전상이나 사고 관련 입원한 군인에 대해서는 지원팀을 신설해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군에서 보훈 심사를 일괄 처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³⁷⁹⁾

넷째,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지휘권과의 균형도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의 의식주는 물론 급여 현실화 등 기본 권익 향상에 많은 자원이 투

378) 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부의 사례지만 조기 제대 및 보훈대상이 되기 위해 보훈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현 추세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9) 2020년 4월 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의료전문가 88명, 법률전문가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 사망, 부상의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군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훈심사 제도 개편안 관련 내용은 경선주, “보훈심사 제도 개편안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692호, 2020, pp. 1~4 참조.

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동시에 간부들의 인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심층 조사 결과 많은 간부들은 사망, 부상사고 등 사안이 언론, SNS에 보도될 경우 과도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징계의 양형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 간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군 사망, 부상 사고에 대해 군의 사고예방, 사고대책반 운영, 후속처리에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다만, 장병의 세대교체로 인한 사고 및 생활양식, 인식의 변화로 간부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간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군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특수집단이기에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지휘관의 책임과 권한을 법규적으로 명시해주고, 임무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체득되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³⁸⁰⁾

380) 위의 인용문은 병영문화개선 TF에 참여했던 현직 간부의 언급 내용이다.

제5절 기타 기관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1. 심층면접 결과

기타 기관 심층면접은 경찰청, 소방청 등 기관 관계자, 제대 군인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제대군인 지원센터 관계자, 보훈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변호사, 예비역 행정사, 국회 국방위 보좌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에서 제대한 이후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훈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제대 군인들이 많았다. 특히,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곤란하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들은 국가 및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훈 심사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수입해서 처리하는 로펌(변호사), 행정사무소(행정사) 등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상담을 위해 변호사 등을 찾는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은 본인이 군에서 다친 사실이 명확하고, 근무했던 부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거나, 군 병원 진료 기록이 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심의를 신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심사 결과 보류 및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많은 제대 군인들은 변호사, 행정사 등을 방문해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후 관련 기록을 구비해서 재심 이나 소송을 진행한다.

사실, 국가보훈처의 심사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대 전 병력, 퇴행성 소견, 특이 외상력이 없는 사례, 경미한 질환, 군 복무 중 치료받았다는 사실, 공무 수행과의 인과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다. 보훈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비해당 판정을 받은 제대 군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의 신청을 해도, 기록의 미비,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한다고 언급한다. 특히 본인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공상 신청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부결시 심사 결과에 낙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판정을 직접적인 공무수행, 교육훈련 등 사례를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비교적 심사 진행이 용이하나, 심사 과정에서 개인이 제출하는 1차 기록 뿐만 아니라 소속부대 상황, 직책과 임무, 병원 기록, 의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법률적인 요건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의료, 법률 지식이 없는 제대 군인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사 결과 각 군에서 유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소수에 불과한바, 담당자들 역시 전문 조직을 확대해서 부상자 및 제대 군인 부상자들에 대해 신속한 행정 서류 발급, 절차 안내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둘째, 경찰청, 소방청 등 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험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성상 부상자 발생 시 의료 서비스 지원 및 공상 처리, 사망자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등 관련 전담 부서가 있으며, 교육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는 징집 병사들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직업인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소방공무원들과 대등한 기준에서 비교를 할 순 없지만, 정책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근 들어 경찰청, 소방청 등 기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심리상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배우자 등 가족도 상담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에 따라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군에서도 신속한 심리상담 지원, 간부의 경우 가족이 함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처참한 시신 수습, 생명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 사고 희생자나 환자의 죽음 목격, 동료의 죽음, 자살자 시신 수습, 대량사상자 발생 시 구조 혹은 시신 수습, 아동의 구조 혹은 시신 수습, 본인의 부상, 타인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폭행, 나로 인한 타인의 부상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불면증, 불안장애, 심혈관질환 등 비율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로 심리상담이 가능한 경력직 소방공무원을 채용해 동료간에 상담이 가능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 경기도 등 센터가 설치된 곳도 있으나 없는 권역도 있기 때문에 중앙 및 권역별로 트라우마 및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센터가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우 사망, 부상 사고의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보훈 신청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지도도 높다. 그러나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중에서는 보훈제도가 군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보훈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나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에 대한 진료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으나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지자체 산하 제대군인 지원센터 관계자 면담 결과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대 군인들에게 국가와 사회, 군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희귀질환(CRPS, 다발성 근염, 시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제대 군인의 경우 원인 불분명 처분을 받거나, 비해당 및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해군 특수 부대에서 전역한 지휘관 면담 결과 점프 등 비행을 오랜 기간 수행한 육군 특전사, 잠수 및 수상 훈련을 오랜기간 수행한 해군 SSU, UDT, 해병대 수색대, 소음에 노출된 공군 조종사 및 근무자 등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부상 외에도 이명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으로 인해 제대를 선택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명, 디스크, 관절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으로 제대를 선택한다고 해도, 경제 활동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이된다고 한다. 그 결과 제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고생하는 부하들도 있으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한다. 이들은 장애가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부상자들 보다 공상 처리를 못 받을 확률이 높으며, 그 결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대 군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들이 식별된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변호사, 행정사,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관계자 조사 결과 사병이나 단기 제대한 간부들의 경우 만 18~26세에 불과해 군인복무기본법, 보훈보상제도 등에 대한 법리적 지식은 물론 의료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자체 및 산하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및 의료진을 소개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치료를 통해 삶의 시야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을 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각 군, 국가인권위 등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 센터 및 각종 보훈단체

와 협업해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대 군인들을 발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문제 및 개선 사항

심층면접 결과 군에서 부상을 당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제대 군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상대로 하나의 산업이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수입료가 최소 500만 원은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자격이 없는 브로커 등에게 의존하여 금전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 상처를 받는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각 군 본부에 '보훈 업무 전담팀'을 설치해 현역은 물론 제대 군인이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및 국선변호인을 소개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해주는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 외에도 각 지자체에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상담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 기관과 연계해 주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심층 면접 결과 일부 가족은 군 관계자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국선 변호인이 여러 절차를 안내해 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던 사례도 있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 및 제대 군인들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전문가를 만남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훈 관련 단체 및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3월 24일 개소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경우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담을 신청할 경우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소한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법률상담, 의료상담, 심리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은 센터장은 본인이 해병대 중위로 재직 중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군 본부, 군 병원, 국가보훈처 등을 오가며 보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센터장 본인의 체험으로 부상 장병, 가족 등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 자조모임, 오픈클래스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취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복지재단 산하 변호인, 의료법인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자들의 경우 의료기록 관독을 의뢰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 군, 국가인권위 등에서 이러한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현재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현역들이 상담을 의뢰할 경우 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군 입장에서 잘 모르는 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군 및 여러 기관들은 동 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방부 및 각 군, 보훈 관련 기관들이 제대 군인 예우 차원에서 MOU 체결 등을 통해 협업해 나간다면 군과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제대군인 및 가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돕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³⁸¹⁾

보훈단체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보훈단체가 부상 등을 당한 청년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훈단체들은 매점 운영 등 제한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보훈 관련 지식이 있는 제대 군인, 가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관련 지식이 있는 국가유공자, 청년 간부 등을 채용해서 기업과 병원 사이에서 건강검진을 대행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등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⁸²⁾

셋째, 군,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국가 PTSD 센터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상황,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하는 비율이 여타 직

381)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시 외 경기도청, 인천시청에 문의해 본 결과 제대 군인을 전담해서 관리해주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 북부의 경우 보훈 및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 군인 취업 알선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대 군인 및 보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부재하고 여러 과에 예산이 통합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제대 군인이나 유가족들이 보훈 관련 상담, 치료, 지원 등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82) 보훈단체에서의 보훈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군인의 참여와 제대정책 지원정책 연계를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수입사업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케어 서비스 사업 진출 등을 제안한 논문은 황미경, 이현주, “보훈단체 사업과 제대군인지원정책 연계 방안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pp. 51-52 참조.

군에 비해 높다. 또한, 교대근무 및 순환근무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기 업무 특성으로 인해 수면, 휴식, 식사 등이 불규칙해 신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 사망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공상자의 경우 경찰청 차원에서 유가족에게 별도 장학금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한 부상자의 경우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병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재직자 외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역시 사망 및 공상퇴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각종 시설이용료를 지원하고, 소방공제회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휴일 근무 및 야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소방청은 소방전문치료센터가 부족하며, 부상 정도가 낮은 공상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찰병원만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 역시 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 5개 보훈병원 및 전국의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특성상 일반인 대비 정신건강 유병률이 5~10배 높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우 경력직으로 특별채용된 심리상담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소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직무와 고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한다. 다만 보다 더 많은 소방공무원 및 가족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소방청은 개인에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가족까지 상담을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만, 많은 소방공무원이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PTSD' 센터를 설립해 PTSD 연구, 교육, 현황관리 및 체계적인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 센터가 설립된다면 소방, 경찰 공무원은 물론 군인, 사망한 군인 가족, 부상을 당한 군인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7장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진은 앞에서 II.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III.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제결 및 관례분석, IV.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문제점, V.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VI. 심층면접 및 분석 순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장별 문제점을 간략히 기술하고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권리보장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 및 심사제도 개선방안

1.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관련 법령체계상의 개선방안 : 법령상 용어의 상이성 개선

가. 현실태 및 문제점

「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사망 등에 대한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사망 등에 대한 분류는 그 내용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그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전사(戰死)와 관련하여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사용하는 용어는 유사하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의 경우에 그 대상자에 경찰을 포함함으로써 인해 ‘전사’라는 표현 대신 ‘전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7-1] 각 법률상의 용어 정리

「군인사법」 (제54조의2)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 제33조,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사자	공무상 재해	공무상 사망	전사	전몰군경	-
순직자			특수직무순직	순직군경	-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재해사망군경	
전상자		공무상 부상	전상	전상군경	-
공상자			특수직무 공상	공상군경	-
			그 밖의 심신장애	-	재해부상군경
일반사망자			-	-	-
비전공상자			-	-	-

[표 7-2] 전사(戰死) 관련 용어정의

구 분	용 어	정 의
「군인사법」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군인재해 보상법」	전사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관련 용어에 있어서 「군인사법」에서는 순직을 순직 I 형에서부터 III형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군인 재해보상법」은 특수직무순직과 그 밖의 공무상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국가유

공자법은 「군인사법」과 같이 순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순직관련하여 각 법률이 그 용어의 정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7-3] 순직 관련 용어정의

구분	용어	정의
「군인사법」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u>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u>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u>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u>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u>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u>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군인재해보상법」	특수직무순직	생명과 신체에 대한 <u>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u>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u>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u>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u>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군인사법」상의 순직Ⅰ형과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특수직무순직’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고, 순직Ⅲ형은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 이때 「군인사법」상의 순직Ⅰ형과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특수직무순직’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의 규정과 비교할 때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어 순직Ⅰ형과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

확한 구분이 제한된다. 그러나, 「군인사법」의 순직 I 형과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특수 직무순직의 경우에 ‘타의 귀감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7-4] 전상(戰傷) 관련 용어정의

구 분	용 어	정 의
「군인사법」	전상자	<u>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u> 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군인재해보상법」	전상	<u>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u> 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u>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u>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전상 관련 용어에 있어서는 「군인사법」을 비롯한 각 법률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상관련 용어는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에서 ‘공상’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정의에 있어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순직’ 관련 규정과는 달리 「군인사법」 등과 유사한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표 7-5] 공상 관련 용어정의

구분	용어	정의
「군인사법」	공상자	<u>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u> 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군인재해보상법」	특수직무 공상	<u>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협을 무릅쓴 직무 수행</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u>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u>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u>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u>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나. 개선방안

군인의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법률들의 법체계정립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보훈이 함께 상호 연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군인과 달리 의무복무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위로금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이 절실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인의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은 종국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을 중심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과 「군인사법」 상의 용어 및 인정 기준 등이 통일성을 갖추어 법체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어상의 상이 문제에서 전사 및 전상의 경우는 용어의 상이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순직과 공상과 관련해서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먼저, 순직과 관련해서는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순직과 재해사망으로 단순화하고 순직 I 형을 순직 II 형에 포섭하도록 하여 ‘순직’으로 표현하고, 순직 III 형은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경우에도 「군인사법」상의 순직 I 형에 해당하는 특수직무순직을 ‘순직’으로 표현하고 「군인사법」상 순직 I 형과 순직 II 형에 해당하도록 정의하고,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해사망’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7-6] 순직 관련 용어의 개선안

구 분	용 어		개선안
「군인사법」	순직자	순직 I 형	순직
		순직 II 형	
		순직 III	
「군인 재해보상법」	특수직무순직		순직 (순직 I 형과 순직 II 형 포함)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직군경		재해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순직군경
			재해사망군경

다음으로 공상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상의 ‘공상자’와 「군인 재해보상법」상의 ‘특수직무 공상’은 상호 연관성을 찾기 더욱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 결국 공상에 관한 규정도 「군인사법」의 공상자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한 상이를 입은 사람’은 모든 공무상 부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금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공상’과 ‘재해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군인 재해 보상법」상의 특수직무공상은 국가유공자법의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심신장애는 ‘재해부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의하여 각 용어의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표 7-7] 공상 관련 용어 개선안

구 분	용 어	개선안
「군인사법」	공상자	공상자 (<u>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u>)
	특수직무공상	재해부상자 (<u>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u>)
「군인 재해보상법」	그 밖의 심신장애	공상
	공상군경	재해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상군경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추가하여 법체계정립에 있어서 용어와 관련된 개선안으로 고려해볼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용어의 변경에 대한 것이다. 군인에 대한 보훈제도는 보상과 예우의 2가지 보상체제로 이루어진다. 즉,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체제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예우체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본다면 보훈보상자법은 보상을 위한 법률이 아닌 예우를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는 국가유공자법과 비교할 때 대상의 구별과 지원수준의 차이만 존재할 뿐 규범의 내용의 구성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표현은 이를 예우의 대상이 아닌 보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보상의 대상이 아닌 예우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가칭 ‘보훈유공자’ 또는 ‘보훈예우자’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역시 그 명칭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유공자 지원

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예우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할 것을 제안한다.

[표 7-8] '보훈보상대상자' 표현 개선안

현재 표현	개선안
보훈보상대상자	보훈유공자 또는 보훈예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예우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군인사법」 제54조의2 신설조항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가. 현실태 및 문제점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2022년 1월 4일 신설된 조문으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³⁸³⁾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의 신설에 대해 제·개정이유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②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③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신설은 제한적으로나마 의무복무

383)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는 병의 의무복무 이외에 장기복무 장교는 10년, 비행자격은 15년, 단기복무 장교는 3년, 준사관은 5년,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기간³⁸⁴⁾ 중인 군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자로 분류함으로써 과거 사망자의 유족들이 순직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보통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및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해당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일반사망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에 대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군(軍)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순직 불해당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자해사망’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의 비고의 내용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 형에서 순직 III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인과관계 불명인 의무복무 중인 자의 자해사망’은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

나. 개선방안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신설규정에 의해 사망자의 유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대한 해석에 의한 입증책임을 전환에 불과하며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해당사항’에 대해 그 입증책임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재해보상심사 위원회에 서는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3항에서 전사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군인사

38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병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포함하여 해당 인원의 당시 여건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60조의 23 제2항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추가하여 ‘…(생략)…말하며, 해당 사유에 해당함을 보통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 7-9]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 개정안

현 행	개선안
<p>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부담한다.</p>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고’의 내용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8년 2월 13일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으로 제·개정 이유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순직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서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원인불명의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 순직인정의 가능성을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의 ‘별표 8’의 내용에 의하면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의 사망이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보통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순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원인불명임에도 일반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사망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와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로 사망한 경우,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및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직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다면 의무복무기간 중인 군인의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순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비고의 내용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략)…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순직결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결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하여 심사를 통하여 순직유형을 결정하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심사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10]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의 내용 개정안

현 행	개선안
<p>※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생략)… 인정할 수 있다</p> <p>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I형, 순직 II형 및 순직 III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순직결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결정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절차상의 개선방안

가. 현실태 및 문제점

군인의 사망 등의 보상 및 보훈을 위해서는 각각 「군인사법」 상의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각군 소속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국방부 소속의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례는 각 심사절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라고 판시하여 「군인사법」 과 「군인 재해보상법」 상 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절차상에 있어서 군의 심사결과와 국가보훈처의 심사결과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판례가 이미 명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군 사망자의 유족이나 상이자가 군의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차후에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할 때는 적어도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의 사망 등에 대한 확인(전사상, 공사상 등)의 결과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결정을 기속할 수는 없지만, 군의 확인결과가 보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 심사절차 사이의 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심사절차상의 개선방안

심사절차상의 개선방안 중 첫 번째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대상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중 어느 하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 신청절차의 경우에 신청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군인의 경우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전공사상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필요한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및 유가족이 해당 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심사결정에서 순직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각 군 및 국방부의 담당자가 당사자 및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순직 등 결정을 받은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각 군 및 국방부 소속 담당자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간소화하고 신청 대상자들의 절차상 편의도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³⁸⁵⁾

두 번째는 심사에 필요한 필수서류에 대한 부분이다. 심사절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8에 근거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의의결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군인의 경우 그 소속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이에 전공사상사 처리훈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

385) 일종의 ‘신청 간주(의제) 제도’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제도의 경우 신청간주 대상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 가족(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말한다.

인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확인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첨부가 가능하나 그 내용 자체가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7-1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제 호		(사망자용)		
사망자	성 명	계 급	군 번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입 대 일	
	사 망 연 월 일		사 망 장 소	
	사망원인 및 원상병		해당기준번호	
유 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경위(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부족하면 별지 첨부)				
확 인 관	소속	계급	직위	성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참 모 총 장				

반면, 상이 및 사망에 대한 유가족 통보 시에는 [별지 11]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록 #1의 결정서의 양식과 내용을 보면 결정에 대한 이유 및 판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사법」상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장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내용을 위의 결정서로 대체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시에 해당 결정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하여 심사절차에 있어서 「군인사법」에서부터 국가보훈처 심사까지 연결성을 가지며 본인 및 유족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

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원의 공유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각각 그 독립성을 가진다. 군의 전공사상심사 결과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보훈심사결과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예우와 관련된 것으로 각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심사가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전혀 상반된 심사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군의 전공사상심사 결과와 보훈심사결과의 상반된 심사결과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또는 군재해보상심의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또는 양 기관의 협업을 제안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자격요건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약 4배,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약 2.5배군의 위원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을 상호 공유할 경우에 양 심사 간의 불일치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1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비교

구 분	위원회구성	위원의 위촉	외부전문가의의 자격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13명~50명 (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외부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들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수 있는 군인

			6.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13명~80명 (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외부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 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 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 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훈 심사위원회	210명 이내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보훈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 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2.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 상의 소방공무원이나 대령 이상의 장교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의사의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방·경찰·소방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 사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독립·호국·민 주 등 보훈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제2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훈 관련 재결 및 판례분석 결과 개선방안

1. 국가책임의 확대로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과실상계 개선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하여 징병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점에서 군인이 복무 중 목숨을 잃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의 헌신으로서 사망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³⁸⁶⁾ 그런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군 사망자의 경우 사망 시간·내용·경위·형식에 따라 전사·순직과 일반사망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어 다른 예우를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달리 예우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세계 경제 10위 규모의 국가로서 국가책임의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닌가 한다.

군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군대는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그러한 제약과 폐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인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지닌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군인도 불법적이거나 불합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더욱이 다른 군인으로부터 폭력·폭언 및 가혹행위를 당해서는 안 된다. 군인의 생명은 전쟁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평시에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군인의 사망사고로부터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차별행위·각종 폭력 등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군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거

386) 이상경,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2쪽 이하 참조.

나 군 복무를 하면서 그 정도도 인내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思考)는 자연적으로 국가책임의 확대로 귀결되며,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과 과실상계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책임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예우 및 보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과 자해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고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집단이므로 군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아 증거가 은폐되기 쉽고, 관할 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보상과 예우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자료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가해자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위험영역 이론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라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보훈보상 체계를 정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자해사망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배상권리자(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의무자(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국가배상 판례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자해사망자에 대한 과실을 70~80%로 책정하고 배상의무자인 국가의 책임을 20~30%로 제한하고 있다.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군 자해사망 사건들은 다른 사안에 비해 국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 국가배상에 관한 판결,³⁸⁷⁾ 산업재해피해자 국가배상에 관한 판결³⁸⁸⁾ 및 기타 환경에서의

38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등 참조.

388) 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 등 참조.

자살에 관한 판결³⁸⁹⁾과 비교하면 자해사망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과실상계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적어도 다른 손해배상 유형들과의 형평에 맞도록 원고 측 과실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인정(처분성 인정)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³⁹⁰⁾ 처분의 개념적 요소로서 행정청의 행위, 법적 규율, 대외적 행위, 공법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공권력의 행사 등이 요구되는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외적 행위(대외적 효과)”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는 외부, 즉 국민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상급관청의 지시나 상관의 명령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다.³⁹¹⁾

대상 판례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원고의 동생인 망인은 1987. 9.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88. 8. 12. 00:15경 155mm 자주포 포신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 23. ‘망인은 소속대 전입 이후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되었으나 선임병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거나 각종 일차려와 갈굼, 무시를 당하여 적응장애 현상을 나타내다가 점차 우울 상태가 심화되었고, 적절한 치료관

389)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등 참조.

390)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등.

391)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143쪽 이하.

리를 받지 못한 결과 그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1. 8. 망인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별표 1]의 전공사상분류 기준표의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심사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을 받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거나,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또는 특별진급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망인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참고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³⁹²⁾

검토컨대, 위 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해당사건에서 육군참모총장의 통보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³⁹³⁾

첫째,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제1항),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전사·특수직무 순직·그 밖의 공무상 사망에 따라 달라진다(제2항).

둘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되나,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위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항 제2호). 현역군인인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장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

39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393) 이하의 내용은 대상판결의 전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0976 판결 참조.

처장 등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장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실무상 국가보훈처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자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각 군 본부의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국방부 중앙심사위원회의 순직 여부 판단에 사실상 기속되어 국립묘지 안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즉, 위 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 해당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위 각 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의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장대상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

셋째 「군인사법」에 의하면, 진급과 관련하여 제26조는 각 계급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제29조는 장교의 진급 절차와 관련하여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결정 등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고(제30조 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군인사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예 따라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등병·1등병 및 2등병에 대해서는 1계급 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제6호).

위와 같이 중앙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은 사망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진급 등과 관련하여 유족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구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순직군경의 처우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는바, 피고가 그와 같이 순직비해당결정에 관한 불복절차를 안내한 것은 위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 판결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확인적 행정행위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결도 있는바, 이 판례는 대상 판결과 배치된다.³⁹⁴⁾

더 나아가 대상 판결은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제54조의3(전공 사상 심사위원회)가 신설³⁹⁵⁾되기 전, 즉 법률의 근거없이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2014. 8. 28.자 국방부훈령 제1691호)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이 유족에게 한 통지의 처분성 여부가 쟁점이었다.³⁹⁶⁾ 그러나 2015. 6. 22.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전사자 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법률의 형식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도록 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법률유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인 본질사항유보설 내지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본질적 사항의 여부는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

39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395) 「군인사법」에 전사자 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규정된 것은 법률 제13352호로 2015. 6. 22. 일부개정되어 2015. 9. 23. 시행된 이후이다.

396)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 8. 28. 일부개정, 2014. 9. 1. 시행) 제8조(사망확인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 별표 1의 기준번호 1-1호부터 2-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 가. 사망자 연명부 1부.
 - 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유족에 대한 통지 : 별표 1의 기준번호 1-1호부터 3-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사망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 사망자 현황(별지 제8호 서식)을 그 다음해의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확인업무 담당관을 임명하고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과 확인업무 담당관의 인감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므로, 행정규칙으로서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근거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유족에게 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있었으나, 2015. 6. 22.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법률로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판례]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판례 :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② 국회전속사항(國會專屬事項)의 위임금지에 관한 판례 :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군규정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국가책임의 확대 측면에서 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확대함이 타당하다.

특히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심의·의결, 결정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 국민참여 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군인사법」상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도 반영하여 권리구제를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는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처분성 불인정 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또는 순직유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모든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고,³⁹⁷⁾ 그 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⁹⁸⁾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공행정 주체이어야 하고, 그 작용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방을 제약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와 같이 공권력작용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모든 국가작용은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은 공적 주체가 군복무 관련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결정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순직자의 경우에는 승진도 가능하므로, 군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자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이 갖는 자긍심은 단순히 유족의 내면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³⁹⁹⁾, 사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외적 명예에 해당하여 유족의 평등권, 명예권 등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상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중앙전공 사상심사위원

397) 헌재결 2001. 3. 21, 99헌마139; 헌재결 2014. 9. 25, 2013헌마424 등.

398) 헌재결 2012. 3. 29, 2010헌마599 등.

399) 헌재결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회의 순직미해당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군인사법」,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 개념의 불일치로 인한 순직 여부 심사의 광범위한 재량의 통제 필요성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인이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개념은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순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군인사법」상의 순직은 순직Ⅰ형(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가운데 순직Ⅲ형은 규정상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순직이 아니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인(군인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

한편, 2022년 1월 4일 개정되고 동년 7월 5일 시행된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동법 제54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순직에 해당하더라도 그 순직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예컨대, 심사를 거쳐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해 순직으로 결정되고 동조 제1항에 의해 순직Ⅲ형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인이 아니라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 군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직개념의 불일치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동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해사망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폭이 매우 넓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법령상 규정된 순직 개념의 불일치에 더하여 순직 유형도 달라질 수 있고,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순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해사망의 경우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비해당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보훈보상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는 없는가 하면 완전히 그렇지 않고 판례상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다만, 해석상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자해사망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징병제에 의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다가 자해사망한 경우 국가책임의 확대를 전제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의 전향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 개념을 초과하는 시행령(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행령의 문제)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인이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조항이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 된 것은 2011. 9. 15. 동법이 순직군인의 요건으로서 직무를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에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의 범위를 구체화·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2-1부터 2-8까지 ‘해당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이라는 문언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이라는 문언으로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질병에 관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어야 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⁴⁰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동법 제4조 제2항은 세부적으로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여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과

400)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상위법령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도하게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규정도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상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라는 문언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언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관련 규정	현재	개정안
2-1~2-8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8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제3절 군 사망·부상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 개선방안

1. 「군인사법」 순직등급 구분 삭제 및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 일치화

가. 「군인사법」 순직등급 구분의 차별 삭제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구분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망인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행정적 용도로만 활용될 뿐 군인과 유족에게는 실익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나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국방부는 순직등급을 구분함으로써 군인의 숭고한 죽음을 차별하고 이로 인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군인사법」의 순직등급 차별항목을 삭제하고 ‘순직’으로만 명시하여 숭고한 죽음을 엄숙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심사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해당여부 의견을 통보할 때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내용을 활용하면 된다. 오히려 하나의 공통된 기준표를 활용하여 망인을 평가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협의하여 새로운 분류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방부의 순직 분류표가 세분화되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분류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상 국가보훈처에서 심의하는 국가유공자 심의 대상의 90% 이상이 군인임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 일치화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을 일치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검토한 바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정’에 대한 정의 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절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심사대상을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분류한 자에 한정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방부와 국가보훈

처 양 부처가 공통의 시각으로 군인의 순직을 대하는 대국민 신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순직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순직의 개념을 한정시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범주로만 제한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같은 국가기관인 국방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 복무를 하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왜 순직자로 부를 수 없는가? 군에서 순직으로 분류하고 예우하는데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동일한 죽음을 순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순직자는 맞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의 가슴을 짓밟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군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족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재해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등 이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군인의 죽음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은 망인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와 같다. 국가가 가족을 잃고 비통해하는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인의 입대에서 국립묘지까지 군인의 복지, 예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죽음을 담보하여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을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군인의 역할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의한다면 군인의 죽음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여 재해사망이라는 용어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에 대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건실한 국가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협의하여 「군인사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개념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군인 재해보상법」상 수급권자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및 유족의 범위 개선

가. 「군인 재해보상법」상 수급권자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군인 재해보상법」의 유족의 범위에 기존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다. 형제자매는 25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누락 없이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형제자매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도 자동으로 수급권자가 되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순순위자만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할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법 개정에서 따른 예산의 소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유족의 범위 개선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의 ‘부양’을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순직군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던 경우는 결혼한 군인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부양의 표현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무복무자 등 미혼자로서 순직자가 된 경우 이들이 부양하던 가족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피부양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양의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 부양이라는 용어에 천착하여 유족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군인 재해보상법」의 부양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라고 여겨진다. 장기복무자와 의무복무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유족의 복지를 위해서는 ‘부양’의 용어를 ‘생계를 같이하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일반사망자 지원 확대

가. 의무복무 사망자의 순직 처리 확대

의무복무자의 복무환경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순직등급을 분류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행위 자체가 적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사망은 순직 처리가 마땅하다. 자해사망자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대적 요인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의무복무자의 사망 시 일반사망 분류를 최소화하여 망인과 유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보훈심사에도 반영되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인 국가는 군인의 죽음에 적합한 예우와 보상을 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나. 「군인사법 시행령」 일반사망자 분류기준 축소: ‘군무이탈 및 무단이탈 중 사망’ 삭제

전공사상심사에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그것이다. 의무복무자의 경우는 24시간 통제된 병영에서 생활하므로 할 때 고의나 과실, 위법,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를 최소화하여 판단해야 한다. 과실이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있겠으나 이를 통제하지 못한 부대 책임도 있을 것으로 군인의 죽음을 단순 일반사망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부대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자살한 경우는 순직인지 일반사망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영내에서 사망하면 순직이고, 부대를 이탈하여 영외에서 사망하면 일반사망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입법의 취지를 살려 부대요인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할 경우는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무지 이탈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도 안 되며 사망원인에 따라 책임소재와 사망 구별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일반사망자 분류에 관한 시행령 중 ‘근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 항목 삭제가 요구된다.

다. 「군인 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에 의무복무자 포함

「군인 재해보상법」 보상대상에 의무복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는 병사의 경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군인연금법」에서 분법되기 이전 「군인연금법」에서도 동일한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리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용범위는 「군인연금법」과 다르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의무복무 병사를 「군인 재해보상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간부가 아닌 병사라는 이유로 적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병사도 군인이므로 급여의 수종 등이 다른 신분의 군인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보상 등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4. 독립적 조사기관 설립·운영

가. 수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군 수사기관 개혁과 독립적 외부 조사기관의 설립 필요성

2021~2022년에 걸쳐 군은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제대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군사경찰단과 검찰단으로 새롭게 재편하였다. 특히 군사경찰은 군사경찰 부대의 수사 기능을 작전 및 예방·안전활동 기능과 분리하여 수사는 새롭게 창설된 각 군수사단에 귀속시키고 예방·안전활동은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를 통해 지휘관들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의 자정노력 효과는 앞으로 수사 결과로 입증될 것이다.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각 군수사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제대별 지휘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조치는 필요한 개혁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혁조치만으로 국민이 군 수사·조사기관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군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더라도 군인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자타가 동의하는 바다. 이러한 군의 습성은 전역자들도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들이 미래의 유가족이 되어 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심정적 부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의 수사결과 망인의 죽음이 애인 변심이나 복무 부적응 등 개인 요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군의 수사가 완전했으니 주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면 가혹한 처사일 것이다. 일말의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망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는 군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다시 한번 조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잃고 비통해하는 부모에게 마치 신문고를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사기관이 필요하다.

나.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지켜보며 추가 조사기관 설립 여부 판단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축소된 형태의 독립된 조사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군을 감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억울한 희생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독립된 조사기관을 말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특징은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군인권보호위원회 신설, 군인권교육 특화 그리고 군부대 방문조사

권을 갖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 등이 사망 시 인권위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군인권위원회는 신속대응조사팀을 구성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망사건에 조기에 개입하여 유가족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군인권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옴부즈만에 비하여 군내 인권침해 예방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5. 의무복무자 전공사상심사 및 국가유공자 심사과정 일부 통합

우리나라는 군인이 사망시 국방부에서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순직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를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군인들과 유족들은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심사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등록심사서를 제출해야만 심사가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족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자동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는 불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망 군인의 직무수행성 판단을 위한 보상·보훈체계의 역사성을 볼 때 국방부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심사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바, 두 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먼저 간부와 의무복무자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군 간부는 국방부 외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고, 의무복무자는 순직 시 전공사상심사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논스톱으로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군의 전공사상심사 결과와 사망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에서 공유함으로써 유족의 입증책임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유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항목을 ‘현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

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의무복무자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대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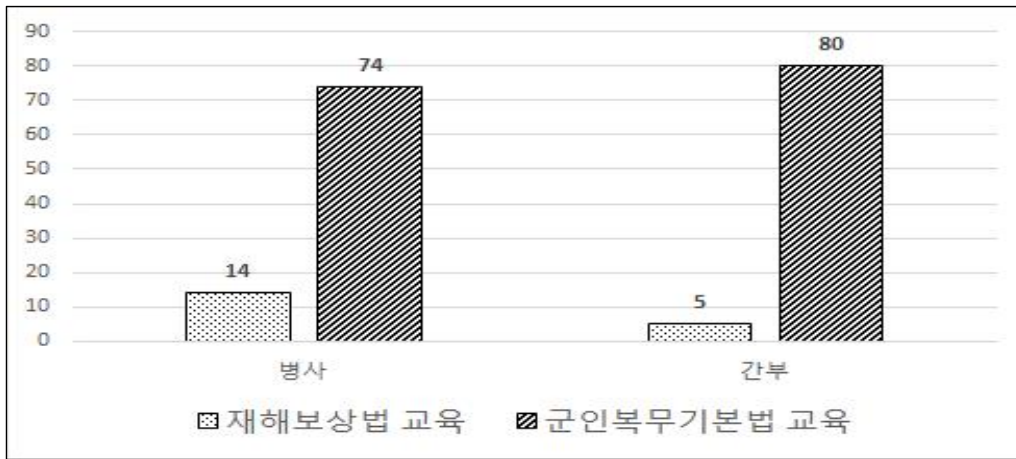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1. 보훈보상제도 장병 양성교육 기관 등 체계적 교육

보훈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 장병 모두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입원한 병사나 간부도 입원한 이후에 병실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반면에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서는 소속부대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 생활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에 공상 처리나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 아는 것이 없어서 매우 막막한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⁴⁰¹⁾

[표 7-13] 재해보상법과 군인복무기본법 교육여부 비교

(단위: %)



국방부에서 현재 부대에 배포되고 있는 교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제작한 「병 복지 길라잡이」가 있다. 이 교재는 부대에 배포되어 병사가 참고하도록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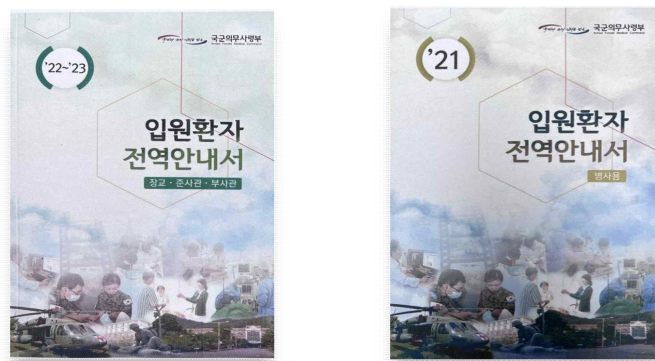
401)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은 예비역 중위의 경우에도 북한군의 발목지뢰로 부상을 입은 후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없어서 매우 어렵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대대급 초급간부와 병사에 대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보상 분야의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신청절차와 사회적응 지원 분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에게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휘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7-1] 국방부 발간 「병 복지 길라잡이」

의무사령부에서 제작된 「입원환자 전역안내서」는 의무조사 후에 의병 전역하는 입원장병을 대상으로 간부와 병사로 구분하여 전역 전에 군병원 원무과 간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심신장애 전역 절차, 계속 복무 가능여부, 장애보상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림 7-2] 의무사령부 발간 「입원환자 전역안내서」 (간부용, 병사용)

병 복지 길라잡이와 입원환자 전역안내서의 교재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14] 교육자료 주요내용

병 복지 길라잡이(국방부)	입원환자 전역안내서(의무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보상금 - 장애보상금 - 진우사랑 위로금 - 병 무료 상해보험 • 사회적응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장애 전역 절차 • 계속 복무 가능여부 • 장애보상금 • 의무조사 후 참고사항 • 의무기록 발급 부서 • 전역 후 군병원 진료 • 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

또한, 의무사령부에서 ‘군 응급환자 신고앱’을 제작하여 간부를 대상으로 군 양성 기관과 보수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2~3년 교육한 결과 지금은 환자 발생 시 아주 수월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의무사령부 간부는 강조한다. 그 이전에는 환자 발생 시 중구난방으로 보고가 되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재해보상 분야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이다. 사망보상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고, 장애보상금은 전역일로부터 5년, 다만 전역 전 또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훈보상 제도를 모르고 상이를 가진 장병은 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훈보상체계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취보더라도 장병에게 보훈보상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교의 경우는 양성과정(초군반, 고군반), 지휘관 과정 (대대장반, 연대장반)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부사관도 양성과정, 보수과정에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병사의 경우는 신교대나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할 교재도 단편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재를 보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표 7-15] 장병 교육용 교재 작성 “예시”

1. 국가보훈대상자란?	4. 재해보상 분야 신청절차
2. 공상 신청 절차	- 사망보상금
3.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 장애보상금
- 국가유공자	- 전우사랑 위로금
- 보훈보상대상자	- 병 무료 상해보험
	5. 심신장애 전역절차
	6. 의무조사 후 확인사항
	7. 전역 후 군병원 진료

2. 공상 신청 등 One-Stop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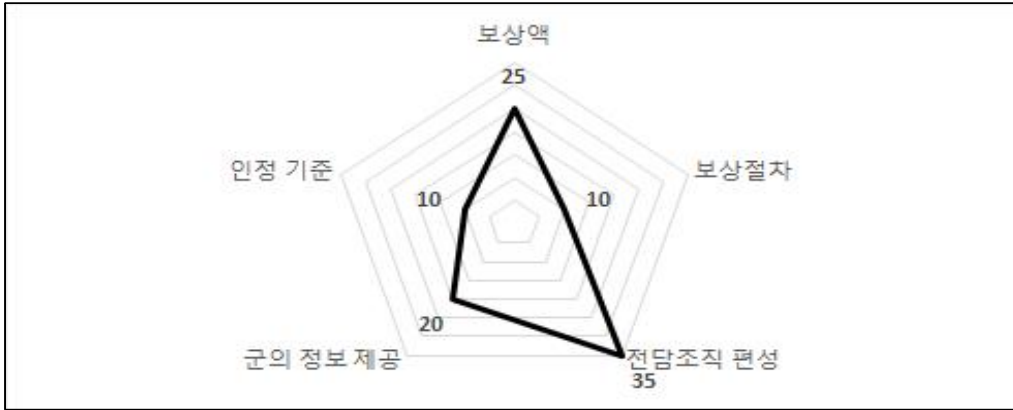
공상 신청 절차 관련하여 입원 병사 및 간부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첫째, 공상 처리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둘째, 공상 신청부터 확정까지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입원 장병 모두는 공상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신경외과 군의관은 전담부서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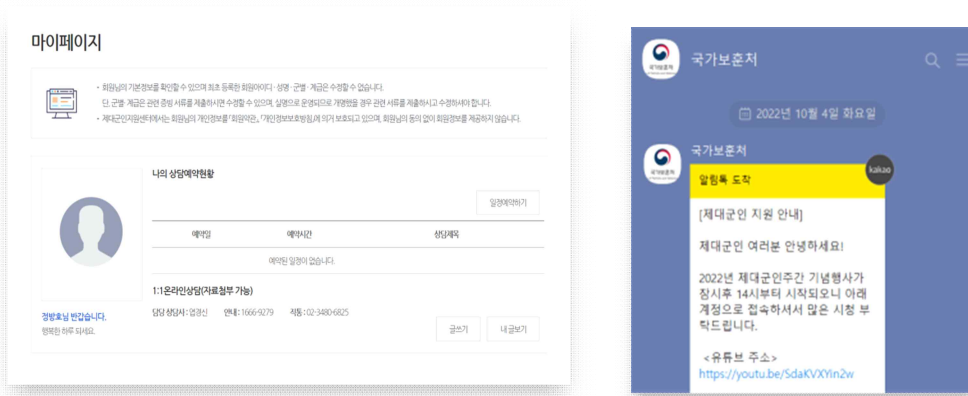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가 군의관의 병력 청취 및 신체 진찰을 통한 단면적 평가만 가능한 한계점이 있다. 국가 보상 액수가 막대한 만큼 전담 부서의 객관화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훈보상체계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진 설문조사 결과 ① 전담조직 편성 필요, ② 보상액 등 순으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전담조직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상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장병의 상이에 대해 객관화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료진에게 설문을 한 결과이다.

[표 7-16]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의료진)
(단위: %)



한편 국가보훈처 소속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 간부 전역 시 전담원 편성과 같은 사례는 One-Stop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마이페이지와 알림톡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7-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마이페이지’와 ‘알림톡’ 사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담당 상담사, 안내번호, 직통연락처를 편성하여 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은 업무담당센터, 센터 전화번호, 상담사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⁰²⁾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국방부와 각 군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장병들이 전역 시 공상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라는 사실을 장병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⁴⁰³⁾ 아울러 부대나 군 병원의 공상 담당자를 편성함으로써 공상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7-17] One-Stop 시스템 구축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상담 예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예약하기 2. 1:1 온라인 상담 3. 사이버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상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교육 등 4. 공상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진행사항 확인 5. 기타

3. 보상금 수준 향상 및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고취

군인들은 위험에 노출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의 특성상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역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병은 설문조사 결과,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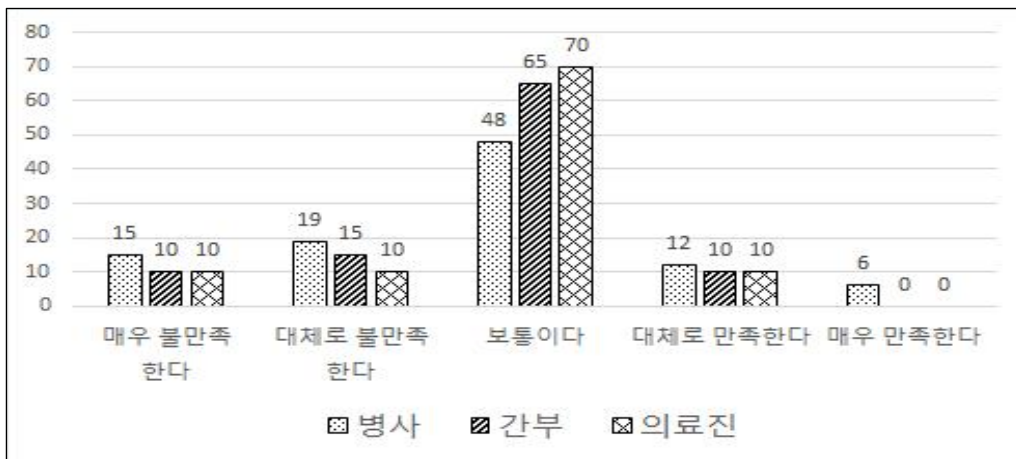
40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등록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면 채용정보 제공, 교육 및 행사 일정 안내 등을 알려준다. 관련 혜택으로는 전역 후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제공하고(연금수급자 제외), 직업교육 훈련 교육비 지원 및 취업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방부, 「2020년 전역간부안내서」 (2020.1), p.39).

403) 현재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인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앱 알림으로 전역 전 두 차례(9개월, 6개월),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연합뉴스, “보훈처, 현역군인 대상 보훈제도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 2022.4.25.). 하지만 이는 단순히 보훈제도를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입원 병사는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8%, 입원 간부는 10%, 의료진은 1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위험이나 난이도에 비해 상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이 매우 적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7-18]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국가보훈처의 「보훈연감 21」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1급 1항 550여만 원에서부터 7급 49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보훈보상대상자는 1급 1항 380여만 원에서부터 7급 34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5급 이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2급 이하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⁴⁰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절반가량은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04)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다.

[표 7-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현황(2021년 기준)⁴⁰⁵⁾

(단위: 천원)

구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급	1항	5,539	3,878
	2항	4,627	3,240
	3항	3,857	2,700
2급		2,540	1,778
3급		2,374	1,662
4급		1,992	1,395
5급		1,650	1,155
6급	1항	1,506	1,055
	2항	1,386	971
	3항	930	651
7급		496	348

미국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0] 한국과 미국의 군 유가족에 대한 처우 비교⁴⁰⁶⁾

구분	한국	미국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 군사상유가족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리터리원소스(국방부 산하) • TAPS(군 유가족지원 비영리기관)
추모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일(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드스타 Weekend(2박 3일)
유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및 공무원 시험 가점 •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 일반 순직 1억 3,000만원 • 전사 3억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연령대별 치유 캠프 • 개별·그룹별 심리상담 • 낚시, 하이킹 등 각종 탐방 지원 • 유가족이 다른 순직사고 대응팀으로 활동 • 동료 유가족 멘토링 • 순직 1억 3,000만원 외 각 주별 추가지원 • 전사 6억 5,000만원

405)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1」 (2022.4), p.285.

406) 동아일보, “제복의 유족 끝까지 책임지는 미, 유족 스스로 치유해야하는 한국,” 2022.8.13.

유가족에 대한 성별·연령대별 치유 캠프와 심리상담, 유가족이 다른 동료 유가족의 멘토, 대응팀으로 활동한다. 순직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정 보상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유가족에 대해 취업 및 공무원 시험 시 가점 부여, 국가보훈처의 심리재활집중센터 운영 등 미국과 비교 시 매우 제한된 유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급여금은 전체 보훈예산 중 80%가 넘게 편성⁴⁰⁷⁾되어 있어 급여금 위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한편 언론에서 발표한 ‘2021년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로 자긍심을 느낀다는 비율은 51.7%로 마지막 조사였던 2018년 63.0% 대비 11.3% 포인트 감소했다.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보훈대상자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다.⁴⁰⁸⁾ 달리 말하면 현재 보훈 대상자 중 절반 정도의 인원은 보훈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대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4. 자살에 대한 장병의 인식 변화로 순직에 대한 범위 확대

군 장병이 자살하는 행위는 군에서의 생활과 자살이라는 관계에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군에서의 제한된 공간과 복무 부적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없었다면 대다수의 자살자들은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군 장병이 자살하는 행위는 군 생활이라는 직무와 인과성이 매우 높기에 자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려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⁴⁰⁹⁾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인원을 국가가 선발해서 징집한 후에 군 복무 중에 제 문제를 일으켜서 자살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징집되지 않았다면 자살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407) 2021년 보훈예산 약 5.6조원 중 약 4.4조원이 보훈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1」 (2022.4), p.295.

408) 연합뉴스, “보훈대상자 절반만 “자긍심 느껴”... 3년새 11%P 감소,” (2022.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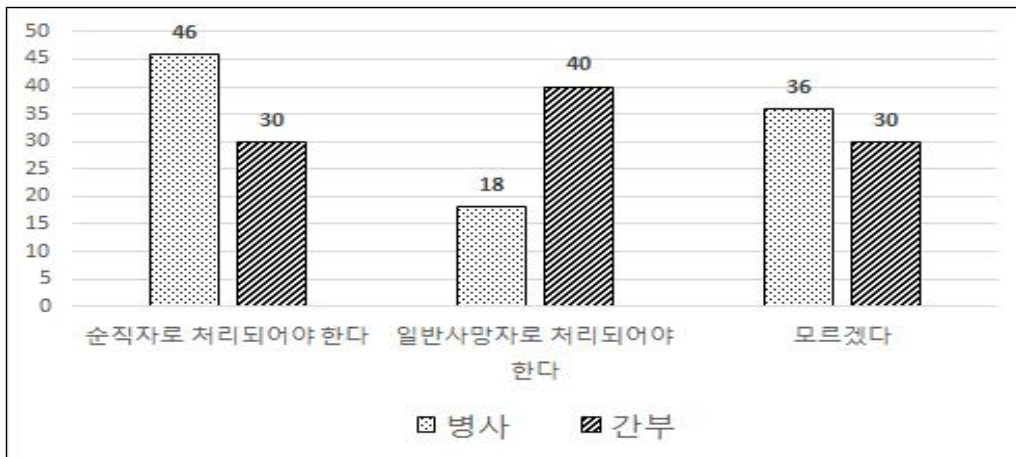
409) 조창길 외, “군 장병 자살의 예방대책과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8호(2020), p. 335.

한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 등의 구분)에 따르면, 순직자는 순직 I형, 순직 II형, 순직 III형으로 분류하고, 일반사망자는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⁰⁾ 자살자가 순직 I형, 순직 II형, 순직 III형이 아니거나, 자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입원 병사는 부대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살원인 미상 대상자에 대해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46%,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18%이다. 반면에 입원 간부는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30%,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40%로 나타났다. 병사와 간부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의 입장에서는 하는 일들이 모두 부대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표 7-21]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인식

(단위: %)



410) 전사자는 ①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②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다. 순직자는 ① 순직 I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② 순직 II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③ 순직 III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포함)이다. 일반사망자는 전사자나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는 강제로 징집된 것이고 기본권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군 복무자의 자살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자살은 국가의 관리와 감독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제도적 취지인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합한다.⁴¹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대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살 원인 미상 대상자에 대한 장병의 인식 변화와 국가 책무의 범위를 고려 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11) 양철호, “군 장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4호(2017.8), p. 416.

제5절 심층면접 및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1.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군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가족, 군 병원에 입원한 장병 부모, 각 군 및 보훈 업무 담당자, 기타 기관 관계자 심층 면접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군복무 중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지원 및 사후 관리, 부상자에 대한 의료상담, 제대, 공상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심층 면접 결과 가족들은 물론 각 군 업무 담당자들도 군 복무 중 사망, 부상자 발생 시 해당 부대, 각 군 본부, 군 병원에 서류를 요청한 후 수령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다.⁴¹²⁾ 본 연구의 개선방안으로 각 군 본부 차원에서 전담 조직 신설 및 확충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중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기존 조직이 있으나 조직 확대를 통해 과거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 지원도 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은 인사사령부 산하 7명으로 구성된 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나, 1년에 100일 정도 출장을 갈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⁴¹³⁾ 이에 반해 해·공군의 경우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해군은 인사참모부 행정관리과 산하 2명의 장교, 공군은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산하 2명의 장교가 사망과 전공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해·공군은 육군과 달리 인력이 적고 사망자 발생도 상대적으로 적은바, 3~4명의 군무원 및 부사관을 충원해서 장기간 근무

412) 심층면접을 진행한 한 유가족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이틀간의 휴가를 낸 후 새벽에 제주를 출발해서 김포 공항에 도착, 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저녁이 되어 있었다고 언급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지방에서 전방 부대, 각 군 본부, 병원으로 이동하면 하루 이틀이 소요되고 있는 바, 이를 대행해 주는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413) 육군본부 유가족 지원팀은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원사 3명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면접 결과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지원팀이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 조직으로 유가족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및 관리는 쉽지 않아 보였다. 사망자 발생 시 사망, 안장, 보훈 신청 등 관리에 최소 1년이 소요되며, 가족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피해 유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 정책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들 전담해서 장례, 안장, 공상 처리 등 제반 과정을 지원한다면 유가족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해당 부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 결과 군복무 중 사망자 발생 시 군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유가족의 수사에 대한 불신이다. 군 관계자는 통상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정도인데, 그 사이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신감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중간에 유가족에게 수사 진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유가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유가족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 공상 신청 등 추후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심리적인 충격이 큰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행정 절차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군 유가족지원팀의 경우 2015년 편성된 후 약 8년간 업무 전문성 및 매뉴얼을 축적해 가고 있지만, 해·공군은 전담 조직이 부재하다. 해·공군은 사망 및 공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며, 전공상 담당 장교의 경우 1명이 한 달에 약 60명 정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교들은 대부분 순환 보직으로 1~2년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망 및 부상자 관련 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자주 바뀔 경우 매뉴얼도 축적하지 못하고 업무 역량도 강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군무원 및 부사관을 충원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육군 유가족지원팀과 같은 업무 역량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의료 기록 및 전공 심의를 윈스톱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상 처리 관련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군 내에서 공상 처리 판정을 받더라도, 보훈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부상을 당한 당사자나 유가족은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각 군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각 군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상을 당한 개인의 민원 서류도 발급해야 하고, 공상 심의를 담당하는 보훈처의 요청 자료를 제공하는 행정 소요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의료 기록 및 공상 처리를 전담하는 조직 구축을 통해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관련 기록을 윈스톱으로 제공해 준다면 부상 군인, 가족, 제대군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심층 면접 결과 국가유공자, 공상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기록이

다. 심의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본인의 부상이 군 복무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원은 군 보통전공사상 판정과 국가보훈처의 재해보상심사 결과가 달라서 발생한다.⁴¹⁴⁾ 심층면접 결과 장교 및 부사관조차도 어떠한 의료 기록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 의무사와 수도병원을 여러 번 왕래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부상이 심각한 경우 의료 기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부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본인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하는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각 군 본부, 사령부 차원에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해 의무대 및 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잘 보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전상자는 물론 사고 등으로 부상이 심각하거나, 제대를 해야 하는 병사들 및 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조사 결과 장기간 입원했던 병사 가족들의 경우 공상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그들이 개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 간부의 초기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병원에 입원하기 이전 군 의료기관의 기록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왕래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다. 특히 제대 군인들의 경우 제대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담당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의료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담 조직 및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2.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규정 부재

현재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자 발생 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하다. 군복무 중 사망, 부상자 발생 시 가족이 받는 심리적 충격은 상당하다. 사망자 유가족의 경우 가족의 해체를 우려할 만큼 모든 가족들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중대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사 가족의

414) 각 군 관계자에 의하면 군 생활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 외부 인원 5명, 내부 인원 4~5명이 참여해 월 1회 정도 심사를 통해 공상 관련 심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월 1회 심사 시 담당하는 인원이 대략 50~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상 처리가 되지 않는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공상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심사는 각 분야 전문의가 참여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며, 보훈처의 입장에서는 각 군이 공상 처리를 너무 쉽게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았다. 국가는 군복무 중 사망, 부상자 발생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중 사망,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명예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본인은 물론 모든 가족들이 심리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공상, 유공자 판정,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심의 및 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조기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하고 정당한 배상이 필요하고, 장례 비용 등에 대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장례를 치르고 안장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⁴¹⁵⁾

둘째,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군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군 병원 진료 여건 보장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간병비 부담이 제기된다. 수도병원에 입원한 병사 가족들은 본인의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다. 생업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현재 하루에 약 14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간병비 지원 1등급의 경우 하루 67,14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족이 차액만큼 자비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상으로 인해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 부담은 더 커지고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따라서 부상자 발생 시 수반되는 간병비를 최대한 현실화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15)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육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550만 원에 장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군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약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있다. 관계자는 대형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 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내년 이후에는 어떤 상조업체와 계약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 발생한 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는 1,500만 원, 위로금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셋째, 군 사망, 부상자 발생 시 가족이 이른 시일 내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리 규정 제정이 시급하다. 군 복무 중 자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부모가 받는 심리적 충격은 대단히 크다. 조사 결과 좋지 않은 생각을 몇 번이나 생각해봤다는 유가족, 본인의 부상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혼절하셨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한 제대군인,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가족들까지도 고통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현 제도의 혜택은 보훈 가족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보훈 가족의 경우 국가보훈처 산하 ‘심리재활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훈 가족으로 지정된 가족 외 사망자 유가족, 부상 군인 가족들도 ‘심리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망자, 부상자 발생 이후 유가족이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국방부조사본부, 군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 신청 등을 통해 재심을 신청하는데 이 경우 가족들은 적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간 군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진행인 가족, 군복무 중 사망한 유가족이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자체 산하 군 지원 센터와의 연계 확대

군에서 사망이나 부상자 발생 시 각 지자체의 센터 등과 연계해 유가족 및 부상장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조사 결과 군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으나 국가보훈처 심의에서 유공자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 희귀질환 등 질병을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들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경우 민원을 제기해도 군에서 도와줄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군복무 중 사망, 부상을 당한 병사 및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 산하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예비역들을 위해 법률적, 심리적 지원은 물론 취업 정보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서울시에 설립된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센터장: 이주은)의 경우 원스톱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서울시 산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재단 등을 통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⁴¹⁶⁾ 특히 자체적으로 군에서 부상을 당한 제대 군인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심

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조모임’과 같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부상자는 물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집단 상담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은 상처를 공유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통계에 의하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상담을 진행한 제대군인 70명 중 보훈대상자는 8명, 국가유공자는 1명에 불과하며, 보훈 관련 해당 없는 인원이 61명이다.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해 고통 받는 일부 제대군인들은 보훈 인정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담 신청자들은 법률상담, 심리치료, 취업지원, 보훈신청 관련 상담 등을 희망했으며, 센터에서는 의료법인을 통한 법률상담 및 의료기록 관독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의 수기와 동영상을 청취한 결과 비슷한 경험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통해 대화할 사람이 생겼다는 위로를 받고, 상담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센터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수도병원 등에 입원한 현직 군인,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희망하고 있는 바, 국방부, 각 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416)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센터장 이주은의 경우 2019년 해병대 장교 재직 시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하였고, 2020년 전공상심의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북한 지뢰를 통한 부상의 경우 공상이 아닌 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심의를 진행 중이며, 전역 후 서울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1」, 2022.
- 국가인권위원회,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2020년도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
- 국가인권위원회,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3.
- 국방부, 「국방 환자관리 훈령」, 2022.
-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2020.
- 국방부, 「2020년 전역간부안내서」, 2020.
- 국방부,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2020.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 2022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22.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0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20.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순직군인 형제자매 보상에 관한 연구」,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21.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법문사, 2022.
-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6.
- 서정범·박상희·김용주, 「일반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 신미용, 「헌법실무강의」, 신조사, 2019.
- 육군교육사령부, 「국가와 안보(II)」, 2022.
- 육군본부, 「육군규정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2021.
- 이계수, 「군사안보법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법문사, 2010.
- 헌법재판연구원, 「국가유공자 보상 지원의 법률적 형성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6년도 연구용역보고서, 2016.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2020.

2. 논문

- 강경화, “한국 국가유공자의 합리적 선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권영복, “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 군경 보상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6권, 2007.
- 권영복·이철호, “군복무자의 재해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보훈논총, 제21권 제2호, 한국보훈학회, 2022.
- 김민영·김윤진·신주영·이도감·정동일·지재욱,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보훈 및 국가배상 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7.
- 김성배,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행정판례연구 XVII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 김성배, “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배상·보상·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 「사망 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 김호정,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심사결정과 실무상 문제”,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남궁승태, “정보공개제도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식에 관한 고찰”, 아태공법연구 제14집, 2006.
- 박혜란, “미국의 보훈정책”, 한국보훈논총 제9권 제2호, 2010.
- 박환무, “일본 보훈제도”, 국가보훈처, 2006.
- 방동희,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과 국가유공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 선은애, “국가유공자 보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유공자 인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7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송기춘,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 2021년 공법학자대회 발표, 2021.
-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국가유공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 신은숙, “외국 국가보훈정책의 국내학술지 동향”, 한국보훈논총 제20권 제4호, 2021.
- 吳佳蓉, “我國軍人撫恤制度之研究－以勞工職業安全法制爲借鏡”, 國防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 양철호, “군 장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4호, 2017.
- 이무상, “체력단련행위 중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병에 대한 지원공상군경으로의 보상”, 저스티스 제126호, 2011.
- 이영자, “주요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3권 제1호, 2014.
- 이상경, “군 사망사고 처리를 통해 본 군 인권과 국가책임”,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 이상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안안법학, 제1집, 1993.
- 이재승 등 6명,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 국방부, 2020.
-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가능성”,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2000.
-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4.
- 정성범, “일본 보훈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보훈논총, 제19권 제2호, 2020.
- 정철호·권영복, “국가보훈제도와 전몰 순직군인 유족 보훈급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보훈논총, 제15권 제4호, 2016.
- 조성제,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대에 관한 고찰 - 자해사망 및 정신 질환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 조성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심포지엄), 2022.
- 조창길 외, “군 장병 자살의 예방대책과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8호, 2020.
- 주영학, “국가유공자 인정절차에 관한 공법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최기홍 등 5명,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0.

최병욱, “Direction for Reforming Reward Policy for Veterans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45 Number 1, 2016.

3. 판례

헌재결 1994. 06. 30. 1991헌마161.
헌재결 2001. 03. 21. 1999헌마139.
헌재결 2012. 03. 29. 2010헌마599.
헌재결 2014. 06. 26. 2012헌마757.
헌재결 2014. 09. 25. 2013헌마424.
헌재결 2016. 12. 29. 2016헌바263.

대법원 2003. 09. 23. 선고 2003두 5617 판결.
대법원 2004. 03. 12. 선고 2003두 2205 판결.
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3두 13595 판결.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5두 14578 판결.
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두 11842 판결.
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두 12521 판결.
대법원 2012. 06. 18. 선고 2010두 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0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 3927 판결.
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대법원 2016. 0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05. 28. 선고 2009누165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04. 06. 선고 2016누109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나52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5누704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07. 15. 선고 2009구단37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06. 11. 선고 2010구단85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0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0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구합6082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048 판결.

4. 기타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2. 8.

Federal Benefits for Veterans, Dependents and Survivors 2021 Edition,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부 록]

부록1. 설문조사 결과

[표]-1 입대 전 군 병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구 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매우 나쁨	31	16	3	15
② 약간 나쁨	66	33	4	20
③ 보통이다	67	34	10	50
④ 약간 좋음	15	8	3	15
⑤ 매우 좋음	19	9	0	0
합계	198	100	20	100

[표]-2 입대 후 군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구 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매우 나쁨	8	4	1	5
② 약간 나쁨	14	7	1	5
③ 보통이다	45	23	6	30
④ 약간 좋음	71	36	6	30
⑤ 매우 좋음	60	30	6	30
합계	198	100	20	100

[표]-3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은 인원(입원 병사), 복수 선택

구분	계	동기	선임· 후임병	직속 상관	부모 등 가족	군의원· 의무병	기타
인원 (명)	210	36	29	56	23	61	5
비율 (%)	100	17	14	27	11	29	2

[표]-4 군인 재해보상법 교육 여부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있다	28	14	1	5	11	55
② 없다	170	86	19	95	9	45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5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여부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있다	147	74	16	80
② 없다	51	26	4	20
합계	198	100	20	100

[표]-6 군인복무기본법 숙지 정도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 가능하다	7	4	0	0
② 권리와 의무의 종류를 아는 수준이다	29	15	5	25
③ 법률을 한 번 정도 읽어본 수준이다	65	33	7	35
④ 법률 제목만 아는 수준이다	69	35	5	25
⑤ 전혀 모른다	28	13	3	15
합계	198	100	20	100

[표]-7 공상 신청절차 인지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전혀 모르고 있음	111	56	4	20	2	10
② 들어본 적 있음	46	24	4	20	7	35
③ 보통	22	11	4	20	5	25
④ 조금 알고 있음	17	8	6	30	4	20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2	1	2	10	2	10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8 국가유공자 신청절차 인지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전혀 모르고 있음	117	59	9	45	2	10
② 들어본 적 있음	51	26	4	20	3	15
③ 보통	17	8	3	15	7	35
④ 조금 알고 있음	13	7	4	20	7	35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0	0	0	0	1	5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9 재해보상 분야 사망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전혀 모르고 있음	125	64	8	40	3	15
② 들어본 적 있음	50	25	7	35	5	25
③ 보통	16	8	2	10	3	15
④ 조금 알고 있음	5	2	3	15	7	35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2	1	0	0	2	10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10 재해보상 분야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신청절차 인지도(병사)

구분	병사	
	명	%
① 전혀 모르고 있음	128	65
② 들어본 적 있음	43	22
③ 보통	17	8
④ 조금 알고 있음	7	3
⑤ 매우 잘 알고 있음	3	2
합계	198	100

[표]-11 부상·질병 발생 후 소속부대 조치에 대한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한다	14	7	0	0
② 대체로 불만족한다	21	11	1	5
③ 보통이다	58	29	6	30
④ 대체로 만족한다	63	32	7	35
⑤ 매우 만족한다	42	21	6	30
합계	198	100	20	100

[표]-12 입원절차에 대한 불만족 사유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진단서 발행이 늦어진다	27	24	0	0
② 소속부대 입원조치가 늦어진다	42	37	1	8
③ 당일 입원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8	7	3	23
④ 사단의무대 관련사실 미통보	12	10	5	38
⑤ 기타	25	22	4	31
합계	114	100	13	100

[표]-13 군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부문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의료인력 공급 확충	33	17	8	40
② 시설 개선	56	28	7	35
③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	58	29	3	15
④ 군 병원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공개	36	18	2	10
⑤ 기타	15	8	0	0
합계	198	100	20	100

[표]-14 민간병원 입원(진료) 경험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입원 경험이 있다	47	24	9	45
② 입원 경험이 없다	151	76	11	55
합계	198	100	20	100

[표]-15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1	2	0	0
② 대체로 불만족 한다	1	2	0	0
③ 보통이다	4	8	4	44
④ 대체로 만족한다	15	32	4	44
⑤ 매우 만족한다	26	56	1	12
합계	47	100	9	100

[표]-16 공상 신청 여부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공상 신청을 하였다	16	8	8	40
②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182	92	12	60
합계	198	100	20	100

[표]-17 공상 신청 시 군의 정보 제공으로 도움을 받은 여부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도움을 받았다	15	94	7	88
②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1	6	1	12
합계	16	100	8	100

[표]-18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26	13	2	10	2	10
② 대체로 불만족 한다	33	17	3	15	6	30
③ 보통이다	99	50	13	65	9	45
④ 대체로 만족한다	28	14	2	10	2	10
⑤ 매우 만족한다	12	6	0	0	1	5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19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29	15	2	10	2	10
② 대체로 불만족 한다	37	19	3	15	2	10
③ 보통이다	95	48	13	65	14	70
④ 대체로 만족한다	24	12	2	10	2	10
⑤ 매우 만족한다	13	6	0	0	0	0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20 군인 재해보상법의 사망보상금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41	20	3	15	0	0
② 대체로 불만족 한다	42	21	6	30	4	20
③ 보통이다	88	45	9	45	14	70
④ 대체로 만족한다	19	10	2	10	2	10
⑤ 매우 만족한다	8	4	0	0	0	0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21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 만족도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매우 불만족 한다	33	17	4	20	1	5
② 대체로 불만족 한다	42	21	6	30	5	25
③ 보통이다	84	42	9	45	11	55
④ 대체로 만족한다	23	12	1	5	3	15
⑤ 매우 만족한다	16	8	0	0	0	0
합계	198	100	20	100	20	100

[표]-22 적절한 보상금 수준에 대한 의견

구분	병사		간부		의료진	
	명	%	명	%	명	%
① 현 보상금의 1.5배 수준	14	19	1	10	2	33
② 현 보상금의 2배 수준	25	33	2	20	4	67
③ 현 보상금의 3배 수준	36	48	7	70	0	0
합계	75	100	10	100	6	100

[표]-23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병사·간부)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보상액	57	29	7	35
② 보상절차(공상처리, 국가유공자 등록 등)	58	29	8	40
③ 군의 정보 제공	83	42	5	25
합계	198	100	20	100

[표]-24 군 사망 및 부상자 지원제도 관련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의료진)

구분	명	%
① 보상액	5	25
② 보상절차(공상처리, 국가유공자 등록 등)	2	10
③ 전담조직	7	35
④ 군의 정보 제공	4	20
⑤ 인정 기준	2	10
합계	20	100

[표]-25 보상수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물가를 반영하여 보상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149	75	17	85
②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43	22	3	15
③ 기타	6	3	0	0
합계	198	100	20	100

[표]-26 공상 신청 절차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공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	71	36	8	40
② 공상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전담 간부 편성	61	31	5	25
③ 공상 신청부터 확정까지 시간 단축	54	27	7	35
④ 기타	12	6	0	0
합계	198	100	20	100

[표]-27 직무수행 관련 없거나 원인 미상 자살에 대한 의견

구분	병사		간부	
	명	%	명	%
① 순직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92	46	6	30
② 일반사망자로 처리되어야 한다	35	18	8	40
③ 모르겠다	71	36	6	30
합계	198	100	20	100

[표]-28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

구분	명	%
① 입원 자녀의 부상·질병이 공상에 해당하는가	3	30
②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0	0
③ 전역 후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3	30
④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충분한가	2	20
⑤ 기타	2	20
합계	10	100

[표]-29 보훈보상제도 인지 여부

구분	명	%
① 들어본 적이 있다	4	40
② 들어본 적이 없다	6	60
합계	10	100

[표]-30 발병경위서 작성 만족도

구분	명	%
① 만족한다	14	70
② 만족하지 않는다	6	30
합계	20	100

[표]-31 발병경위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복수 응답)

구분	명	%
① 발병 원인 및 경위	4	36
② 입대 전 건강과 관련한 병력 사항 기술	0	0
③ 질병·부상과 공무의 연관성 유무	7	64
④ 목격자	0	0
⑤ 기타	0	0
합계	11	100

[표]-32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유무

구분	명	%
① 애로사항 있음	5	25
② 애로사항 없음	15	75
합계	20	100

[표]-33 의무조사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

구분	명	%
① 발병 및 전·공상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4	45
② 심신장애 등급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3	33
③ 장애보상 등급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1	11
④ 상이연금 대상 소견 작성 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1	11
⑤ 기타	0	0
합계	9	100

부록2. 주요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국가보훈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국민의 책무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 조사·연구 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제19조 예우 및 지원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제21조 권리의 보호
제21조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5조 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8조 국제 교류·협력의 강화
제29조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제3조 정부의 시책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 등록 및 결정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 신체검사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제6조의5 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6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7 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7조 보상 원칙

제7조의2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조의3 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8조 삭제<2011. 9. 15.>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 보상금

제12조의2 삭제<2022. 1. 4.>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 조사·질문 등

제14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 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 간호수당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4 4·19혁명공로수당

제17조 사망일시금

제17조의2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제21조 교육지원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의2 교육기관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제24조 입학절차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의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7조 삭제<2011. 9. 15.>

제4장 취업지원

제28조 취업지원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 업체등의 신고

제34조 보훈특별고용

제34조의2 취업지원 제한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조의2 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 직업훈련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0조 삭제<2004. 1. 20.>

제5장 의료지원

제41조 의료지원

제42조 진료

제42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3조 삭제<2011. 9. 15.>
제43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2 심리적 재활 등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

제46조 대부
제47조 대부 대상자
제48조 대부의 재원
제49조 대부의 종류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제56조 담보 등
제57조 삭제<2009. 2. 6.>
제58조 삭제<2008. 3. 28.>
제59조 상계
제60조 채무의 인수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3조 양로지원
제63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 양육지원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2 생업지원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0조 삭제<1997. 12. 31.>
제71조 삭제<1997. 12. 31.>
제72조 삭제<1997. 12. 31.>

제72조의2 삭제<1997. 12. 31.>
제72조의3 삭제<1997. 12. 31.>
제73조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4조 전투중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장의2 현충시설
제74조의2 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 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 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74조의9 사실규명 요구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
제74조의11 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 결격사유
제74조의13 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 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6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7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8 이의신청
제74조의19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9장 보칙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 보상의 정지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 사법경찰권
제82조 삭제<2011. 9. 15.>
제82조의2 삭제<2011. 9. 15.>
제82조의3 삭제<2011. 9. 15.>
제82조의4 삭제<2011. 9. 15.>
제82조의5 삭제<2011. 9. 15.>

제82조의6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7 포상금의 지급 제83조 위임 및 위탁 제84조 삭제<2008. 3. 28.> 제10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87조 삭제<2009. 2. 6.>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제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

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 ④ 제1항 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⑤ 제1항 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 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상이정도는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의 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7(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처장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사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9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한 그 유족에 대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18. 1. 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제4조 등록 및 결정
-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 제6조 신체검사
- 제7조 보상 원칙
-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제9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 제11조 보상금
-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 제13조 생활조정수당
-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15조 조사·질문 등
-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7조 간호수당
- 제18조 부양가족수당
- 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 제20조 사망일시금
- 제20조의2 보훈급여금의 지급
-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 제22조 권리의 보호
- 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 제24조 교육지원
- 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제26조 교육기관
-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 제28조 입학절차
- 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	취업지원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제41조	보훈특별고용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45조	차별대우 금지
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	직업훈련
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제50조	의료지원
제51조	진료
제51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2조	보철구의 지급
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제53조의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3	심리적 재활 등
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
제55조	대부
제56조	대부 대상자
제57조	대부의 재원
제58조	대부의 종류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	담보 등

제64조 상계
제65조 채무의 인수
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 대부의 승계
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제74조 위임 및 위탁
제75조 벌칙
제76조 과태료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

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 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 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4.>

③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 이상으로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를」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제23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6. 「군인 재해보상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정의
-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 제7조 급여
-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 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제13조 연금액의 조정
- 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
- 제15조 급여의 환수
- 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 제17조 권리의 보호
-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공무상요양비

- 제20조 공무상요양비
- 제21조 재요양
- 제22조 요양기관
- 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 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절 상이연금

- 제26조 상이연금
- 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
- 제27조의2 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 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 제29조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제4절	장애보상금
제33조	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4조	상이유족연금
제35조	순직유족연금
제36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9조	사망보상금
제6절	부조급여
제40조	재난부조금
제41조	사망조위금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2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비용 부담
제4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장	심사의 청구
제47조	심사의 청구
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5장	보칙
제49조	시효
제50조	효력발생기간
제51조	조사·보고 등
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53조	신고사항
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등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公務)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애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3.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 가. 공무수행 중 사망
-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의 해당 여부
- 나.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무상요양비
- 2. 장애급여
 -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 나. 장애보상금
- 3. 재해유족급여
 - 가. 상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연금
 -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라. 사망보상금
- 4.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
 - 1) 군인사망조위금
 - 2) 가족사망조위금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
2. 제2급: 48.75%
3. 제3급: 45.5%
4. 제4급: 42.25%
5. 제5급: 39%
6. 제6급: 35.75%
7. 제7급: 32.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사이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서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협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

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70%를 지급한다.

제35조(순직유족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

| 인쇄일 | 2022년 12월 10일

| 발행일 | 2022년 12월 1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군인권보호총괄과 02)2125-9663

| F A X | 02)2125-0927

| 연구 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2)2287-5207

| 제작 | 도서출판 가람문화사 02)873-2362

ISBN : 978-89-6114-945-7 93390 <비매품>